

2020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해외 각국의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



2020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4호>

- 미국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과 자율규제 동향 1
문영은(미국 오레건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박사수료)

- 영국 성범죄 보도 관련법 현황 및 자율규제 동향 37
주대우(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 미디어 석사)

- 성범죄 보도에서의 일반적 인격권 및 저널리즘윤리규칙 적용
: 법원의 판례와 독일언론위원회의 불만처리결과 평결사례를 중심으로 71
장성준(라이프치히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 프랑스 언론의 성범죄 보도 사례와 규제 105
이두형(파리 소르본 대학 사회학 석사과정)

- 호주의 성범죄 보도와 관련된 인격권 보호문제 141
곽기성(시드니대 언론학 교수)

- 일본의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제도 177
안창현(동경대 언론학 박사수료)

I. 들어가는 글

미국 성범죄 처벌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그 기원을 둔다(Burgess-Jackson, 2001). 과거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사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법률 시스템 하에서 여성의 성범죄 피해는 일종의 물적 가치의 손상으로 여겨졌다. 또한, 가부장적 상속제도 하에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혼 여성일 경우에만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성범죄 법은 물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위치와 피해자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개념 속에서 발전했다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Schwendinger & Schwendinger, 1982).

여성의 인격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60~70년대 제2물결 여성운동을 거치며 시작되었다(Roman & Estrich, 2011). 당시 여성 인권 활동가와 학자들은 사적이며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던 성폭력 범죄의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행동이 조신하고 정숙한’ 여성만이 관련 법의 보호를 받았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입법 운동의 결과로 80년대에 들어서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이 48개 주에서 제정·시행되었다(Roman & Estrich, 2011). 이후, 각 주에서 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를 인식하는 법률들이 제정되는 등 미국의 성범죄 관련법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Corrigan, 2013). 이처럼 성범죄 관련법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진화했지만, 여전히 사유재산권 침해에서 기원한 흔적들이 남아있으며, 이는 성범죄 용어나 각 주의 변칙적인 요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언론보도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정 미디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보도를 할 경우, 여론이 움직일 수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Reidy, 2004).

* 미국 오레건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박사수료. youngeun@uoregon.edu

뉴스 미디어는 주로 성폭력과 관련해 범행의 방식이 비정상적이거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 혹은 유명인들이 포함된 범죄들을 보도한다(Pennington, & Birthisel, 2016). 이러한 미디어의 선별적인 보도는 성폭행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강간 문화(Rape culture) 혹은 강간 신화(Rape myth)라 불리는 왜곡된 성관념을 생산해왔다(Franiuk, 2008). 여기서 강간 신화는 “강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련의 가치와 신념”으로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종교나 법, 질서 체계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믿음으로 정의된다(Edwards et al., 2011). 이는 강간 피해자의 낙인화 및 객관화, 범죄의 정당화(Boswell and Spade, 1996 : 133) 등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남성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강간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WAVAW, 2018). 즉,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Burt, 1980, p. 217), “성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낮은 사람”이며, “남성의 성욕은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고, “피해자 여성의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보도는 미디어 서커스(media circus)로 불리며, 법정 밖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성폭력'을 가하는 역할을 해왔다(Stephen, 1992). 피해자가 재판에서 기억을 복기하며 배심원들에게 당하는 수치심이 '두 번째 성폭력'이라면, 언론이 시청률이나 구독률을 위해 피해자의 신상과 경험을 '판매'하는 행위는 '세 번째 성폭력'이라는 것이다(Reidy, 2004).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性的) 이력이나 사건 당시 동의 여부가 공개되면서, 이들은 배심원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자신이 '꽃뱀'이 아닌 '순진무구하고 순결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했다. 결국, 언론보도에 따른 '제3의 성폭력'은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가름하기보다, 피해자의 성적 도덕성과 행적을 평가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Capers, 2017). 최근에는 성범죄 언론보도와 관련해, 2017년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미투 운동'이 새로운 법적 전쟁터(New legal battleground)가 되었다(Jacobs, 2020). 주목할 점은 성범죄 공소시효 문제 등의 법적 제약으로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고,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허위로 매도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역으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의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부재하다는 사실도 '피해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쟁을 가속시켰다(Reidy, 2004; Stephen, 1992).

미국 내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주로 '증거 제출에 있어서의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된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증거의 제출이 미디어에 보도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Spencer, 2001).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연방검사 업무규칙(U.S. Attorney's Manual)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범죄의 수준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수정헌법 제1조가 성폭력 피해자보호법과 충돌하면서, 과거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은 주로 법리적 접근보다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제도권에서의 자율적인 움직임들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제도적·비제도적 차원의 방안 검토라는 주제 아래, 표현의 자유와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이 충돌한 핵심적인 판례와 관련 법제들의 동향을 검토한다. 더 나아가, 언론윤리의 관점에서 취재 시 인격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지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권 내·외부에서 기울이는 다양한 노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분쟁 관련 법제 검토

기본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¹⁾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것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1) Rape shield law는 강간피해자보호법(윤지영, 2018; 류병관, 2008) 성폭력피해자보호법(류병관, 2010)로 번역된다.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성(性)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를 총괄하는 용어다. 성기삽입만을 의미했던 협의의 강간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학계의 경향(Reitan, 2001; Ayres, 2012)에 따라, 이 글에서는 강간피해자보호법 대신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이라고 명명한다.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 역시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s)’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은 크게 두 가지를 지칭한다(Soshnick, 1987). 첫째는 미 연방증거규정(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12조 ‘성범죄 사건; 성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사실 또는 성적 취향의 증거 관련성(Sex-Offense Cases: The Victim’s Sexual Behavior or Predisposition)’으로, 이는 성폭력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적(past sexual behavior) 혹은 성적 취향(sexual predisposition)에 대한 교차 심문(cross-examination)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78년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은 초기에는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1994년 개정으로 민사절차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재판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Anderson, 2002). 한편, 주 정부차원의 보호법은 주마다 보호하는 성관계(sexual behavior)의 유형과 보호기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적이 성폭행 유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일치한다. 해당 법률이 존재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임을 밝히거나,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이 등장한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 위와 같은 증거 제출이나 심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브라이언 대 텍사스주 사건(Bryan v. State)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7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은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증거를 법원이 배제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폭력피해자방지법인 증거법 제412조는 피해자의 ‘과거 성행위’ 증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합의된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위 사례를 통해 해당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피해자의 난잡함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공적 담론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의 보호 아래 범죄행위를 고발하도록 독려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oshnick, 1987).

한편,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서 명시하는 과거 성적 행적의 범주에는 ‘실제 육체적 행위’ 즉, 성관계와 성접촉을 수반하거나 성관계나 성접촉을 암시하는 모든 활동뿐만 아니라 ‘환상이나 꿈과 같은 정신 활동’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한 정보도 증거 채택에서 배제되는데, 여기에는 성행위뿐만 아니라 복장, 언어, 생활 방식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동성 간 강간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이전에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사실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물론, 해당 법안에도 몇 가지 예외는 존재한다. 첫째, 정액·상처 등의 증거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특정 타인의 성관계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둘째,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경우, 마지막으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의 세 가지가 예외사항에 속한다.

연방증거법 제412조와 함께, 성폭력 사건에 자주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미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01조와 제403조의 ‘관련성(relevance)’ 조항이다. 위 두 조항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특수성 맥락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일반 범죄에 적용되지만, 제412조와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증거가 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관련성을 증명하는 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증거가 “부당한 편견을 담지하거나(unfair prejudice), 쟁점을 흐트리는 경우(confusing the issues), 더 나아가 배심원을 오도하거나(misleading the jury), 재판관을 지연시키는(undue delay)” 사례에 해당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강간피해자의 신원공개를 금지하는 법률(Victim right statue)로, 이는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해당 법안은 1974년 미시간 주가 최초로 제정한 이후, 모든 주가 연방법의 영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이들의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법령에 따르면, 미디어 출판물 또는 방송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식별 가능한 사진이나 음성 등이 포함될 수 없다. 일부 주의 법령에는 언론이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일종의 피해자 구제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

거나 위반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네브래스카 주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천 5백 달러 이상에서 최고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권리법령과 개정안(Victims' rights statutes and amendments)은 광범위한 언론보도로부터 성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사건과 무관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상황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이는 오늘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2. 과도한 언론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공인이거나 유명인인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2차 피해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Arenella, 1995). 첫 번째는 미디어의 특종 경쟁에 의해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특히, 성적 취향·과거 행적 등이 공개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불이익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언론 플레이’ 측면으로 유명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언론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함으로써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자는 이와 같은 기회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피해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다. 실제로 강간 신화(rape myth)의 영향으로 언론에서 피해자의 성적 정보를 공개한 이후 사실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피해자 귀책 여론이 형성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법률시스템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는 성공적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범죄행위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했다. 실제로 미국 내 다수의 피해자는 법정으로부터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음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Dressler, 1995). 이는 지금까지의 성폭력 판결의 쟁점이 피고인의 신체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대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6조(Sixth Amendment Right)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들이 과도한 언론보도에 직면했을 때 그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Reidy, 2004). 아래 소개할 보도금지 명령, 장소 변경 등의 조

치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주로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지만,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가 이 절차적 장치로부터 우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tephen, 1992). 수정헌법 제6조는 형사사법 체계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대중매체의 정보 노출이 배심원들의 판결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장치 중 하나가 보도 금지령(gag order)이다. 이는 법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사적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증인들, 사건과 관련된 다른 모든 당사자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배심원의 예비 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들이 잠재적 배심원들을 심사하여 그들이 사건 혹은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장소의 변경’이다. 이는 판사가 언론보도로 인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위의 세 가지 조치가 모두 실패하면, 법원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심리를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종합하면, 위의 세 가지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나 과도한 언론보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 피해자도 보도금지 명령, 장소의 변경 등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배심원 편향의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III. 성폭력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관련 주요 판례

이 절에서는 성폭력 보도와 관련해 상징적인 과거 판례들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한 최신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앞서 언급했듯, 판결의 주요 쟁점은 각 주의 성폭력 방지법과 수정헌법 제1조 사이에서 상충하는 부분의 해석 문제이다.

1.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성폭력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과 관련된 판결 중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사건이 바로 1975년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사건이다. 이는 <콕스> 방송국이 조지아 주법에 따라 재판 중 공소장을 입수해 쿤의 딸 이름을 방송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조지아주 하급심에서는 언론매체가 강간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지아주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콕스>사는 보도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라며 항소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의 화이트 판사는 사생활 보호와 언론 자유 간의 충돌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언론의 보도는 시민들에게 정부 기록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범죄의 기소와 판결에 대한 정보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두 번째, 이미 공개 기록에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도 희미해질 수 있다는 두 가지 근거에 따라, 조지아주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화이트 판사는 조지아주 법처럼 언론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자의 취재 의욕을 꺾고 언론의 자기 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2. Florida Star v. B.J.F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판례가 ‘*Florida Star v. B.J.F*’ 사건이다. 1983년 10월, <플로리다 스타>지는 잭슨빌 듀빌 카운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이때 경찰국은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한 사건보고서를 작성해 기자실에 게시했고, <플로리다 스타>지 기자는 성폭행의 자세한 내용과 피해자의 실명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보도 후, 피해자인 프리드먼과 그녀의 가족은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받았고, 프리드먼은 정신적인 피해를 근거로 <플로리다 스타>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플로리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은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로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며 <플로리다 스타>지의 손을 들어주었고, 불법행위법에 따른 책임부담의 위험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호했다.

3. State v. Globe Communications Corp.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의 성폭력 재판 역시 피해자 신원 공개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다(Coombs, 1993; Matoesian, 1995). 1991년 패트리샤 보우먼(Patricia Bowman)은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William Kennedy Smith)를 강간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NBC>와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몇몇 언론사들이 그녀의 신상을 공개하며 과거 성적 행적을 자세하게 보도했고, 이는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팜비치 카운티 검사는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Globe Communication>이 플로리다 성폭력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경범죄로 기소했으나, 1994년 항소심 판결 *State v. Globe Communications Corp.*에서 재판부는 <플로리다 스타>지 사건을 인용하며 “만약 신문이 공공의 중요 사안에 대해 합법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얻는다면, 주 공무원들은 주의 이익증진과는 상관없이 해당 정보의 출판 및 보도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행위를 미화하고 낭만화시키는 언론의 무감각함(insensitivity)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자, 이러한 보도와 유명인의 지위가 배심원들이 내린 최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보공개가 배심원에게 미칠 영향력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ermidan, 1994).

4. People v. Bryant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은 콜로라도주의 ‘*People v. Bryant*’ 판결이다. 2003년 7월 콜로라도주는 NBA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피해자는 반대 심문에서 성폭행으로 인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제시했고, 여기에 브라이언트 측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3일 동안 세 명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의 성경험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실수로 피해자에 대한 문건이 언론에 전송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과거는 <LA 타

임스)와 기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콜로라도 법원은 기존의 판결 경향을 뒤집고, 피해자의 잠재적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권리가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보다 우선하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콜로라도 주 판결은 과거 재판부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개인의 사생활권이 충돌하는 경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한 것과 달리, 피해자 프라이버시권의 잠재적 침해가 극심하다면 수정헌법상 언론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법리적 의미가 크다(Fialkow, 1995; 류병관 2010 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성 판단 기준’이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 코비 브라이언트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언론보도에서도 첨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Yes means Yes 룰’을 적용한 “학생안전: 성폭력 법(Student Safety: Sexual Assault bill)”을 인준해 교육법(Education Code)에 삽입하였다. 해당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성폭력 여부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합의’를 가장 우선시하고, 성관계에 한해서는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의사 표현만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물론, 이는 엄밀히 말해 형사입법은 아니며 대학의 재정지원 요건에 관한 사안이지만 실제 성폭행 재판의 핵심인 ‘피해자 동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피해자 저항의 적극성 여부도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쟁점 중 하나로 강간에 대한 협소한 정의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편견과 2차 가해로 이어져 피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피해자의 저항이 “극도의 저항”(utmost resistance)이었는지, “진지한 저항”(earnest resistance) 혹은 “합리적 저항”(reasonable resistance)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해서 변해왔다(Lafav, 2019). 오늘날 미국 모범형법전 제213조는 비동의(Nonconsent)를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의 거부(refusal to consent to sexual intercourse or sexual contact)로, 이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된 것(communicated by either words or actions)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3년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성범죄 통계에서 강간을 “여성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성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과거 피해자의 침묵이나 저항 없음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인식되고 2차 가해가 이루어졌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 상당 부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범죄 보도에서는 필연적으로 특정인의 인격권, 언론 표현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등 다양한 인권 문제와 헌법상 기본권들이 교차한다. 여러 법적 쟁점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 권리 법령으로 생기는 프라이버시권(The Right of Privacy)과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 근거한 언론의 자유 간 충돌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과거 연방법원이 피해자의 사생활권이 수정헌법 제1조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회피한 전례들에서 기인한다.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사건의 맥락을 해석하는 법원의 자율성에 달린 것이다.

재판부의 해석 이외에도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로, 즉, 수단의 적법성도 상충하는 권리의 우위성을 판단할 주요 근거이다. 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언론이 공식적인 경찰 보고서(Florida Star, 491 U.S. p. 532), 재판기록, 혹은 문서를 통해(Globe Communications Corp., 648 So. 2d, p. 111) 정보를 취득했다면, 연방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에 무게를 두어, 피해자의 권리 법령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코비 브라이언트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이 보도할 경우, 마치 ‘증거로 인정된 것과 동일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극대화될 것을 고려하여 판결했다고 밝혔다(Haddad, 2020). 이는 재판과정의 변수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사생활권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언론보도의 자유와 피해자 인격권 간 충돌에는 여러 차원의 맹점이 존재한다. 전자를 우선시할 경우, 정보 공개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미디어의 과열된 보도로 인해 왜곡된 성적 고정관념이 재생산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들은 다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인격권을 보호하는 현 제도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실상, 언론이 피해자의 이름 혹은 신원‘만’ 노출하지 않는다면 다른 배경 지식 공표는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공개 문제는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성폭력피해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두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언론에 의한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가의 질문까지 포괄하고 있다(Berlin, 1995).

IV.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자율규제

지금까지 수사과정 혹은 재판과정 중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 인격권 침해 사례와 관련 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사건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언론사와 시민단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알아본다.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적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1994년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개최된 성범죄와 미디어(Sex Crimes and the Media) 세미나이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언론계, 학계, 피해자지원단체들은 모두 성범죄 관련 보도가 다양한 주체들의 이익이 얽힌 복잡한 문제임에 동의했고, 언론인은 취재원과 청중에게 상반된 책임의식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각계 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참석자들은 모든 사건에 적용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Black, 1994). 이와 관련해, 제이 블랙(Jay Black)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교수는 강간사건을 보도하는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Black, 1995). 다시 말해,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은 이미 모두 정당하고 고유한 헌법적 권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우위에 둘 것인가?’의 질문을 넘어서지 못하면 딜레마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Black, 1995). 더 나아가, 해당 주제를 둘러싼 논쟁이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피해자의 인격권의 세 가지 상충되는 법리적 관점에만 국한되는 경향은 공동의 해결책 마련에 장애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블랙(1995)은 문제 해결에 있어, 현장에서의 한계로 저널리스트들의 전문성도 지적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인과 편집인은 사회심리학이나 범죄학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 범죄보도 준칙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다. 이러한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와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는 불필요한 가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바움 외(Baum et al., 2018) 또한 성폭력 보도의 질은 지역 규범과 강간 문화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장치 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사쓰기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1. 미국 내 주요 연구소 및 NGO의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이처럼 언론보도에 있어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조직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디어와 성범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나 비영리연구소(Poynter), 시민조직(Chicago Taskforce on Violence Against Girls & Young Women, Michigan Coalition Against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NSVRC: 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자들을 위한 성범죄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이 언론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보도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사용

성범죄보도 가이드라인은 주로 적합한 용어 사용과 취재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닛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센터(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의 브루스 샤피로(Bruce Shapiro) 교수는 “많은 뉴스 기관에서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글을 쓰는 방식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범죄보도 관련 용어 선택에 있어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피해자(victim)’와 ‘생존자(survivor)’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범죄의 희생자를 지칭할 때는 손해를 가한 주체 즉,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피해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언어 담론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학계에서는 비관적이고 패배적인 용어인 ‘피해자(victim)’가 아닌, 무력한 상태에 갇히지 않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뉘앙스의 ‘생존자(survivor)’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종종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과장한다는 비난을 받는 성폭력 피해자 불신의 문화를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불리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실제 NPR(National Public Radio) 지침에서도 성폭력은 보통의 성관계가 아니고, 강간(rape)과 폭행(assault)도 서로 다른 단어로 구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생존자’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존자’라는 용어가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동사 표현 및 인용 방식의 문제이다. 관습적으로 영문 기사에는 행위 주체의 의견을 제시할 때, ‘주장하다 (“allege,” “alleged”)’ 혹은 ‘주장한 바에 의하면(“allegedly”)’ 등의 표현이 자주 채택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역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바,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은 지양(Garcia-Rojas, 2011 The Chicago Taskforce’s media toolkit)하면서 “police say” 또는 “prosecutors say”와 같이 주장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Newscript.com, 2012).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admit’과 ‘confess’도, 범죄의 생존자로서 극복 의지보다 책임과 수치심 등 ‘패배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 번째, 관련 단체들은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재해석한 글이 아닌,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여 대중에게 전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요 경험이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 외에도, 가해자를 삭제하고 피해자를 부각하는 수동식 표현(“was raped”),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표현,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는 상해를 입지 않은(physically unharmed), 부부싸움(domestic dispute) 등도 금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모호하게 만드는 용어인 성행위(sexual activity), 추행(molest), 성적 쾌락을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용어인 애무하다(fondle), 구강성교(oral sex) 등의 사용 역시 자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래는 미네소타 성폭력 피해자 지지 모임이 만든 저널리스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용어 사용 예시이다.

〈표 1〉 MNCASA의 저널리스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용어 사용 예시

Problematic Language:	Alternate Suggestion in Judicial Reporting:
Engaging in sexual contact	Forced penile-vaginal or anal penetration or rape
Intercourse/ Insertion of penis	Forcibly touched
Panties	Underwear or undergarments
Private Parts	State body part - i.e. vagina, breasts, buttocks, penis For children use terms nipple or underdeveloped chest, not breast
Climax	Ejaculation
Kissed	Placed/Put/Forced his mouth on the victim/survivor's mouth/nipple/ vagina/neck/stomach/penis (body part)
Molestation	Forcible touch of the victim/survivor's intimate body part. Distinguish if penetration involved.
Accompanied/guided victim	Carried, brought, compelled, forced victim/survivor
Stroking	Forcible physical or manual contact on victim/survivor's intimate body part
Victim received/ performed oral sex	Forced mouth onto victim/survivor's genitals/Forced penis into victim's mouth

출처: MNCASA(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Guide for Journalists

(2) 피해자 실명 공개

미국 사법부 피해자보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서 헐박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범죄는 사회적 통념상 불명예스러운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법제상 피해자의 신상은 이름을 제외한 일부 정보만을 공개·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익명보도 원칙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최적의 수단'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이 이들의 신원공개 여부에 좌우된다는 강한 믿음과는 달리, 마이클 가트너(Michael Gartner)는 가정 내 폭력에서는 익명보도가 피해자에게 더 큰 가해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가정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강간에 대한 낙인이 강화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이 역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Gartner, 1991).

〈Des Moines Register〉의 편집장이었던 오버홀서(Geneva Overholser)도 1990년대 성범죄 생존자이자 피해자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운동가인 낸시 지겐마이어(Nancy Ziegenmeyer)의 경험을 보도하며, 가트너와 유사한 주장을 제시했다. 당시 오버홀서는 제인 쇼어(Jane Schorer) 기자와 함께 대학 내 주차장에서 14개월간 성폭행을 당한 낸시 지겐마이어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5편의 연재 기사를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침묵해왔던 여러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Public Service 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보도 경험을 토대로, 오버홀서는 피해자 비난과 익명보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실명이 공개되어도 사생활은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Margolick, 1990). 동시에, 역으로 익명처리 보도의 궁극적인 목적-피해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물론,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을 경우, 비공개실명이 더 크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온전한 인격체인 성인의 정보를 숨기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유아화(infantilized)시키는 것이라 비판했다(Duara, 2014). 더 나아가, 익명처리 관행은 가정폭력 혹은 성범죄의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의 실명 공개가 가져오는 개인적·사회적 이득-유죄판결과 침묵해온 피해자들의 고백 등-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3) 기사의 초점

성범죄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제를 선별하는 기자의 관점 또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기사의 핵심 주제와 이를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 일회성의 가십이 될 수도, 혹은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기여하는 탐사보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사의 초점’ 문제는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버클리 미디어 연구소(Berkeley Media Studies group, 2015)는 2011년부터 2013년 〈뉴욕 타임스〉를 포함한 미국의 우수 언론사 17곳의 성폭력 뉴스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기사의 절반 이상이 피고인의 구속이나 재판 과정 등 사법체계에 대한 내용인 반면, 생존자 치료 및 재활 소식이나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한 기사는 각각 6%와 8%에 불과했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취재 시 언론인이 첫 번째, 특정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다양한 성범죄의 맥락을 이해하고 재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제도의 문

제를 관찰하고, 두 번째, 재판장 밖에 있는 취재원을 적극 인터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발생 1년 이후, 피해자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중에게 시사점을 던지는 측면에서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선 보도준칙이 이상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스턴 글로브>의 가톨릭 교회 성스캔들 보도와 <뱅거 데일리 뉴스(Bangor Daily News)>의 ‘Proof’ 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 2001년 당시 <보스턴 글로브>는 펜실베이니아 가톨릭교회에서 90명 이상의 사제가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을 기사화하며, 성직자 개인이 아닌 범죄를 은폐한 교단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폐쇄적인 시스템을 집중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아동 성추문 문제를 용감하고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2003년 Public Service 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한편, <뱅거 데일리 뉴스>가 2013년에 제작한 ‘Proof’ 시리즈는 영상 인터뷰를 활용해 성범죄 ‘생존자’들의 경험과 회복 과정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또 다른 탐사보의 예시로, 2015년 <프로퍼블리카>의 크리스천 밀러와 마샬 프로젝트의 켄 암스트롱이 취재해 2016년 풀리처 상을 수상한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An Unbelievable Story of Rape)”를 언급할 수 있다. 2008년 웨스트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 여성(마리)이 무단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접수된다. 그러나 경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가 거짓이었음을 시인한다. 이후, 피해자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고 합의로 사건은 마무리된다. 몇 년 후, 두 형사의 끈질긴 추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인이 콜로라도에서 몇 명의 다른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밝혀진다. 밀러는 형사들의 수사를, 암스트롱은 마리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범법자로 만든 워싱턴 경찰을 취재했고, 6개월 간 마리를 설득한 끝에 해당 사건을 기사화한다. 두 기자의 취재방식과 기사 구성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6개월 이상에 걸쳐 성폭행범의 접견권을 확보했지만, 범죄자의 인터뷰는 단 한 차례만 인용되었다. 또한, 보통의 사건사고 기사가 범죄 상황 묘사에 치중하는 반면, 해당 기사에는 디테일은 포함하되 절제된 어조로 서술된 단 몇 문장만이 실렸다. 이 사례는 연쇄 강간사건의 엽기성과 선정성이 아닌, 성폭행 이후 피해자의 삶과 경찰 조직의 명암, 성범죄 생존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보도형태라 할 수 있다.

NPR 지침에서도 기자들에게 보도된 사건 속 사람이 아닌, 범죄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안한다. 다시 말해, “10대 강간피해자 소녀”와 같이 등장 인물의 성별, 나이, 외모 등에 대한 과도한 묘사보다 “성폭행을 당했다(했다)”는 사건 행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NPR 지침은 가해자를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인물이라는 “예고자”나 “추악한 괴물” 등으로 지칭하는 경향도, 여성들로 하여금 성폭력의 경고 신호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뉴스 훅(News hook)

일반적으로 뉴스 훅(News hook)은 특정 이벤트에 대한 매체와 대중 모두의 관심을 자극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의미한다. 특히, 성폭력 보도에서는 “오늘 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가”와 같은 기폭제 역할을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뉴스 훅이 매력적인 기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청자의 주목을 받고, 경쟁 기사와 비교해 여러 매체를 통해 (재)확산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범죄 기사에 있어서의 뉴스 훅은 기자와 편집인이 특정 사건의 세부적인 요소들 중 무엇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지, 더 나아가 대중의 관심을 어디로 유도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는 앞서 서술한 ‘기사의 초점’과 유사할 수 있지만 ‘기사의 초점’이 주제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라면, ‘뉴스 훅’은 기사거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구성과 표현 방식에 방점이 있다.

전술했듯이, 성폭력 범죄를 다룬 과반수 이상(51%)의 기사들은 재판이나 체포, 유죄 여부 등 해결책은 부재한 채 형사재판 과정에 치중하고 있었다(Berkeley Media Studies group, 2015). 전체 기사의 9%를 차지한 공인 혹은 유명인과 관련한 사건보도들도 개별 사례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폭행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채택한 연방정부의 정책 기사는 단지 6%에 불과했다. 물론, 성범죄 재판과정이나 관련법 개정을 다루면서도,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뉴스 훅으로 설정한 일부 보도들이 존재한다. 한 예로, 2013년 텍사스 달라스 뉴스의 아동 성매매 개혁 요구에 관한 기사에서는 핵심 배경과 맥락(미국에서 아동 밀매 사건의 20%가 텍사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며, 관련 법의 합법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Berkeley Media Studies group, 2015).

이와 관련해 MNCASA(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미네소타 성폭력방지연합)에서는 성범죄 언론보도 시, 묘사에 있어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접근 방식, 흥기 사용 여부, 물리적 폭력이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와 연관성이 높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세부사항(사생활, 습관, 옷차림, 외모 등)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대중에 의한 2차 가해로 번질 우려가 있는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도발적으로 옷을 입은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 흥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았다.
- 피해자는 10대 소녀였다(나이 관련).
- 피해자는 성매매를 시도했다. 만취한 상태였다. 자의로 가해자와 동행했다.
- 피해자는 과거 범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

(5) 인터뷰방식

피해자의 경험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윤리적 감수성이 요구된다. 많은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자는 숙련된 인터뷰 기술, 법률에 대한 이해, 트라우마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가능하다면 여성이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적어도 동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Chicago media toolkit, 2011). 이와 관련해, MNCASA의 “성폭력 보도: 기자들을 위한 가이드(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guide for journalist)”에서는 용어 사용방식뿐만 아니라 인터뷰 상황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올바른 기자의 자세도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기자는 피해자의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소속과 인터뷰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두 번째, 인터뷰 질문은 공정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답변을 얻기 위해 강요, 회유, 속임수, 보수 제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많은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 당시 기억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다. 이에 기자는 피해자의 고백이 매우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질문들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2009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한 공공청렴센터(Center for Public Integrity)의 크리스틴 롬바르디(Kristen Lombardi)는 성범죄 취재에 있어서 증거와 문서 수집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이 외에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그들을 믿지만, 고백의 진실성과 신뢰도를 위해 미리 예상가능한 질문들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이라고 확신시켜줌으로써 인터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터뷰 시간, 장소, 속도 등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양도했다고 설명했다.

(6) 새로운 취재기법의 도입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MECASA(The Main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는 2013년부터 <뱅거 데일리 뉴스(BDN)>와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BDN>에서는 메인 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성폭력 인식의 달에는 관련 피드 30여 편을 발간했다. 한편, 언론사 직원들을 성범죄 관련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 및 기사 작성 시 주의할 사항(예를 들어, 고발자의 이름 혹은 식별 정보의 공표 지양)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2. 포인터 연구소의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미국 내 주요 연구소 및 NGO에서 제시한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권고사항은 크게 취재 과정(인터뷰 방식과 새로운 취재 기법)과 기사 작성(용어 사용, 피해자 실명 공개, 기사의 초점과 뉴스 혹)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며, 단계별 세부적인 대응방식이 존재했다.

성범죄 보도의 본래 목적은 공익 실천에 있다. 즉, 성범죄 보도는 단순히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발생률을 낮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담론을 둘러싼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아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잘못된 취재 관행과 인식은 피해자를 불필요한 폭력에 노출시키고, 인격권을 손상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된다. 취재 중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거나, 보도 이후에도 범죄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의 희생을 부각시키는 기사의 헤드라인 작성과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된 기사의 대표 이미지 선정, 피해 내용 상세 기술 등의 문제는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를 경험한 이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미국 내에서 배포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 중 자주 인용되는 비영리 언론교육기관 포인터 연구소(Poynter Institute)가 제안한 보도지침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기자들이 성범죄 사건 취재 전 자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목록으로, 취재 대상 선정부터 사실확인까지 취재의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지침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1) 보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해당 기사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기사 작성 전, 적절한 문서와 정보,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가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가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이드라인은 가해자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익 실현을 위한 기사화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이야기한다.

- 전·현직 임명직, 선출직 정치인
- 기타 분야의 영향력을 지닌 공인: 경찰서장, 교장, 교육감과 같은 강력한 공적 책무를 지닌 공무원
- 의사, 상담사, 교사 등 미성년자들과 접촉이 가능한 직종의 인물들

(2) 잠재적인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기자는 특정 사건의 잠재적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면, 더욱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 몇 명의 고발자를 확보할 수 있는가?
- 피고인은 여타의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접근할 수 있었는가?

(3) 성희롱(sexual harassment)인가, 성폭력(sexual assault)인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가? 일반적으로 성희롱과 성폭행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용어의 본질은 확연히 다르다. 권력자에 의한 성폭행은 높은 뉴스가치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

다. 한편, 와인스타인, 로이 무어 알 프랑켄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치한(sexual harassers)은 신체적 폭행범(assailant)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언론은 기준이 모호한 희롱보다는 형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폭행 사건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희롱은 권력 남용의 부작용으로 거의 모든 조직에 만연하며, 여전히 유리천장이 유효한 현 사회에서 불평등한 구조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취재 시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보도를 준비해야한다.

- 수십 년 전에는 묵인되었으나 현재는 범죄로 인정되는 성희롱의 경우, 그 행동 기준에 대해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 성희롱 혹은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지식이 필요한가?
- 특정인에 의한 성희롱 피해의 주장은 불평등에 기여하는 조직의 폭력적 문화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가?

(4) 취재원 사용과 사실 확인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취재원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확인 가능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는가? 사안에 따라 성희롱 혹은 성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많이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만약 취재원이 자신의 경험을 주변의 친구 혹은 가족과 공유했음을 밝힌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가?
- 고용 날짜와 시간, 여행 이벤트,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사건 전반을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거가 존재하는가?

(5) 익명 취재원 출처의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언론보도 시, 피해자들은 정당한 이유에 따라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사는 이를 이해하는 동시에,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원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기사 내 모든 취재원이 익명으로 처리된다면, 보도 전 확보해야 할 취재원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 인터뷰에 응한 익명 취재원들은 가해자의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실명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 익명 취재원 사용에 있어 공유된 지침을 따르고 있는가? 익명 취재원 실명이 선임 에디터에게 공개되었는가? 유사한 주장을 하는 별도의 익명 취재원이 존재하는가?
- 어떠한 조건에서 익명 취재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가? 취재원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보도로 인해 언론사가 고소를 당할 경우, 취재원은 이름을 밝힐 의향이 있는가?

(6) 피해자를 대면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있는가? 피해자와의 만남에서 기자는 불필요한 가해와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 본격적인 취재 전, 보도의 전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해아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
- 피해자가 상담서비스를 받도록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 피해자가 인터뷰에 응할 수 있을 만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 섬세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가?(개방형 질문 마련, 성폭력 보도 과정 소개 등)
- 혐의 폭로를 통해 피해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이러한 동기는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7) 어떻게 피의자들에게 기사의 공정성을 증명할 것인가? 저널리즘의 원칙 중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피의자로부터 정당한 답변을 받고 싶다면, 피의자에게 취재한 이야기와 정보를 공유한 후 답변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피의자에게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
- 주장의 깊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후속 기사를 작성할 의향이 있는가?
- 독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기사를 포함, 취재의 전 과정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 기자가 정보의 출처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대다수의 경우 고소인의 이름은

피의자에게 공개된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기사작성 시 적합한 어조와 언어는 무엇인가?** 글쓰기에서 의미 전달 방식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상으로 중요하다. 의도적으로 사건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것은 기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비판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어가 포함되었을 경우, 어떻게 글을 수정할 것인가?
-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건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서술할 것인가?
- 기사의 헤드라인, 티저 광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여타의 광고 글들이 기사 자체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 인터뷰 영상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게시할 것인가? 혹은 편집해 공개할 것인가?

(9) **기사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가이드라인은 기자로서 독자들과 취재의 전 과정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 취재보도 과정을 구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 해당 기사를 왜, 어떠한 이유로 취재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피해자들이 어떻게 당신의 취재원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취재원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당신이 한 노력은 무엇인가?

V. 소셜미디어와 피해자 인격권

오늘날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례는 과거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Koslow, 2013). 특히, 소셜미디어가 고유의 특수성으로 21세기 여성운동의 근거지로 부상하면서 역설적으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운동의 본질에 대한 왜곡은 더욱 심화되었다(Stubbs-Richardson et al., 2018). 실제로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SNS 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상과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비난과 모욕이 일상화되는 등의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 현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도 SNS 상에서는 피해자 옹호보다 비난하는

게시물이 더 많이 공유되고(Stubbs-Richardson et al., 2018), 피해자의 정보와 사진 게시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Almasy, 2013).

한편, 오늘날 성폭행피해방지법 관련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피해자의 증거로 채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소셜미디어 등장 초기, 재판부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단순 가십으로 취급하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주 커먼웰스 대 모건(Commonwealth v. Morgan)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릴 만큼 입증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소셜미디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맹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강한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특성상, 포스팅은 당시 작성자의 정황, 기분 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힘들고, 이용자는 실제 상황과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다양한 기능(좋아요, 팔로우, 프로필 기분 표시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가해자들은 유리한 재판을 위해 피해자의 과거 사진이나 신상정보, 고소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적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게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배심원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포스팅만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거나(Diss, 2013),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에게 더 낮은 징역형을 권고하기도 한다(Wagner, 2013).

이처럼 소셜미디어 포스팅은 역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폭력피해방지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배치되는 바, 최근 성폭력사건에 한해 소셜미디어 증거물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Kowslow, 2013; Janzen, 2015).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 속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성폭력피해방지법은 전통적인 미디어 출판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상에서 새롭게 등장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역부족이라 지적한다. 이에 후속 개정에서는 소셜디어를 포함, 다양한 매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피해 양상과 그 속성을 분석·반영함으로써 현행법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Birdsell, 2014; Janzen, 2014; Lowen, 2015).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정보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변화될수록 관련 법도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현행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소셜미디어상 인격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사례 1

2011년 8월, 미국 켄터키주의 사바나 디트리히는 친구들과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피해 동영상을 촬영해 디트리히의 사진과 함께 온라인에 유포했고, 이로 인해 1급 성적 학대와 관음행위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플리바기닝(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제도; 유죄협상)과 이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도금지명령(gag order)을 내렸다. 이에 디트리히는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위반하고, 6개월의 징역과 500달러의 벌금형을 감수하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해자의 신상을 게시했다. 이후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용기를 내서 성범죄를 신고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나를 침묵시켰다”고 주장했다(Lash, 2012).

○ 사례 2

2012년 아리조나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성폭행 혐의로 동급생들을 신고한 후, 해당 학교 재학생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모욕적인 비난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는 재학생들로 인한 2차 가해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가 성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타이틀 IX(Title IX)²⁾을 어겼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리조나 연방지방법원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사이버불링은 실질적으로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주로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페이스북 댓글이 학교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현실적으로 학교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 사례3

2017년 7월 5일, 천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로버트 카다시안(Robert Kardashian)은 자신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 약혼녀인 블랙 차이나(Blac Chyna)의 노출

2) 1972년 제정된 Title IX(타이틀 나인)은 대학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초기에는 대학이 남성 위주의 스포츠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활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 오바마 정부는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도 타이틀 IX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현재 해당 법률은 대학 내 성범죄 발생 시, 경찰 조사결과와 사법부 판결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증거(the lowest possible standard of proof)가 존재한다면, 대학은 성폭력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녀가 외도를 했으며 아이 주변에서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동의하지 않는 음란물을 게재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경범죄로 분류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SNS에 게시된 증거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자극적인 프로필 사진과 같은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도록 허용할 경우, 배심원의 입장에서 피해자 주장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판결하고, 카다시안이 블랙 차이나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로서 성폭력피해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위 사건들은 현행 성폭력피해방지법과 보도금지 명령이 역으로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 1>의 피고인들은 디트리히의 영상과 사진을 게시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디트리히 역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Kennerly, 2012). <사례 2>의 경우, 동급생들로 인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보여준다. <사례 1>과 같은 쌍방향의 사생활 침해는 기존의 성폭력피해방지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다(Birdsell, 2014). 또한, 미국 전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리벤지 포르노나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온라인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오프라인 기반의 기존 법에 호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하는 상호작용 형태를 반영하지 않은 성폭력보호법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Desai, 2014). 또한, 오늘날 수정헌법 제1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리벤지 포르노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성적 발언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앞서 <사례 2>와 <사례 3>은 대면적인 상황을 전제한 피해자 인격권 보호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Birdsell, 2014; Janzen, 2014; Lowen, 2015).

VI. 결론

종합하면, 미국의 성범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인격권 침해 논의는 피해자의 프라이버

시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기본권 속에서 사법제도와 민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피해자보호법을 통해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연방법원은 미디어 매뉴얼을 토대로 수사 중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비롯된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소셜미디어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개정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수호 대상인 ‘수정헌법 제1조’로 인해 대다수의 판결은 여전히 언론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하다(Clark, 2007). 2000년대 이후로 피해자 인격권을 우위에 두는 예외적인 판례들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주 법원은 연방대법원의 전통적인 판결인 언론의 자유 수호를 따른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필연적인 제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언론사와 시민단체, 개인 활동가들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 학술연구소와 시민단체들은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언론사가 윤리적 차원에서 성범죄에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피해자 인격권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기사가 보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취재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사에서는 기자 개개인이 피해자 인권 보고의식 함양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사건 전문기자와 보도감시제도를 도입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미투 운동 이후, ‘젠더에디터’ 직을 만들고 여성 독자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이상 반영하자는 논의를 해나가고 있으며(Probolus, 2020), 젠더 관련 카테고리(Gender & Society) 신설, 젠더 이니셔티브(Gender Initiative)를 런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노력과 비교할 때, 국내에서도 제도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미 연방증거법 규정의 세부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류병관, 2008; 김일용, 2010). 국내에서도 피해자의 특별한 성적 취향(sexual predisposition) 혹은 성적 패턴과 성매매 과거 등 성관계 이력이 2차 가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피해사실을

공개한 여성들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피해자다운 피해자’인지 평가받으며,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윤지영, 2018). 설상가상으로 국내 일부 언론들도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반영한 선정적인 성폭력 기사들을 여전히 ‘특종’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신설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성폭력상담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들도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의 피해자 인격권 보호 활동들은 인권·복지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 상담, 보호와 수용, 혹은 치료 차원 등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도 한국기자협회가 제공하는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의 형식적 선언 이상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소와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제공하는 미국의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국내의 보도 지침은 윤리적인 차원의 제안 수준에 불과하다. 성범죄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침을 넘어선 실천적 의미를 내포한다. 실제 논의 과정 속에서 관행으로 치부해 온 윤리원칙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또 다른 의견 개진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까지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확립은 단지 올바른 언론의 역할과 기사 쓰기 방식에 대한 고민만이 아닌, 가부장제 사회 속의 상징적 사건으로써 성폭력을 읽어내고, 그 저변의 문제들을 탐구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강기정·류병관 (2018). 형사절차상 압수·수색에서 디지털 증거수집의 적정성 확보 방안. <법학연구>, 29(3), 153-176.
- 김일용 (2010). 성범죄에 대한 미국연방증거규칙의 대응과 도입가능성. <법조>, 59(12), 77-113.
- 류병관 (2008).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거제한에 관한 연구-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 (Rape Shield Law)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8(1), 365-392.
- 윤지영 (2018).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절차법적 개선 방안 모색: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용 제한 및 역고소 남용 대응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0(1), 175-202.
- Arenella, P. (1995). Foreword: OJ Lesson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69 (4), 1233-1266.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scal69&div=35&id=&page=>
- Almasy, S. (2013, March, 17). Two teens found guilty in Steubenville rape case. CNN, Retrieved from <https://edition.cnn.com/2013/03/17/justice/ohio-steubenville-case/index.html>
- Anderson, M. J. (2002). From chastity requirement to sexuality license: Sexual consent and a new rape shield law.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0(1), 51-162.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gwlr70&div=10&id=&page=>
- Ayres, S. (2012) “Expanding rape shield laws: Breaking through prejudice for better protection of battered women. *Cardozo Journal of Law & Gender*. 19(3): 821-836
- Baum, M., Cohen, D. & Zhukov Y. (2018). Does Rape Culture Predict RApe? Evidence from US newspapers, 2000-2013.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263-289. Retrieved from <https://dash.harvard.edu/handle/1/38435482>
- Berkeley Media Studies Group (2015). What’s missing from the news on sexual violence? An analysis of coverage, 2011-2013. Berkeley Media Studies

- Group. Retrieved from <http://www.bmsg.org/resources/publications/issue-22-whats-missing-from-the-news-on-sexual-violence-an-analysis-of-coverage-2011-2013/>
- Berlin, B. J. (1995). Revealing the Constitutional Infirmities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Florida's New Privacy Statute for Sexual Assault Victims.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23(2), 513-560.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flsulr23&div=30&id=&page=>
- Black, J. (1995). Rethinking the naming of sex crime victims. *Newspaper Research Journal*, 16(3), 96-112.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77/073953299501600309>
- Blanding, M. (2017, March, 15) Covering Sexual Assault. Nieman Foundation Report. *Nieman Foundation*. Retrieved from <https://niemanreports.org/articles/covering-sexual-assault/>
- Browning, J. (2011). Digging for the Digital Dirt: Discovery and Use of Evidence from Social Media Sites, *Science & Technology Law Review*, 14(3), 465-469.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comlrtj14&div=26&id=&page=>
- Bryan v. State, 2010 WL 1137038 (Tex.App.-Fort Worth 2010)
- Burgess-Jackson, K.(1999) 'A History of Rape Law,' in Keith Burgess-Jackson (ed.) *A Most Detestable Crime:New Philosophical Essays on Rape*. Oxford University Press.
-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Retrieved from <https://psycnet.apa.org/buy/1981-08163-001>
- CBC Radio. (2019, Aug, 22). "An enormous change in the news agenda": How trauma-informed reporting is transforming journalism. CBC. Retrieved from <https://www.cbc.ca/radio/thesundayedition/the-sunday-edition-for-august-25-2019-1.5256740/an-enormous-change-in-the-news-agenda-how-trauma-informed-reporting-is-transforming-journalism-1.5256757>
- Chicago Taskforce on Violence Against Girls & Young Women, (2011). *The Chicaco taskforce tookit: Reporting on Rape and Sexual Violence*. Retrieved

- from <https://barcc.org/assets/pdf/Chicago-Taskforce-Media-Toolkit.pdf>
- Clark, C. (2007). Collateral damage: how closing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s flouts the Constitution and fails to benefit the child. *University of Louisville Law Review*, 46(1), 199-224.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branlaj46&div=9&id=&page=>
- Commonwealth v. Morgan, 2015 WL 9263617 8 (S.C. Penn. 2015)
- Coombs, M. I. (1993). Telling the Victim's Story. *Texas Journal of Women & Law*, 2, 277-315.
- Corrigan, R. (2013). Up against a wall: Rape reform and the failure of success. NYU Press.
-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420 U. S. 469. (1975)
- Desai, S. (2015). Smile for the camera: The revenge pornography dilemma, California's approach, and its constitutionality. *Hastings Constitutional Law Quarterly*, 42, 443-469.
- Diss, L. E. (2013).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e Inclusion of Social Media Evidence in Sexual Harassment Cases and How Courts Can Effectively Control It. *Boston College Law Review*, 54(4), 1841-1880.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bclr54&div=53&id=&page=>
- Dressler, J. (1995). *Understanding criminal law*. Matthew Bender.
- Doe v. Round Valley Unified Sch. Dist., 873 F. Supp. 2d 1124, 1136 (D. Ariz. 2012).
- Dura, N. (2014, Oct, 24) Is it ever okay to name victims?: Editors question the policy of omitting information in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cases. *Columbia Journalism Review*. Retrieved from https://archives.cjr.org/minority_reports/domestic_violence_reporting.php
- Fialkow, D. E. (2005). Media's First Amendment Rights and the Rape Victim's Right to Privacy: Where Does One Right End and the Other Begin. *Suffolk University Law Review*, 39(3), 745-772.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sufflr39&div=37&id=&page=>
- Florida star v. B.J.F., 491 U.S. 524 (1989)
- Franiuk, R., Seefeldt, J. L., & Vandello, J. A. (2008). Prevalence of rape myths in

- headlines and their effects on attitudes toward rape. *Sex roles*, 58(11), 790-801. Retrieved from <http://10.1007/s11199-007-9372-4>
- Gartner, M. (1991). Document: Naming the Victim. *Columbia Journalism Review*, 30(2), 54.
- Haddad, R. I. (2005). Shield or Sieve—People v. Bryant and the Rape Shield Law in High-Profile Cases.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39(2), 185-222.
- Hess, A. (2012). Can Twitter Help Rape Victims Find Justice? *Slate*. Retrieved from <https://slate.com/human-interest/2012/07/savannah-dietrich-outs-her-rapists-on-twitter-and-facebook.html>
- Hermida, M. (1994). Trial by tabloid. *St. Thomas Law Review*, 7(1), 197-216.
- Janzen, S. (2014). Amending Rape Shield Laws: Outdated Statutes Fail to Protect Victims on Social Media. *John Marshall Law Review*, 48(4), 1087-1118. Retrieved from <https://repository.jmls.edu/lawreview/vol48/iss4/5/>
- Jacobs, J. (2020). #MeToo Cases' New Legal Battleground: Defamation Lawsuit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0/01/12/arts/defamation-me-too.html>
- Kennerly, M. (2012, Jul, 24). Savannah Dietrich: A Right To Lie, But Not To Criticize A Plea Bargain? *Litigation & Trial: The Law Blog of Plaintiff's Attorney Max Kennerly*. Retrieved from <https://www.litigationandtrial.com/2012/07/articles/series/special-comment/savannah-dietrich-free-speech/>
- Koslow, S. I. (2013). Rape Shield Laws and the Social Media Revolution: Discoverability of Social Media—It's Social Not Private. *Touro Law Review*, 29(3), 839-865.
- Kunst, J. R., Bailey, A., Prendergast, C., & Gundersen, A. (2019). Sexism, rape myths and feminist identification explain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the #metoo social media campaign in two countries. *Media Psychology*, 22(5), 818-843.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80/15213269.2018.1532300>
- Lash, J. (July 27, 2012). After a Sexual Assault, a Teen Victim Turns to Social Media.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Exchange.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Change*. Retrieved from <http://jjie.org/after-sexual-assaultteen-victim->

- turns-social-media/90464.
- Matoesian, G. M. (1995). Language, law, and society: Policy implications of the Kennedy Smith rape trial. *Law and Society Review*, 29(4), 669-701.
- Matoesian, G. M. (2001). *Law and the language of identity: Discourse in the William Kennedy Smith rape trial*. Oxford University Press.
- Margolick, D. (1990, March, 25) A Name, a Face and a Rape: Iowa Victim Tells Her Story.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1990/03/25/us/a-name-a-face-and-a-rape-iowa-victim-tells-her-story.html>
- 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2013).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Guide For Journalists*. 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Retrieved from http://www.mncasa.org/index_451_3523309454.pdf.
- Moffeit, M. & Lombardi, K. (January 19, 2012), Ethics and Practice: Interviewing Victims. *Dart Center for Journalism & Trauma*. Retrieved from <https://dartcenter.org/content/ethics-and-practice-interviewing-victims>
- Pennington, R. & Birthisel, J. (2016). When new media make news: Framing technology and sexual assault in the Steubenville rape case. *New Media & Society*, 18(11), 2435-2451.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77/1461444815612407>
- Reidy, M. (2004).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on Rape Shield Laws in High-Profile Cases: Is the Victim Receiving a Fair Trial.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54(1), 297-334.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cathu54&div=12&id=&page=>
- Reitan, E. (2001). Rape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Hypatia*, 16(2), 43-66.
- Roman, D. & Estrich, S. (2011). Under the Rape Shield: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Rape Shield Laws. Working Papers in Feminist Research, *UCLA Center for the Study of Women*.
- Stubbs-Richardson, M., Rader, N. E. & Cosby, A. G. (2018). Tweeting rape culture: Examining portrayals of victim blaming in discussions of sexual assault cases on Twitter. *Feminism & Psychology*, 28(1), 90-108.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77/0959353517715874>
- Schwendinger, J. R., & Schwendinger, H. (1982). Rape, the law, and private

- property. *Crime & Delinquency*, 28(2), 271-291.
- Sheffield E. (2013, February 8). Lawyers meet in Dallas on child sex-trafficking. The Dallas Morning News. Available at: <http://www.dallasnews.com/news/crime/headlines/20130208-lawyers-meet-in-dallas-on-child-sex-trafficking.ece>. Accessed June 30, 2015.
- Soshnick, A. Z. (1987). The rape shield paradox: Complainant protection amidst oscillating trends of state judicial interpretation.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8(3), 644-698.
- Stephen, R. S. (1992). Prejudicial Publicity Surrounding a Criminal Trial: What a Trial Court Can Do To Ensure a Fair Trial in the Face of a Media Circus. *Suffolk University Law Review*, 26(4), 1063-1083.
- State v. Globe Communications Corporation, 648 So. 2d 110 (Fla. 1994)
- Roman, D., & Estrich, S. (2011). Under the Rape Shield: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Rape Shield Laws. *Working Papers in Feminist Research*, UCLA Center for the Study of Women. Retrieved from <https://escholarship.org/uc/item/0w62h4dp>
- People v. Bryant, 94. P. 3d. 624(Colo), stay denied, 125 S. Ct. 1(2004).
- Poynter Institute. (2017). Which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stories should you cover? Here are some guidelines. Retrieved from <https://www.poynter.org/ethics-trust/2017/which-sexual-harassment-and-assault-stories-should-you-cover-here-are-some-guidelines/>
- Probolus, (2020, Feb, 14) Men, You Need to Listen to Women.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0/02/14/opinion/letters/nytimes-letters-women.html>
- Wagner, A. (Jan. 30, 2013). Social Media's Effect on Rape Culture, *The Quinnipiac Chornicle*. Retrieved from <https://quchronicle.com/37852/arts-and-life/social-medias-affect-on-rape-culture/>
- WAVAW. (n.d.). *What is Rape Culture?*. WAVAW Rape Crisis Centre. Retrieved from <http://www.wavaw.ca/what-is-rape-culture/>

I. 첫머리에

영국에서는 1976년 성범죄 법(Sexual Offences Act 1976)에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 보호가 명시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성범죄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IPSO(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BBC> 등 영국 언론사들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규율을 만들어 성범죄 보도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고에서는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가 가능한 영국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 자율규제기관인 IPSO가 수립한 ‘언론인 실천 강령(The Editors’ Code of Practice)’의 성범죄 보도 관련 조항들을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IPSO는 성범죄 보도에 있어 언론사들이 IPSO의 ‘언론인 실천 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범죄 보도 가이드선스(Guidance on reporting sexual Offences)’ 또한 최근 발간한 바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IPSO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발간한 ‘대언론 가이드라인(Contact with media)’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인 <BBC>의 경우, 어떤 자체적인 규정 도입을 통해 성범죄 보도를 규제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II. 일반 사건에서의 피해자 신원 공개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및 피의자 보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영국은 데이터

*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 미디어 석사, judaewu@hanmail.net

보호법(Data Protection Act)과 인권법(Human Right Act) 등을 통해 개인의 신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타자에 의해 이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신원 공개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목적인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원 공개가 수사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면 신원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보도도 마찬가지로,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추가적인 범죄를 막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데이터 보호법과 인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영국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2009년 가이드라인¹⁾ 배포를 통해 수사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여 수사를 용이하게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공익’은 범죄 예방, 범죄자 체포, 목격자 및 추가 피해자 제보,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 형사 사법제도 강화 등을 널리 포함한다. <BBC> 등 언론사도 이런 법리 해석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때에 피의자 신원을 보도하고 있다. 단, 피의자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는 보도가 제한된다. 이에 비해 범죄 피해자 신원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경우가 있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이들의 신원이 보도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재판단계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영국 사법제도에서 공개재판(open justice)의 원칙은 매우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다. 공개재판의 원칙은 재판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사법 중립성 수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가 재판을 방청하고, 이 내용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 또한 영국에서는 언론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상세히 보도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피고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정보 또한 일반적으로 보도가 가능하다.

1)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 of England, Wales & Northern Ireland (2009). GUIDANCE ON THE RELEASE OF IMAGES OF SUSPECTS AND DEFENDANTS. <http://library.college.police.uk/docs/acpo/ACPO-Guidance-Release-Images-Suspects-Media.pdf>

III.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신원 공개

공개재판 원칙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원공개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는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한 순간부터 평생 동안 자동적인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이전 수사단계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성범죄 범주에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는데, 강간, 성폭행, 노출, 어린이의 외설적인 사진 촬영 등이 대표적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은 성범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되거나 고소 취하 등과 관계없이 평생 보장된다.

이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보호는 1976년에 개정된 성범죄 법(The Sexual Offences Act 1976)²⁾ 제4조 ‘강간 등 사건에서 원고의 익명성(Anonymity of complainants in rape etc cases)’이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규정은 1975년에 강간 관련 법에 대한 리뷰가 이루어지는 동안 도입이 결정되었는데, 성범죄 피해자들이 본인의 성범죄 연루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성범죄 소송과 신고를 꺼린다는 판단 하에 도입되었다. 다만, 성범죄 법 1976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범죄 가해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해서도 익명성을 보장토록 했다. 이후 1988년에 피고에 대한 익명성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2010년에 신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다시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아직까지도 성범죄 피고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관련 법규는 1992년 성범죄 법(The Sexual Offences Act 1992)³⁾ 제1조 ‘특정 범죄 피해자의 익명성(Anonymity of victims of certain offences)’에서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 해당 규정은 성범죄 피해자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익명성을 평생 보장하도록 하여 익명성 보장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였고, 피해자의 신분이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보도를 지목, 특정하고 있다. 물론, 일부

2) UK Parliament (1976).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7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6/82/contents>

3) UK Parliament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2/34/section/1>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은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만 보호되므로,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사건 재판에 성범죄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후에 논의될 <더 아거스(The Argus)>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특수한 경우에 판사가 자동적인 익명성 부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법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가 본인의 익명성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16세 이하 피해자는 익명성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⁴⁾.

IV. 성범죄 보도와 자율규제

영국 언론사들은 성범죄 법에 근거하여 성범죄 보도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정보가 알려지거나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언론사들은 IPSO(Independent Press Standard Organisation)라는 독립적인 언론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영국 언론사들이 지켜야 할 자율 규정인 ‘언론인 실천 강령(The Editors’ Code of Practice)’⁵⁾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실천 강령 제11조와 제7조에서 성범죄 관련 보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1. 제11조 성폭행 피해자(Victims of sexual assault)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에 따르면, 언론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보도해서는 안 되며(must not identify victims of sexual assault), 성폭행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2019년 개정된 바 있는데, 기존에는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노출되

4) The anonymity only relates to the relevant proceedings. A victim may be identifiable in the context of unrelated proceedings. In certain circumstances, magistrates or the trial judge may lift the automatic rule of anonymity. Victims can choose to waive their right to anonymi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urt, so long as they are over 16. Victims under 16 cannot waive their right to anonymity.

5) IPSO (2019).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https://www.ipso.co.uk/media/1818/69196-ipso-editors-code-2019.pdf>

는 경우만 규제했다면, 개정된 규정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이 언론 보도 전 취재 과정에서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추가적인 제약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 개정의 배경은 일부 언론사들이 성범죄 사건 보도 전,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취재 과정에서 언론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가 보고 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규정이 도입되게 된 데에는 2016년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성범죄 사건 취재 과정이 언론인 실천 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룬 IPSO 결정례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IPSO 불만처리위원회(IPSO complaint committee)는 결정례에서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제11조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명시한 바 있다. IPSO는 이를 받아들여 2019년 제11조 내용을 <표 1>과 같이 개정했다.

<표 1>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 개정 내역

조항	제11조 성폭행 피해자(Victims of sexual assault)
기존	언론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지 않는 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게재해서도 안 된다 ⁶⁾ .
개정	언론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지 않는 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노출하거나 게재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취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에 대한 비정당한 폭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와 신중을 기해야한다. ⁷⁾

출처: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IPSO

사례 1.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성범죄 사건 취재⁸⁾

제11조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일리 메일>의 성범죄 보도에 대한 IPSO의 결정례에 따르면, <데일리 메일>의 기자들은 영국 워릭셔(Warwickshire) 지역에서 일어난 한 성범죄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3명이었으며, 가해자는 유

-
- 6) The press must not identify victims of sexual assault or publish material likely to contribute to such identification unless there is adequate justification and they are legally free to do so.
 - 7) The press must not identify or publish material likely to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a victim of sexual assault unless there is adequate justification and they are legally free to do so. Journalists are entitled to make enquiries but must take care and exercise discretion to avoid the unjustified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a victim of sexual assault.
 - 8) IPSO (2016). 16830-17 Warwickshire Police v Daily Mail.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16830-17>

죄로 판명되었다.

사건 피해자들은 <데일리 메일> 기자들의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 행위로 인해 본인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3명의 피해자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는 <데일리 메일> 소속의 한 프리랜서 기자가 그들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신원이 밝혀졌다고 보았다. 당시 기자는 전자기기를 통해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의 연락처나 이들 부모님의 연락처를 아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피해자의 친구는 이 명단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물론, 기자가 제시한 명단에 성범죄 피해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두 피해자의 친구는 당시 일어난 사실을 두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렸다. 부모님은 자신의 자식들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 또한, 친구는 본인이 이 사실을 지역사회에 더 널리 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해당 기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정보를 자신에게 노출했다는 것에 대해 큰 유감을 나타냈다.

두 피해자는 부모님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겼으며, 그들의 친구 또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피해자는 워릭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받았으나, <데일리 메일> 기자로 인해 자신들의 성범죄 피해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두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부모에게도 상당한 고통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 기자는 그날 저녁 두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찾아갔으며, 두 번째 피해자의 집에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피해자 또한 <데일리 메일>의 한 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찾아왔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기사’를 쓰고자 했으며, 부모님에게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피해자는 이 기자의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부모님이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메일>은 소속 기자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유발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이 사건이 IPSO의 ‘언론이 실천 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일리 메일>은 소속 기자가 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해보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프리랜서 기자는 두 피해자의 친구를 접촉하면서, 해당 친구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했

다고 주장하였다. 두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화 과정에서 기자의 핸드폰이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의도성을 가지고 보여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즉, 어떤 정보 노출도 ‘의도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두 피해자의 부모 집을 두 번 방문했으나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피해자 부모와의 만남에 대해 ‘피해자 기사’를 쓰고자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모의 자녀가 성폭행의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는 이들의 자녀가 이번 사건에 연관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녀를 만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데일리 메일>은 이번 사건이 IPSO의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당시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사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데일리 메일>은 그런 정보를 기사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사 기자가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를 위한 기자의 사건 취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행방과 연락처를 알기 위해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필연적으로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프리랜서 기자는 성범죄 사건과 명단 간의 관계를 설명한 바도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데일리 메일> 기자의 취재 행위가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향후 법원의 발표자료 이상의 수준으로 범죄 사건을 심도있게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하였다. 예를 들어, 경찰 언론 담당관에게 특정 사건의 자세한 사항을 물어볼 때, 해당 담당관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모르고 있었다면, 기자가 해당 담당관에게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어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인의 악성 범죄사건 취재 및 보도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데일리 메일>은 언론인의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 등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게 되는 것은 중요 범죄 사건의 보도라는 ‘공익’ 차원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이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언론의 이런 접근 활동이 없다면 성폭행 피해자들이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지 알 방법조차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 메일〉은 이번 사건이 언론인 실천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지만, 이를 관계자 및 임원에게 보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편지는 물론, 도의적 차원의 보상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데일리 메일〉의 합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판결만이 향후 성범죄 피해자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IPSO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성범죄 관련 보도에 있어,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은 법률과 언론인 실천 강령에 의해 보장된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판 중에는 피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출입기자들은 피해자의 신원과 같은 일반 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언론이 법원을 감시하고 법원이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론은 이런 민감한 정보를 보도에 이용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일 의무 또한 있다고 하겠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보도하면서 언론이 피해자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이며 정당화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그들의 경험이나 해당 범죄의 영향에 대해 인터뷰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 접촉은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의 권리와 사안의 민감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IPSO 위원회는 기자가 고소인과 관련된 제3자를 만남에 있어, 제3자가 고소인을 피해자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에서 기자는 성폭행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범죄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자가 소유한 명단의 인물을 찾고 있다고 했으며, 이들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미 해당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피해자의 성별과 대략적인 연령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가 제3자에게 고소인들의 이름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소인들이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과정의 결과로 고소인들이 해당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임이 고소인들의 부모에게 알려졌다고 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IPSO 위원회는 〈데일리 메일〉이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제2조 ‘프라이버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성범죄 피해

자로서 특정 사건에 연관된 것은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이며, 3명의 고소인은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메일>의 보도가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물론, 범죄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언론의 취재에는 공익적인 면이 있지만, 고소인들이 법률과 언론인 실천 강령에 의해 익명성의 권리를 보장 받는 상황에서 공익적 목적이 고소인들의 민감한 사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노출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IPSO 위원회는 <데일리 메일>이 성범죄 사건 보도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익명성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 익명성에 대한 조항인 제11조를 적용하지 못하고 제2조 프라이버시를 적용했다. 그 사유에 대해 제11조의 '모호성'을 지적하였다. <데일리 메일>의 행위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 권리를 침해한 것이 사실이나, 제11조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정작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조항인 제11조는 적용하지 못하였고, 차선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2조 프라이버시 조항을 활용하여 <데일리 메일>의 행위를 규제했다.

실제로 당시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는 “언론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지 않는 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IPSO 위원회가 제11조를 <데일리 메일>의 행위에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조항이 언론보도가 아닌, 취재 과정에서의 성폭행 피해자 신분 노출까지 포함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IPSO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향후 리뷰 과정에서 더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위원회 권고에 따라, IPSO는 지난 2019년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수정하였다. 수정 사항은 제11조에 “언론인은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에 대한 비정당한 폭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제11조는 언론 보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언론의 사건 취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 노출 문제까지 언론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2. 제11조 예외 조건 중 ‘충분한 정당성’ 이슈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는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 보호를 언론사들에 강제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1조가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는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어야 하고(legally free to do so), 둘째는 충분한 정당성(adequate justification)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될 때에만 제11조가 규정한 성범죄 피해자 익명성 보장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IPSO의 그간 중재 사건의 결정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조건 적용에 대한 논란은 그간 없었으며, 항상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슈가 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인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영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만 예외가 적용된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는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라도, 충분한 정당성까지 갖췄을 때만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언론중재사건에 있어 첨예한 대립점이 되고 있다.

사례 2. <데일리 레코드(Daily Record)>의 성범죄 피해자 실명 보도⁹⁾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데일리 레코드(Daily Record)>의 성범죄 사건 보도를 꼽을 수 있다. 해당 보도는 한 파티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의 가슴을 접촉한 혐의를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일어나, 스코틀랜드 지방법원으로 귀속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데일리 레코드>는 이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원고, 즉 추정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데일리 레코드>가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했다고 IPSO에 제소했다. 또한, <데일리 레코드>가 본인의 실명을 보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사에서 “본인이 본인을 성폭행 피해

9) IPSO (2015). 05764-15 A man v Daily Record.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05764-15>

자로 여긴다”라고 보도한 점도 문제삼았다. 보도 내용은 사실이나, 이를 대중에게 널리 보도함으로써 피해자 본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이 다른 성범죄 보도 사건과 다른 점은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경우,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자동적인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법률에 따르면 가능하다. 해당 보도가 나간 2015년 당시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는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지 않는 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은 성폭행 피해자 신분 노출에 있어 ‘충분한 정당성(Adequate justification)’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데일리 레코드〉는 성폭행 피해자 신분 노출에 있어 2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스코틀랜드 법에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판사가 판단하여 필요 시 이를 보장하도록 명령하게 되어 있는데 판사가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익명성 보호의 필요성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성폭행으로 분류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을 성폭행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피고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레코드〉가 보도한 바와 같이 원고 본인이 본인을 성폭행 피해자로 여겼을 뿐, 법원에서는 이를 성폭행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이 성폭행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제11조의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데일리 레코드〉는 주장했다.

하지만, IPSO 위원회는 이 사건을 언론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IPSO 위원회는 ‘성폭행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 법률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 익명성 보장의 목적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할 때,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함이기 때문이다. 성폭행 피해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신고 후에 법원이나 제 3자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면, 성폭행 피해 신고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11조에 명시된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에 있어 ‘성폭행 피해자’라 함은 피해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정의되며, 이 조항은 이 피해자가 피

해 사실을 신고하는 순간부터 적용¹⁰⁾된다고 보았다. 또한, 제11조에 따른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은 해당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거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¹¹⁾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것은 아니라는 <데일리 레코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SO 위원회는 법원의 무죄선고나 판사의 의견도 “원고가 스스로 규정한 본인의 성폭행 피해자 지위(Self-identified victim of sexual assault)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또한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언론사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하는 것이 위법이 아닐지라도, IPSO 소속 언론사는 언론인 실천 강령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에 관한 스코틀랜드 법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영국 언론의 성폭행 피해자 익명성 보호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IPSO의 강령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례 3. <더 아거스 (The Argus)>의 성범죄 피해자 실명 보도¹²⁾

<데일리 레코드>의 사례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에 있어 언론의 ‘충분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면 <더 아거스(The Argus)> 신문사의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했지만 ‘충분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다.

2017년 10월 13일에 영국 브라이튼 지역의 신문사 <더 아거스>는 기사에서 특정 여성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당 여성이 폭행과 경찰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기사는 해당 여성이 과거 TV의 재능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으며, 한 남성에게 스트립 댄스를 춘 후 그 남성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오히려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해당 여성이 TV 재능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진과 법원 밖에서 촬영된 사진을 게재하였다.

10) The Code apply as soon as a person complains that they are a victim of a sexual assault.

11) Regardless of whether the defendant is acquitted or the allegation is later withdrawn

12) IPSO (2016). 20796-17 A woman v The Argus (Brighton).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20796-17>

해당 여성은 IPSO에 <더 아거스> 신문사의 보도를 제소하며, 본인이 성폭행 피해자였기 때문에 <더 아거스> 신문사가 본인의 실명을 밝혀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본인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 아거스> 신문사 측은 관련 기사가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 피해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해당 여성이 남성에게 가한 폭행과 경찰 업무 방해에 대한 보도였기 때문에 제1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 아거스> 신문사는 성 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자동적인 익명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성폭행 사건과 별개의 범죄 사건을 보도하는 것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거스> 신문의 기사가 해당 여성이 성폭행 피해자 행세로 사법 절차를 남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보도했다는 점에서 해당 여성의 실명 공개는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IPSO는 <데일리 레코드> 신문사의 보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여성이 스스로 규정한 성폭행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했지만, <더 아거스> 신문이 제1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데일리 레코드> 신문사 보도 사건에서 IPSO는 법원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성폭행 피해자가 본인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신고하는 순간부터 성폭행 피해자의 지위가 부여되고, 이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동일하게, IPSO는 <더 아거스> 신문의 보도에서도 해당 여성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성폭행 피해자로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더 아거스> 신문사의 행위가 제11조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는 더 아거스 신문사의 성범죄 피해자 실명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은 물론, '충분한 정당성(Adequate Justification)'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PSO는 영국 법률에 따라, 피해자와 연관된 다른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성폭행 피해자의 법적 익명성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IPSO는 재판의 투명성 원칙의 중요성과 사건 보도를 통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더 아거스> 신문사의 보도가 이 두 가지 점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한 보도였다고 판단했다. IPSO는 <더 아거스>의 보도가 해당 여성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다루고 있었고, 이 재판에서 해당 여성이 주장한 성폭행 피해에 대한 사실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여성의 실명보도는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IPSO는 <데일리 레코드>와 <더 아거스> 신문이 동일하게 성범죄 피해자의 실명을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일리 레코드>의 기사는 보도의 ‘충분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더 아거스> 신문의 보도는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보도의 정당성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전히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향후에도 여러 언론사의 성범죄 보도가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IPSO의 <더 아거스> 신문 보도에 대한 결정례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해당 결정례에서 IPSO는 <더 아거스> 신문의 성범죄 피해자 신원 노출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는 사유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법적으로 성범죄 이외의 범죄를 보도할 때 이와 관련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과 둘째, 공익적 측면을 들었다. 하지만, IPSO의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 자체가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 라도, 그 보도가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거스> 신문의 피해자 보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 성범죄 피해자의 실명 공개에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공익적 측면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실명 거론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한 부분도 그간 IPSO가 공익이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왔던 것과 반하는 부분이다.

IPSO가 <더 아거스> 신문의 성범죄 피해자 실명 보도가 공익적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한 이유에 성범죄 피해자로 주장되는 여성이 가짜 신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성범죄 관련법에서도 가짜 성범죄 신고자들의 익명성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논란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가짜 신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황상 주장일 뿐이며,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IPSO가 이를 먼저 판단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이 이를 가짜 성범죄 피해 신고로 판단하더라도 현행법상 성범죄 사건은 유무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자, 즉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은 평생 동안 익명성을 보장 받아야 하므로 IPSO의 <더 아거스> 신문 보도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향후에도 언론사들의 성범죄 보도가 ‘충분한 정당성’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아거스> 신문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다른 유사한 경우에도 IPSO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이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해당 명예훼손과 무고 사건을 보도하면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사유이자 무고죄 고소의 원인이 성범죄 사건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더 아거스> 신문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가짜 피해자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성범죄 피해자가 신원 노출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제7조 ‘성 관련 사건의 어린이 (Children in sex cases)’

IPSO의 언론인 실천 강령 중 성범죄 보도에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항은 제7조 ‘성 관련 사건의 어린이(Children in sex cases)’다. 이 조항은 제11조 ‘성폭행 피해자’ 규정에 더하여, 어린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1조에서는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지 않은 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7조는 제11조와 달리, 법률 이상의 수준으로 어린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라도(even if legally free to do so), 16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은 노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대비 제7조가 추가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조는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기사에 어떤 것이라도 피고와 어린이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표 2>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

조항	내용
제 7조	<p>성 관련 사건의 어린이(Children in sex case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언론은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16세 이하 피해자나 목격자 신분은 노출해서는 안 된다. 2. 어린이 성범죄와 연관된 사건의 언론 보도에 있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어린이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ii) 어른의 신분은 노출 될 수 있다. iii) 어린이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친상간이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 없다. iv) 피의자와 어린이 사이의 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동반되어야 한다.¹³⁾

출처: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IPSO

사례 4.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Wilts & Gloucestershire Standard)> 어린이 성범죄 사건 보도¹⁴⁾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가 적용된 대표적인 예는 2015년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Wilts & Gloucestershire Standard)> 신문의 어린이 성범죄 사건 보도를 들 수 있다.

당시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는 공판에 참석하여 들은 내용을 인용하여 기사화했는데, 추후 무죄로 판결 받은 당시 피고가 해당 기사 내용이 너무 상세했으며 성폭행 가해자와 어린이 피해자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였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해당 기사가 당시 피고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신문 구독자들이 피해 어린이를 추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 ‘성 관련 사건의 어린이’와 제11조 ‘성범죄 피해자’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는 해당 사건 보도에 있어 어린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재판 내용을 인용한 부분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IPSO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가 제7조와 제11조 모두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재판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해당 사건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¹⁵⁾ 언론이 재판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라도,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에 따르면 어린이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IPSO는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가 제7조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기사가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제11조 또한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13) 1. The press must not, even if legally free to do so, identify children under 16 who are victims or witnesses in cases involving sex offences. 2. In any press report of a case involving a sexual offence against a child, i) the child must not be identified ii) the adult may be identified. iii) The word “incest” must not be used where a child victim might be identified. iv) Care must be taken that nothing in the report impl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sed and the child.

14) IPSO (2015). 05764-15 00768-15 A man v Wilts & Gloucestershire Standard.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00768-15>

15) 해당 인용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IPSO 결정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정례에 해당 인용문을 담은 것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IPSO는 밝히고 있다.

사례 5. <더 가제트(The Gazette)> 어린이 성범죄 사건 보도¹⁶⁾

모든 어린이 성범죄 사건에 제7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더 가제트(The Gazette)> 신문의 어린이 성범죄 보도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더 가제트> 신문사가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로 어린이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물론 어린이 피해자의 신원 또한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더 가제트>의 첫 번째 신문 기사는 성폭행이 시작되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물론, 성폭행의 지속 기간을 연월 단위로 보도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상황과 요일을 명시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유죄판결을 전하며 다시 성폭행의 지속 기간을 연월 단위로 보도했고, 성폭행이 일어난 상황을 그래픽으로 묘사함은 물론, 법원 밖에서 촬영한 피의자 및 피의자 부인 사진을 게재했다.

이 보도에 대해 피해자는 <더 가제트> 신문사가 법원에서 들은 내용을 너무 자세히 보도하여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가제트> 신문사의 피의자 사진 공개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더 가제트> 신문사가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그래픽으로 자세하게 보도한 데 대해서 법원 밖에서 그 내용이 다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사실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보도하여 본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 가제트> 신문사는 해당 기사의 상세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사가 재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 전달은 대중이 해당 사건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며 긍정적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더 가제트 신문사의 보도내용 중 자신의 신분노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반박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위 사건에 대해 IPSO 위원회는 제1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IPSO 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신문사는 성범죄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고의 사진을 포함해 피고의 신원을 밝힐 권리가 있지만, 이 보도가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데 기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즉, 피해자의 신원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원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상세히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또한, IPSO 위원회는 신문사가

16) IPSO (2016). 12775-17 A Man v The Gazette (Paisley).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12775-17>

상세히 보도한 성폭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나이, 성폭행 피해 기간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더 가제트> 신문사의 보도가 제7조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성폭행 사건 당시 이 사건의 피해자는 16세 이하 어린이였으나, <더 가제트>의 보도 당시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16세가 넘어 어린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IPSO 위원회는 어린이 성범죄 사건에서 어린이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을 다른 제7조를 적용하지 않고,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다른 제11조를 적용했다.

4. 언론인 실천 강령 제 1, 2, 3조도 성범죄 피해자 보도에 적용

IPSO의 언론인 실천 강령 중 제7조와 제11조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다루고 있지만, 제1조 정확성(Accuracy), 제2조 프라이버시(Privacy), 제3조 괴롭힘(Harassment) 또한 성범죄 사건 보도에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더 아거스>와 <테일리 레코드>의 성범죄 보도는 제11조뿐만 아니라, 제1조, 제2조, 제3조에 걸쳐 위반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있었으며, <더 가제트> 신문사 및 <더 월츠 앤 글로스터셔 스탠다드>의 경우에도 제1조와 제2조에 걸쳐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

우선, 제1조 정확성은 언론의 보도가 틀린 부분 없이 정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1조 제1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제1조 제1항은 “언론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헤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왜곡된 정보나 이미지를 발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¹⁷⁾”고 규정하고 있다. <더 아거스>의 보도에서는 기사가 검찰 측의 증거만을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점이 제1조 위반의 증거로 주장되었다. <테일리 레코드> 사건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부정확하게 기사화되었다는 점이 주장되었다. <더 가제트> 신문사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피고의 설명을 다루고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 측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가제트> 신문사의 기

17) The press must take care not to publish inaccurate, misleading or distorted information or images, including headlines not supported by the text.

사가 부정확하다고 지적되었다.

제1조는 성범죄 사건 보도에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 한쪽의 의견만을 전달하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을 기사화하거나 성범죄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 부정확할 경우, 그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과거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판 중인 사건의 특성상 피고와 원고 양측에서 제기된 주장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한 제1조에 대한 위반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제2조 '프라이버시' 제1항은 "모든 사람이 그들과 그들 가족의 삶, 집, 건강,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통신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¹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 서두에서 "언론인은 개인의 사적인 삶을 동의 없이 침해하는 데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¹⁹⁾"고 명시했으며, 제3항 서두에서는 "합당한 프라이버시가 기대되는 공적, 사적 공간에서는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²⁰⁾"고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성범죄 보도에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부분이 자주 문제시되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이 개인의 민감한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도가 개인의 삶과 건강은 물론 가족의 삶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아거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부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더 가제트> 신문사 보도의 경우 성폭행 과정을 묘사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 아거스>의 보도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폭행 및 업무방해 가해자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해석되어 제2조 프라이버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더 가제트> 신문사의 경우 재판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것으로 해석되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데일리 메일>의 경우, 언론보도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 개인의 사적인 삶에 큰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어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8) Everyone is entitled to respect for his or her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health and correspondence, including digital communications.

19) Editors will be expected to justify intrusions into any individual's private life without consent.

20) It is unacceptable to photograph individuals, without their consent, in public or private places where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제3조 ‘괴롭힘’ 제1항은 “기자가 협박이나 괴롭힘, 지속적인 추적에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²¹⁾”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 서두에서 “기자들에게 그만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는 질문이나 전화, 설득, 사진 촬영 등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안 된다²²⁾”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저스> 신문사 사건처럼 사진을 찍지 말라는 요구에도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나 <데일리 메일>의 경우처럼 피해자 부모가 돌아가라고 요청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혐의가 있을 때 제3조 위반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V. 성범죄 보도와 IPSO 보도 가이드스²³⁾

IPSO는 성범죄 보도 관련 언론인 실천 강령 조항을 수립한 이후, 언론사의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상당수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IPSO의 판결(Ruling) 자료를 살펴보면, 언론사가 제11조 ‘성폭행 피해자’ 조항을 위반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된 건수가 2016년 3건이었으나, 2017년 1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PSO는 증가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에 성범죄 보도 가이드스(Guidance on reporting sexual Offences)를 발간하여, 언론사들이 성범죄 보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이드스가 발간된 2018년에는 6건, 2019년에는 2건, 2020년에는 9월 현재까지 4건이 접수되어, IPSO가 발간한 성범죄 보도 가이드스가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 제11조 ‘성폭행 피해자’ 조항 위반 접수 건수 (2020. 9월 기준)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수	3	10	6	2	4

출처: IPSO 판결 (ruling) 통계²⁴⁾

21) Journalists must not engage in intimidation, harassment or persistent pursuit.

22) They must not persist in questioning, telephoning, pursuing or photographing individuals once asked to desist.

23) IPSO (2018). Guidance on reporting sexual offences.
https://www.ipso.co.uk/media/1585/sex-off-journo_v3.pdf

24) IPSO (2020). Ruling.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

이 가이드스는 성범죄 보도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6가지 키 포인트(Key Points)를 최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① 성범죄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된다²⁵⁾.
- ② 언론인 실천 강령은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성범죄 사건 보도에 있어 제약을 두고 있다²⁶⁾.
- ③ 기사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피해자를 노출하거나 노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실한지 고려해야 한다²⁷⁾.
- ④ 언론보도를 위한 조사를 할 때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²⁸⁾.
- ⑤ 어린이가 연관된 사건, 특히 피고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일 때는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²⁹⁾.
- ⑥ 언론인 실천 강령 중 다수의 조항들이 성범죄 사건 보도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³⁰⁾.

이 중 가장 관련도가 높은 조항은 제7조 성 관련 사건의 어린이, 제11조 성범죄 피해자이며, 이 외에도 제1조 정확성, 제2조 프라이버시, 제6조 어린이가 있다³¹⁾.

1. 성범죄 보도 관련 언론인 실천 강령 준수를 위한 5단계 프로세스

IPSO의 성범죄 보도 가이드스는 성범죄 보도에 있어 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여섯 가지 키 포인트 외에도, 성범죄 보도에 있어 언론인 실천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5단계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25) There are legal protections for victims of sexual offences.

26) The Code also puts restrictions on reporting of sexual offences to protect the identity of victims.

27) Carefully consider the information you want to publish to ensure that a victim is not identified, or likely to be identified.

28) Take care when making enquiries to avoid disclosure of a victim's identity.

29) Additional protections apply in cases involving children, especially when there is a familial relationship between defendant and victim.

30) A number of clauses in the Code are relevant to the issue of reporting sexual offences.

31) The most relevant clauses are Clause 7 'Children in sex cases' and Clause 11 'Victims of sexual assault' but other clauses to consider include Clause 1 'Accuracy', Clause 2 'Privacy' and Clause 6 'Children'.

(1) 1단계: 정보 확인(Identifying information)

첫 번째 단계는 기사 내에 잠재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지, 언론인 실천 강령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³²⁾. 이런 정보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피해자 및 피고에 대한 정보, 성범죄 장소나 시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세정보, 피해자와 피고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³³⁾ 등이 있다.

(2) 2단계: 정보 분석(Analysing information)

두 번째 단계는 확인된 정보가 실제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수 있는지 않은지 분석하는 것이다³⁴⁾. 기사의 특정 정보가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할 것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로 보지 않으나 지역 사회 일원 등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의 신원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가 일어난 날짜를 명시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신분 노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겠지만, 두 사람이 해당 날짜에 만났다는 것이 지역 사회에 알려져 있다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뉴스에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라면, 작은 정보라도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여러 정보가 조합되었을 때 피해자가 알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기사 내에 피해자의 나이, 범죄가 일어난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산재해 있다면, 각각의 정보는 피해자 신원 노출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정보의 조합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각그림 신원확인(Jigsaw Identification) 효과가 강조된 것이다. 조각그림 신원확인이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여러 정보가 여러 다른 기사에 걸쳐 보도되었을 때, 독자는 여러 기사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32) Identify the potentially identifying information within the article which needs to be assessed against the Code.

33) Information about the victim or defendant, details of the offence, which conclude where or when the offence took place, references to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34) Analyse whether the information might in fact identify or be likely to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victim.

보도함에 있어, 담당 기자는 물론 데스크에서 현재까지 어떤 정보가 자사 혹은 타사 기사에 의해 보도되었는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조각그림 신원확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이미 다른 언론에 의해 알려진 다른 정보와 조합되었을 때 피해자 신원 노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사화할 때는 새로운 정보의 보도가 과연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3) 3단계: 온라인 기사화(Publishing online)

세 번째 단계는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제공할 때, 성범죄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다³⁵⁾.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사를 발간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독자들과 관계를 맺고 해당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게 한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온라인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댓글 기능이 있는 온라인 매체에서 성범죄 사건을 기사화할 때 피해자의 익명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온라인 매체에서는 댓글을 통해 독자들이 추가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독자에 의한 피해자 신원 노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언론사는 성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의 원칙을 잘 알고 있지만, 대중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으며, 이런 규칙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IPSO는 온라인에 성범죄 사건이 기사화되었을 때 해당 기사 링크가 온라인상에서 유통(Circulation)되는 것을 언론사가 막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홈페이지 외에 제3의 온라인 매체상에서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오고가는 대화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사는 본인이 온라인상에 기사화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 사건을 기사화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IPSO의 가이드라인은 성범죄 사건을 온라인으로 기사화할 때에 대하여, 독자의 댓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해당 온라인 기사에 대한 댓글 기능을 폐지하는 방법 등 피해자 신분 노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5) Consider how the information will be published, particularly if publishing online.

(4) 4단계: 취재(Making enquiries)

네 번째 단계는 언론인 실천 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당 사건을 취재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³⁶⁾는 부분이다. 일부 성폭행 피해자들은 성폭행 경험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여파 등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추가적인 성폭행 방지를 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이들을 인터뷰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추가적으로 취재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성범죄 사건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안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5) 5단계: 어린이 연루 사건(Cases involving children)

다섯 번째 단계는 “성폭행 피해자가 어린이일 때는 언론인 실천 강령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가 취해져야 한다³⁷⁾”는 부분이다.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라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린이 성범죄 사건에 가족이 연루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할 수 있는 어떤 언급도 기사 내용에 담겨서는 안 된다. IPSO는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에 “‘어떤 것도’ 피해자와 피고 간의 관계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³⁸⁾”고 명시하여, 해당 조항에 있어 매우 엄격한 수준의 잣대를 적용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성폭행 장소가 집이라고 명시하여 근친상간임을 암시한다거나, 성폭행 날짜나 시간 등을 노출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시 만나는 사람임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IPSO는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 적용에 있어 ‘공익’이 우선할 때는 어린이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다고 예외의 경우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어린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공익적 목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IPSO에 공익과 어린이 피해자의 익명성 간에 가치 충돌이 발생한 경우가 보고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도 전에 IPSO에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6) Consider how you will make any enquiries.

37) There are additional protections in the Code for children who are victims of sexual offences.

38) ‘Nothing’ should imp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accused.

IPSO는 언제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이 포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다. 첫째로 특수한 상황에서 판사가 익명성 자동 부여의 규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16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법원의 동의 없이도 본인의 익명성 보장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16세 이하의 경우, 본인이 원하더라도 본인의 익명성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다.

피해자가 익명성을 포기하고 신원 공개에 동의한 경우, 언론사는 피해자의 동의서를 문서로 받아야만 한다. 이때 신원 공개에 대한 동의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원 공개 동의를 이루어진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피해자가 여전히 신원 공개에 동의하는지 다시 체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인터뷰를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의 보도를 위해서는 동의서를 문서로 받아야 한다.

IPSO는 추가적으로 성범죄 기사를 다룰 때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인 사안이며, 성범죄 피해자는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성폭행 사실을 선정적으로 다루고,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인터뷰 장소를 선택하게 하거나 적절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VI. IPSO,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한 가이드스³⁹⁾ 발간

IPSO는 언론사 및 기자들이 어떻게 성범죄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들이 언론사의 보도나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다룬 가이드스 ‘언론 접촉, 성폭행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Contact with media, support for survivors of sexual offences)’을 2018년에 발간했다.

39) IPSO (2018). Contact with the Media: Support for survivors of sexual offences.
<https://www.ipso.co.uk/media/1587/contact-with-the-media-for-survivors.pdf>

이 가이드는 우선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률과 언론인 실천 강령에 의해 평생 동안 익명성이 보호된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시작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 본인이 이 익명성 보장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와 언론사는 성범죄 재판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 언론사 인터뷰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가 가지는 거부의 권리와 익명성 요구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발언한 내용은 어떻게 보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또한, 자신이 연루된 성범죄 보도에 대해 항의할 부분이 있을 때, IPSO에 중재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PSO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여 성범죄 보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VII. <BBC>, 자율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성범죄 보도 규제

IPSO라는 자율규제 기관 설립을 통해 성범죄 보도를 규제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경우 외에도, 언론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대표 방송사인 <BBC>를 들 수 있다.

<BBC>의 언론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⁴⁰⁾을 살펴보면, 성범죄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제8조 ‘범죄 및 반사회적 행위 보도 가이드라인 (Reporting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Guidelines)’를 통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사건 보도를 규율하고 있다.

우선, 제8조 제3항 제37호에서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원 보호를 다루고 있다. 법적으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름은 물론 주소, 사진이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PSO 가이드스처럼 ‘조각그림 효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매체에서 보도된 여러 개의 기사들이 조합되었을 때 특정 인물의 신원이 드러날

40) BBC (2020). Editorial Guidelines.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crime/guidelines#paedophilesandothersexoffenders>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조각그림 효과의 위험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특히 ‘근친상간(incest)’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말아야 하고 ‘심각한 성폭행(Serious sexual offence)’과 같은 대체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4〉 〈BBC〉 언론 가이드라인 제8조 제3항 제37호

조항	내용
제8조 제3항 제37호	<p>범죄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원 보호 (Disguising Identities of Witnesses and Victims of Crime)</p> <p>재판에 관련된 사람의 신원을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주소, 사진,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단서라도 익명화 되어야 한다.</p> <p>또한, 그림조각 효과에 의해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효과는 다른 매체의 여러 기사들이 한 사건에 대해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조합되면 관련인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 이 위험은 가족 내 성범죄를 보도할 때 가장 높다. 예를 들어, 특정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을 때에는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근친상간이 ‘심각한 성폭행’과 같은 다른 표현으로 묘사되어야 한다⁴¹⁾.</p>

출처: BBC Editorial Guideline

〈BBC〉는 제8조 제3항 제38호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인 경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BBC〉는 IPSO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IPSO는 16세 이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BBC〉는 이를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18세 이하의 피해자나 목격자에게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 등을 보도하기 전에 이들의 취약성에 대해 반드시 먼저 판단해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8조 제3항의 제13호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소년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의 재판 중 어린이가 관련된 재판,

41) There may be legal reasons why the identities of people involved in a trial may not be reported. If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dentity of crime victims and witnesses, anonymity normally means no name, no address, no photograph, or any other clue as to identity. We should also take care not to identify people indirectly by what is known as a ‘jigsaw effect’. This occurs when separate reports, which could be in different media, give different details of a case which, when pieced together, reveal the identity of the person involved. The risk is at its highest when reporting sexual crime within the family. For example, we should take care not to refer to incest where someone might be identified as the victim. In such cases, incest should be described as a ‘serious sexual offence’.

가족 내 성적 학대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표 5〉 〈BBC〉 언론 가이드라인 제8조 제3항 제38호, 제13호

조항	내용
제8조 제3항 제38호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인 어린이와 청소년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Are Witnesses or Victims of Crime) 영국에서 형사 사건을 보도할 때, 18세 이하의 목격자나 피해자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의 이름, 주소, 학교, 교육기관, 소셜미디어 상의 신원, 직장, 사진, 동영상 등을 보도하기 전에 이들의 취약성에 대해 필히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⁴²⁾ .
제8조 제3항 제13호	법정 기사와 재판 보도(Court Reporting and Covering Trials)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치안법원 및 형사법원 예심 재판에는 보도 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만을 보도할 수 있다. 18세 이하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원의 모든 재판에는 보도 제약이 적용된다. 아동 시설보호 관련 재판 등 가정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도 어린이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족 내 성적 학대에 대한 기소 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⁴³⁾ .

출처: BBC Editorial Guideline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8조 제3항 제7호부터 제9호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IPSO의 가이드라인 대비 특이점은 IPSO의 가이드라인이 피해자 인터뷰 시 주의해야 할 실천 강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BBC〉의 가이드라인은 가해자를 인터뷰함에 따라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BBC〉 가이드라인은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의 피고를 인터뷰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할 때,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친인척들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

42) We must take care when dealing with anyone under 18 involved as a witness or victim, when reporting an investigation into an alleged criminal offence in the UK. We must make judgements about their vulnerability before revealing their name, address, school or other educational establishment, how they are identified on social media, place of work, or any still or moving picture of them.

43) Reporting restrictions cover preliminary proceedings in magistrates' courts and Crown Courts in England and Wales so that normally only basic details can be reported. Reporting restrictions cover all proceedings in Youth Courts to protect the identity of any under-18 involved. We must not identify any child as being the subject of ongoing proceedings in family law cases which includes, for example, care proceedings. Courts may also pass orders limiting what can be reported in a particular case. Particular care is needed to avoid the identification of victims in prosecutions for sexual abuse within the family.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도 전에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미리 연락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제9호에서는 범죄 관련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바꿔 생활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새로운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6〉 <BBC> 언론 가이드라인 제8조 제3항 제7호 내지 제9호

조항	내용
제8조 제3항 제7호~제9호	<p>피해자에 대한 영향(Imact on Victims)</p> <p>7호. 범죄, 반사회적 행위의 피고를 인터뷰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 및 드라마화할 때,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친인척들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생존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연락하여 계획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경찰과 사회복지 서비스 등 중재인을 써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나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었고 <BBC> 관련팀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⁴⁴⁾.</p> <p>8호. 범죄자에 대한 보도가 가족 환경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증거 없이 연관성으로 유죄를 암시해서도 안 된다⁴⁵⁾.</p> <p>9호. 역사적인 범죄를 보도할 때, 가해자, 용의자, 목격자, 친인척, 피해자 등의 관련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그들의 새로운 주소나 신원노출의 정도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⁴⁶⁾.</p>

출처: BBC Editorial Guideline

VIII. 결론

영국은 지난 1976년 ‘성범죄 법 1976(The Sexual Offences Act 1976)’에 의해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을 법률로 처음 보호하기 시작한 이래,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

44) When we interview those responsible for crime/anti-social behaviour or reconstruct/dramatise past events, it may cause distress to victims and/or their relatives. We should, as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contact surviving victims, and/or the immediate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advise them of our plans. If it is necessary to use an intermediary, such as the police or social services, it is still our responsibility to check that the victims and/or immediate relatives have been informed and have the necessary details to contact us.

45) Reporting the facts about criminals may include detailing their family circumstances, but we should avoid causing unwarranted distress to these families. Nor should we imply guilt by association without evidence.

46) When we report historic crim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possibility that some of those involved - offenders, suspects, witnesses, relatives or victims - may have changed their names or addresses in order to re-establish their lives. Should that be the case, the extent to which we identify them or their new whereabouts should be given particularly careful thought.

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IPSO 등 자율규제기관을 통한 성범죄 보도 규제 및 성범죄 피해자 인격권 보호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BBC>의 사례와 같이 언론사 자체적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즉, 법률에 의한 규제, 자율규제기관의 실천 강령 수립을 통한 규제, 언론사 자체 규제 등 3단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보도와 관련자 인격권에 대한 이런 오랜 논의와 발전 속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성폭행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1976년 성범죄 법에는 원고와 피고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양측의 익명성이 보장되었다. 이는 1988년 원고(피해자)의 익명성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2010년에 다시 피고(가해자)의 익명성 또한 보장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현재도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는 논란으로 남아있다.

성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로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다. 성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언론이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인 성범죄 피해를 줄이고, 성범죄 가해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유사 성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범죄 피의자의 신원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에서는 허위 혐의(Flase Allegations)를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성범죄 피의자가 겪게 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부분이 현행법과 현행규제의 맹점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허위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익명성을 보호받지 못하고,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이고도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반해, 허위로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가짜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동안 익명성을 보장 받는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성범죄를 포함한 영국의 범죄 보도 및 범죄 관련자의 신원공개에 있어 또 한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언론의 자유나 이를 통한 공공의 이익과 같은 가치가 우선되는지,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명예와 같은 가치가 더 우선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영국은 개인의 신원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데이터보호법과 인권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경찰과 언론은 필요한 경우 수사 단계부터

범죄 관련자의 신분을 보도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가 이런 가이드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에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가 공익적 차원에서 범죄 관련자 신상을 보도했다는 주장이 차후에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익스프레스지(Express)>는 2008년 한 부부의 3살 딸에 대한 살인 혐의를 보도했다가 이들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55만 파운드(한화 약 8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BBC>는 2009년 자동차 사기사건 보도로 5만 파운드(한화 약 8천만원)의 명예훼손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따라 <BBC>는 범죄관련 뉴스 보도 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안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개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가이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되는지에 대해 사안별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범죄 관련자 신원 보도의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에서 성범죄 피의자 신원 공개 여부 및 공익과 개인의 권리 간 가치 갈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성범죄 피의자 신원 공개에 대한 이슈는 입법 차원의 이슈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간의 가치 갈등 문제는 사례별로 두 가치 간의 경중이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 IPSO의 결정례와 법원의 관련 사건 판례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만 어떤 경우에 공익이 우선하고, 어떤 경우에 개인의 권리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 of England, Wales & Northern Ireland(2009). GUIDANCE ON THE RELEASE OF IMAGES OF SUSPECTS AND DEFENDANTS. Retrieved from <http://library.college.police.uk/docs/acpo/ACPO-Guidance-Release-Images-Suspects-Media.pdf>
- BBC (2020). Editorial Guidelines.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crime/guidelines#paedophilesandothersexoffenders>
- IPSO (2015). 05764-15 A man v Daily Record.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05764-15>
- IPSO (2015). 05764-15 00768-15 *A man v Wilts & Gloucestershire Standard*.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00768-15>
- IPSO (2016). 12775-17 *A Man v The Gazette(Paisley)*.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12775-17>
- IPSO (2016). 16830-17 *Warwickshire Police v Daily Mail*.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16830-17>
- IPSO (2016). 20796-17 *A woman v The Argus(Brighton)*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20796-17>
- IPSO (2016).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media/1305/a4-editors-code-2017.pdf>
- IPSO (2018). Contact with the Media: Support for survivors of sexual offences.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media/1587/contact-with-the-media-for-survivors.pdf>
- IPSO (2018). Guidance on reporting sexual offences.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media/1585/sex-off-journo_v3.pdf
- IPSO (2018.10.15). Press watchdog publishes guidance on reporting of sexual offences for journalists and information for survivors [online]. London: IPSO.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news-press-releases/press-releases/press-watchdog-publishes-guidance-on-reporting-of-sexual-offences-for-journalists-and-information-for-survivors/>

- IPSO (2018.10.24). Reporting sexual offences [online]. London: IPSO.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news-press-releases/blog/ipso-blog-reporting-sexual-offences/>
- IPSO (2019).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media/1818/69196-ipso-editors-code-2019.pdf>
- IPSO (2020). The Editors' Codebook: The Handbook to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Retrieved from <http://www.editorcode.org.uk/downloads/codebook/Codebook-2020.pdf>
- IPSO (2020). Ruling [online]. London: IPSO.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
- Ministry of Justice (2015).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online]. London: Ministry of Justice.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76900/code-of-practice-for-victims-of-crime.PDF
- Press Gazette (2019.6.19). Identifying sex crime victims while newsgathering is breach of code, IPSO clarifies. Press Gazette. Retrieved from <https://www.pressgazette.co.uk/identifying-sex-crime-victims-to-people-while-newsgathering-is-breach-of-code-ipso-clarifies/>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2020). Rape and Sexual Offences - Chapter 20: Media Guidance for Rape Prosecutors. [online]. London: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Retrieved from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rape-and-sexual-offences-chapter-20-media-guidance-rape-prosecutors>
- UK Parliament (1976).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76.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6/82/contents>
- UK Parliament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2/34/section/1>
- UK Parliament (2003). Sexual Offences Act 2003.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contents>

I. 시작하며

독일은 광범위한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다. 언론자유는 기본법(Grundgesetz) §5의 (1)¹⁾을 통해 의사표현 및 전달의 자유와 언론(신문/방송)보도자유, 검열로부터의 자유 등의 개념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기본법에 포함된 언론자유조항은 1949년 처음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대신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라 그 의미가 해석 및 확대되고 있다. 언론자유는 제5조의 (2)²⁾에 의거하여 일반 법률조항이나 청소년보호법규, 개인 명예권 등의 요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는데, 슈피겔 재판(Der Spiegel Urteil)으로 불리는 1966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언론자유와 명예를 고려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존재한다. 바로 사건사고 보도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개수준이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언론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정보공개는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그 계기는 달랐다. 국내의 경우, 위계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운동(#MeToo), 어린이 성착취물 관련 범죄, 몰래카메라 및 비동의 영상유포 등과 같은 성범죄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반면, 독일은 이주자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정보공개로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기류가 생성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내보내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한 사례들이

* 라이프치히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friendman@hanmail.net

1) 기본법 제5조 (1):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과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신문(발행)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을 이용한 보도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기본법 제5조 (2): 이(제5조 (1)) 권리는 일반법률조항, 청소년보호법규 및 개인명예권에 의해 제한된다.

독일언론위원회(Deutscher Presserat)에 다수 접수되면서, 언론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자정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독일에선 언론협회나 보도윤리 측면에서 성범죄 보도에 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관련 체계 내에서 이미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인격권에 대한 정의와 판례, 독일언론위원회의 저널리즘윤리규칙(Ethische Standards für den Journalismus)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격권의 개념과 해석이 독일 민법과 형법, 판례법 등에 기초하여 정보공개 수준을 정한다면, 저널리즘윤리규칙은 자율규제기관이 스스로 언론보도 자정을 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언론의 과도한 개인정보공개, 인격권 훼손 등을 해결하고자 적용되기에 목적은 유사하다. 인격권 개념이 적용되었을 때, 형법과 민법 등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형법과 민법 역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로 작동하고 있으며, 저널리즘윤리규칙의 차원에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격과 명예 보호, 차별, 선정적 보도, 무죄추정 등의 조항이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고는 독일 언론의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분쟁 해결 사례를 일반적 인격권과 저널리즘윤리규칙 두 개의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과 유형, 독일언론위원회의 저널리즘윤리규칙 중 대표항목 등을 소개할 것이다. 둘째, 언론 보도,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보도 중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한 판례들을 찾아 그 내용을 소개한다. 저널리즘윤리규칙의 사례는 독일언론위원회의 불만처리에 접수된 사례들 중 성범죄 피해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토록 한다.

II. 인격권과 저널리즘윤리규칙

1. 인격권의 개념과 유형

독일에서 언론과 관련된 법은 하나의 법이 아닌, 여러 개의 법들의 관련 조항이 유기적으로 엮인 횡(적)법(Querschnittsmaterie)으로서 미디어법(Medienrecht)으로 불린다. 미디어법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기에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범주가 조금씩 다르지

만,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를 통해 매개될 때 발생하는 또는 발생 가능한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기본법에 의해서 언론자유와 정보접근자유가 보장된다면, 콘텐츠 내용은 민법과 형법을 통해 다뤄진다. 통신을 이용한 콘텐츠전달방식에 대한 영역은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에, 공영/상업방송과 온라인사업자의 운영규정은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Rundfunkstaatsvertrag)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공영방송운영은 독일연방소속 16개 주 정부의 협의로 체결된 ‘주간협약’의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상업방송운영은 각 주의 미디어청(Medienanstalt)의 관할로서 주법(州法)에 따라 규제된다(Frank Fechner, 2019). 콘텐츠 측면에서 아동/청소년미디어보호는 청소년 미디어 보호를 위한 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gesetz)의 관할이며, 네트워크시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으로는 불법/혐오콘텐츠 확산을 방지한다. 신문과 잡지 등의 인쇄매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제정한 언론법(Pressegesetz)으로 운영되지만,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갖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저작권과 상표권 등도 콘텐츠 유통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미디어와 관련한 여러 법 중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은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이다. 독일의 인격권 개념은 기본법 제1조3)의 인간 존엄성 원칙에서 파생된 기본법 제2조 (1)4)에 기초한다. 기본법 제2조의 주요 내용은 권리 침해로부터의 자유, 헌법질서/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인격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독일법상의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과 개별적 인격권(besonderes Persönlichkeitsrecht)으로 구분한다. 역사적으로 일반적 인격권은 극단적 민족주의 및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사회가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불가침한 인격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서 출발했다. 일반적 인격권은 기본법상에서 인격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개념으로, 1954년 연방(서독)사법재판소의 판결(BGH, 25.5.1954)5)과 1958년의 판결(BGH, 14.02.1958)6) 등을 판례를 시작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일반적 인격권은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부분

3) 기본법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4) 기본법 제2조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나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5) https://www.rechtsanwaltmoebius.de/urteil/bgh_urteil_I-ZR-211-53_veroeffentlichungsbrief-nachricht.html

6) <https://openjur.de/u/190815.html>

을 주로 다루며, 성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법 제823조의 (1)7)의 ‘기타 권리’에 해당한다. 이와 다르게, 개별적 인격권은 민법으로 보장되는 성명권, 미술/사진에 관한 저작권에 해당하는 초상권, 데이터보호법에 따른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과 같이 성문법으로 보호되는 가치다(bpb, 2015).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 중 언론보도 분쟁에서 판단기준으로 다뤄지는 개념은 전자에 해당된다. 일반적 인격권은 기본법 제5조의 (1)에 따라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를 획득한 경우에도 기본법 제5조의 (2)의 개인 명예권에 의한 제한, 기본법 제1조의 (1)과 제2조의 (2)에서 명시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권리보장 등을 근거로 보장된다고 해석된다. 여기서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적, 직업적 명예보호(Ehrschutz)를 위한 장치로, 이 개념을 통해 개인은 비방과 모욕 등으로부터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 여기서 명예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법에 따라 적용된 것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하기에, 명예 보호는 포괄적인 의미로 그 범위가 해석되어 명예의 유형에 따라 보호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법리적으로 명예는 자존심 등의 주관적 명예와 사회활동으로 형성된 객관적 명예 등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 법을 통해 보호되는 것은 후자에 해당되며, 이는 형법 제185조와 민법 제823조 등의 조항을 통해 훼손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bpb, 2017a).

한편, 일반적 인격권은 사생활 영역(Intimspähre), 개인 영역(Privatsphäre), 사회/공공 영역(Sozial- und Öffentlichkeitssphäre) 등으로 활동영역에 따라 그 유형이 나뉜다. 사생활 영역은 일반적 인격권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게 보호되는 영역으로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 상태, 건강 상태 및 성생활 등 생활 속 내밀한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영역은 사업 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거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다. 둘째, 개인 영역은 가정 및 가족 영역, 거주지(실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길 바라는 은행계정정보, 휴가지/거주지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한다. 개인 영역과 관련한 정보 공개는 사생활 영역과 달리,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허가된다. 개인 영역에 관한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기본권리 및 이익이 대중의 관심이나 사회적 이슈

7) 민법 제823조 (1):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 또는 기타 권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인 영역 정보공개는 불가능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엔 허가된다. 그렇기에 개인 영역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유명인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이슈이며, 상황에 따라 정보공개 수준과 허용치가 상이하게 결정된다. 셋째, 사회/공공영역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득 가능한 정보가 발생하는 공간으로서 사회 활동, 영화관 방문, 호텔숙박, 전문 직업활동 등이 해당된다. 사회/공공영역에는 최소한의 정보보호기준이 적용된다(bpb, 2017b).

범죄 보도에서 일반적 인격권 보호는 피해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피의자나 범주자에 제도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의 정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로 분류되는 반면, 피의자의 정보는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와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엔 공개 가능한 정보범주가 확대된다. 이는 정보공개 기준을 판단할 때, 공개된 정보가 범주자의 정보가치는 대중의 관심보다 가치가 더 낮다고 평가하는 결과다.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정보공개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보다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있어 제한을 두게 된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일반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저널리즘윤리규칙 내에서의 범죄보도

1956년 설립된 독일언론위원회는 연방 차원에서 언론법을 도입하고자 했던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5개의 신문발행인과 5명의 언론인이 영국언론위원회(British Press Council)를 모델로 삼아 설립한 자율규제기구다. 독일온라인잡지/신문발행인협회(Bundesverband Digitalpublisher und Zeitungsverleger), 독일언론인협회(Deutscher Journalisten-Verband), 독일노동자협회(ver.di) 내의 독일언론인연합(Deutsche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Union), 독일잡지발행인협회(Verband Deutscher Zeitschriftenverleger) 등 네 개의 언론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단체들에서 각각 두 명씩 인력을 제공하여 협회의 재무와 인사, 조직을 운영한다. 독일언론위원회의 운영기금은 회원 단체의 기부금과 연방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지만, 자율규제기관만큼 운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일언론위원회는 연방 정부에서 인증받은 언론인 신분증(Pressausweis)을 발급하고, 회원사들이 인쇄매체와 온라인매체를 통해 제공한 저널리즘 형식 기사 중 불만이 접수

된 심의절차를 진행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인 불만처리의 기준은 독일언론위원회가 1973년 언론규약으로 명명된 저널리즘윤리규칙이다. 이 규칙은 1976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직무상 비밀(⑤), 1978년 성차별을 금지하는 차별(⑫), 1996년 개인인격권보호 조항의 통합(⑧), 2006년의 광고와 편집의 분리(⑦)와 신중 조항의 수정(②), 2001년 서문에서 정보제공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내용 추가, 2013년 피해자보호 조치가 포함된 개인 인격권 보호 조항의 수정(⑧), 2014년 신중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관한 규정 개정(②), 2017년 피의자/범죄자 소속(출신) 표시 제한 추가(⑫-1) 등의 조치를 통해 현재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2020년 현재 독일언론위원회의 저널리즘윤리규칙은 ①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② 신중, ③ 정정, ④ 조사 제한, ⑤ 직무상 비밀, ⑥ 업무 분리, ⑦ 광고와 편집의 분리, ⑧ 개인인격권 보호, ⑨ 명예보호, ⑩ 종교/세계관/관습의 존중, ⑪ 선정보도 및 청소년보호, ⑫ 차별, ⑬ 무죄추정, ⑭ 의약품 보도, ⑮ 특혜, ⑯ 불만처리결과 공포 등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성범죄 피해자보도와 관련한 내용은 주로 ①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⑧ 인격권 보호, ⑨ 명예보호, ⑪ 선정보도 및 청소년보호, ⑫ 차별, ⑬ 무죄추정 등 여섯 가지 항목이나, 그 외의 항목들도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각 항목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실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첫째, 언론의 최우선과제로 꼽히는 ‘진실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언론인들이 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으로 정의된다. 이 조항의 첫 번째 하부 항목인 독점보도는 의견형성에 필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과정이나 발생한 사안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정보 제공자와 독점계약 또는 다른 언론사의 접근 차단 등의 조치로 인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독점보도로 인해 정보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 조항의 주요 골자이다. 두 번째 하부 항목은 선거보도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이 공유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 보도할 것을 장려하는 선거보도 조항이며, 마지막 세 번째 하부 항목은 편집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보도할 경우, 원본으로 제공된 그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2) 인격권 보호

인격권 보호 조항에 따르면, 언론보도는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하지만 언론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öffentlichem Interesse)'에 의한 목적이라면 허용되는데, 이 때 공개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개인정보 공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이해보다 큰 지를 가늠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정적인 목적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널리즘윤리규칙에서 인격권 보호는 총 11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저널리즘윤리규칙의 인격권 보호 조항 중 범죄보도(Kriminalberichterstattung)에 따르면, 대중이 형사범죄, 수사, 사법절차 등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보도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사의 몫이라고 전제한다. 보도 과정에서 실명 공개나 사진,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공개로 얻는 이익이 개인정보공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이해보다 높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혐의, 주제, 절차, 피의자/범죄자의 지명도, 피의자/범죄자의 이력(전과) 등이 있다. 공공의 이익은 매우 심각하거나 특수 유형의 형사범죄, 기소된 범죄가 피의자/범죄자가 사회적으로 수행한 직무/임무/역할과 관련 있거나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저명인사의 지위가 혐의를 받는 범죄행위와 관련 있거나 혐의를 받는 범죄가 대중에게 알려진 이미지와 모순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수사당국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범죄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 인격권 보호 조항엔 피해자 보호(Opferschutz)에 관한 내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사고, 피해, 범죄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신원보호는 특별히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 본인이나 친척,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동의하거나 공인인 경우,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의 공개가 가능하다.

그 외 저널리즘윤리규칙의 인격권 보호 조항에 따라,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뉴스의 실제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가족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또는 정보

공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실종자의 경우, 이를 관할하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인정보공개가 가능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에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살 보도는 언론사 자체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거주지 및 병원/요양원/재활시설 등의 이용여부 등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비유명인들의 기념일에 대한 정보는 관련자들의 동의가 수반되어야만 언론에서 공개가능하다. 정부활동 반대인사의 개인정보는 그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데 있어 조심성을 고려해야 하며, 난민의 탈출경로도 차후 다른 사람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개 결정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사 측이 관련 기관에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윤리규칙에 따라 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보, 통신기록 등에 대해선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

(3) 명예 보호

셋째는 명예 보호다. 저널리즘윤리규칙에 따르면, 말이나 그림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제공하여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언론윤리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 보호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특정한 기준을 제공하여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기본 장치로 해석된다.

(4) 선정정보도 및 청소년보호

선정보도 및 청소년보호 조항에는 부적절보도, 폭력보도, 재난과 참사보도, 당국과의 보도조정/엠바고, 범죄자 회고록, 마약 등 여섯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적절보도는 사람을 하나의 대상이나 단순한 도구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규정으로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익 목적을 넘어 보도하는 방식도 이에 해당한다. 신문의 제1면에 폭력행위나 사고 내용이 담긴 사진을 게재할 때, 언론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폭력보도는 언론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피해자/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받는 이익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보도는

범죄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점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범죄자들이 언론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에 범죄 가해자에 대한 언론 인터뷰는 금지된다. 또한, 언론은 범죄자와 경찰과의 증재 역할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정보도와 청소년 보호의 세 번째 항목인 재난과 참사보도는 피해자의 고통과 구성원의 감정을 고려할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는 재난 및 참사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언론은 일반적으로 뉴스보도 금지를 허용하진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당국과의 보도조정과 엠바고는 가능하다. 해당 항목에 따르면, 보도조정/엠바고는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구제하는 경우에만 허가되며, 법집행기관의 요청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 엠바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제공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범죄자의 회고록을 발행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가하기 때문에 저널리즘윤리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마약 관련 보도에서도 이를 미화하거나 경시하는 풍조를 막기 위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5) 차별

피의자 또는 피해자보도와 관련된 저널리즘윤리규칙의 다섯째는 성별/장애/민족/종교/사회배경/출신국가 등의 요인들로 인해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차별의 ⑫-(1)은 형사범죄에 대해 보도할 때, 피의자/가해자의 민족/종교/기타 소수 민족을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항목으로 2017년 3월 22일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공익이 배경되지 않는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소속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보도윤리규칙 ⑫-(1)이 신설되면서 독일언론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실행원칙(Praxis-Leitsätze Richtlinie 12.1 des Pressekodex)을 함께 제공하였다(Deutscher Presserat, 2017). 신규규칙 적용방식에 대해 소개되어 있는 이 자료에 따르면, 편집담당자는 피의자/범죄자의 소속 정보공개가 정당한 공익에 근거한 것인지와 일반화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보도윤리규칙 ⑫-(1) 적용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호기심에 따라 피의자/범죄자의 소속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윤리측면에서 적합한 표준이

아니며, 수사당국에서 언급한 소속을 그대로 전달하더라도 언론의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피의자/범죄자가 속한 소속을 언급하는 데 있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가정이어야만 하며,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주지시키고 있다.

공익 목적에 따라 피의자/범죄자의 소속 정보가 허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독립위원회는 일곱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테러 문제(예: 2017년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축구팀 버스 폭파사건), 공통된 소속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예: 2015/16년 쾰른 시 난민신청자들의 성추행/성폭행사건), 피의자/범죄자의 전과, 피의자/범죄자가 소속된 집단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경우, 피의자/범죄자가 소속된 집단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예비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소속 집단 특성에 따라 특별대우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 중에 피의자가 소속된 단체가 소송과 관련한 절차를 담당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와 반대로, 경멸적인 용어 또는 차별적인 고정관념으로 피의자가 소속된 단체를 비방하는 경우나 소속에 대한 정보가 불필요/부적절하게 강조되는 경우, 특정 그룹 구성원을 단순히 문제대상으로 여기는 경우 등은 금지하도록 하였다.

보도윤리규칙 ⑫-(1)의 신설은 언론사와 독일언론위원회 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독일언론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준비하고 있던 2016년, 작센(Sachsen)주 드레스덴(Dresden)에서 발행되는 <작센신문(Sächsische Zeitung)>은 고의적으로 보도윤리규칙 ⑫-(1)을 위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작센신문>이 반대 입장을 펼치게 된 데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 독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많은 응답자가 피의자/범죄자를 외국인, 특히 망명 신청자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센신문> 측은 독일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독일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국적을 명시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를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도윤리규칙 ⑫-(1)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FAZ, 2017.03.22; MEEDIA, 2016.07.05; M, 2016.07.06.).

(6) 무죄추정

저널리즘윤리규칙에서 피의자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항 여섯 번째는 무죄추

정에 관한 규정이다. 무죄추정은 조사 과정이나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편견을 갖도록 하는 용어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로, 편견·후속 보도·청소년 범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견에 관한 저널리즘윤리규칙에서 수사 및 법 절차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대중에게 범죄, 법 위반, 기소 및 사법 판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편견을 갖도록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가 자백한 경우, 피의자의 주장과 반대인 증거를 확보하였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를 가해자라고 명명할 순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피의자의 무죄를 추정하도록 한다. 헌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피의자가 추가적으로 사회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보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 피의자보도 중 편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후속보도는 피의자의 조사과정에 대한 보도를 행한 경우, 그 사건의 최종판결 결과에 대해 보도해야 하며,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죄로 판결난 피의자의 사회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범죄는 그들의 미래를 고려하기 위해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수사, 형사소송 및 법정출두 등을 언급할 때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널리즘윤리규칙 중 상기한 여섯 가지 항목들은 언론보도로 인해 사건관련자들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본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독일 언론의 출판/보도권이지만, 자율규제를 통해 피해의 가중이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혐의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정 활동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정한 사례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피의자와 범죄자의 구별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존재하는바, 이 역시 성범죄 보도에도 적용되고 있다.

III. 성범죄 보도 관련 판례 및 평결사례

1. 성범죄 보도 관련 판례

본고는 판례를 조사하기 위해 언론정책/법 관련 전문웹서비스인 Telemedicus와 판례제공 웹서비스인 Kostenlose Urteile,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⁸⁾를 이용했다. 자료조사는 미디어법, 성폭행, 보도 판례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검색결과로 제시된 판례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 언론 보도 중 성범죄 피해자 등의 문제가 법원에서 다루진 사례가 많지 않아 사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제약이 존재했다. 그나마 발견되는 판례들은 성범죄 피의자들을 다룬 기사들이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수집한 자료 중 본 연구보고서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사례 1: 아동 성학대 혐의자의 실명 언급

판결: 연방헌법재판소, 1998(사건번호: BvR 131/96)

1977년, 도박중독치료를 받던 한 여성은 자신의 담당의사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친부에게 아동성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 여성은 1986년에도 자신의 도박 중독을 치료한 여러 의사들에게 동일한 학대사실을 알리며 자신이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된 이유가 친부의 성학대 및 그의 양육방식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1987년과 1989년, 그녀는 친부에게 자신을 성학대한 내용을 비난하는 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1989년에는 자신의 조카(친언니의 딸)의 양육을 도와주는 친부가 조카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국에 친부가 자신을 학대한 사실을 알리게 된다.

1990년 이 여성은 그녀의 친부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 그를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1991년 1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이 친부에게 학대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후, 그녀는 자신의 직장보험/연금의 혜택이 친부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92년 아동복지국에 다시 친부의 학대 사실을 근거로 조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시금 요청하였으며, 텔레비전 토크쇼

8) <https://www.telemedicus.info/>, <https://www.kostenlose-urteile.de/>,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Schreinemakers live〉(Sat.1)와 잡지 〈Emma〉를 통해 어린 시절 성학대로 인해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된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성의 친부는 1992년에 접수된 아동복지국의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그녀를 성학대했다는 주장이 제3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하게 된다. 그 이후 친부는 지역 법원에 자신은 그녀를 성학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그녀의 도박 빚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지불거부절차를 밟게 된다.

지방법원은 먼저 그녀의 친부가 그녀를 성학대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하였다.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선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만약 성학대를 당했다는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녀 친부의 주장대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의 조사 결과, 그녀의 주장대로 그녀는 8세부터 성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여 12세가 될 즈음부터는 정기적인 성폭행으로 그녀를 성학대했다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가정하게 된 원인은 그녀의 친부가 진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에서는 그녀가 제3자에게 자신의 성학대 경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녀의 친부는 이 결정에 대해 지방고등법원에 항소하게 된다.

지방고등법원은 형법의 명예훼손 관련 조항에서는 사실적 주장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 주장을 금지시킬 수 있는데, 지방법원의 조사 결과 그녀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녀의 발언을 금지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그녀가 제공한 정보가 충분히 믿을 만했고, 지방고등법원 심리 때 얻은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그녀의 피해사실이 확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고등법원은 여성이 친부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친부가 그녀를 성학대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행할 때에는 그녀의 이름과 친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하게 된다. 그녀의 이름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데에는 그녀가 결혼 후에도 그녀의 성(姓)을 바꾸지 않고 친부의 성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방고등법원 측은 그녀가 이름을 밝힐 때, 성을 함께 표시하기에 그의 친부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 것이다. 지방고등법원은 그녀의 친부가 그녀를 성학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성을 공개함으로써 친부가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것을 용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Schreinemakers live〉에 그녀가 출연했을 때, 그녀 친부의 지인이 그를 알아본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지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기본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그 동안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행위가 친부를 특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Schreinemakers live>에 그녀가 출연하면서 그녀의 친부를 알아본 경우가 있었지만, 그녀의 성은 ‘일반 이름’(널리 사용되는 성)이기 때문에 그가 특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의도 함께 제기하였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성학대 피해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행하면서 사회 이면에 가려진 아동 성학대 문제를 표면으로 드러낸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이름으로 토론에 참여할 권리까지 포함되는데, 실명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대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텔레비전 출연과 도서 출간을 계획하고 있던 그녀는 지방고등법원의 판결대로 가명을 사용하게 되면 시청자/독자의 반응을 받지 못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시청자와 독자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상황을 타자화하기에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된다는 점을 들었다.

니더작센 주의 법무부는 이 사건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 법무부는 그녀가 행하는 활동이 아동 성학대라는 사회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한, 의견 보호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대로 지방고등법원의 판결 근거처럼 그녀와 그녀의 성과 이름, 그녀 친부의 성은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를 특정할 수 있어 개별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녀의 친부는 자신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동안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텔레비전 등의 언론에 출연함으로써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니더작센 주 법무부는 항소에 앞서 헌법 해석을 요청하게 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고등법원의 판결이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 존엄성 불가침)에 근거한 제5조 제1항의 첫 문장(의사 표현 자유)과 두 번째 문장(일반 정보접근보장 권리)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주장을 진술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름을 밝히는 것은 독립적인 발화가 아닌, 내용 그 자체를 나타내는 요소로 정의하였다. 진술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는 경우,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설명에 대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

이며, 사실 주장에선 그 사람에게 진실을 보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이름 언급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법 제 1조 제1항에 근거한 제2조 제1항(인격 실현 권리)에 따른 일반 인격권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사람의 이름은 질서 유지와 개개인을 구별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개성의 표현이기에 개인은 법체계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존중 및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둘째,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례에 따라 헌법과 민법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이 보호되는 것은 맞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이 사실에 근거한 경우, 개인의 이익은 표현의 자유보다 앞설 수 없다고 판결한다. 이 사건은 언론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언급하기 때문에, 사건을 밝히는 것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격권 보호는 기본권 보유자와 그의 생활환경 사이의 기본 조건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친부의 일반적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의 요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도서출판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이름 표현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 인격권이 훼손되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이름 사용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게 된다.

사례 2: 성범죄보도에서 개인정보 사용 가능여부

판결: 연방헌법재판소, 2009(사건번호: BvR 1107/09)

1993년까지 프로축구 생활을 했던 원고는 2008년 10월 29일, 쾰른지방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인터넷 포털에서 2008년 10월 16일 원고의 자백을 바탕으로 형사소송 및 사건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분데스리가 과거 스타가 성매매여성을 성폭행했다 - 어제 관련 재판을 받았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원고의 이름과 나이, 축구 경력 등과 함께 범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며, 최근 5년 동안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단골손님이었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29일, 추가 기사에서 온라인 포털 측은 사진 기록과 실명을 포함하여 형사소송에 대한 정보를

다시 게재하게 된다. 이에 원고 측은 인터넷 포털의 보도를 금지할 목적으로 임시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뮌헨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17일 이 금지명령을 받아들여 이름과 나이, 프로축구 선수로서 이전 활동을 담은 형사소송보도를 금지시키게 된다. 2009년 4월 7일, 지방고등법원은 피고가 된 인터넷 포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정보사용에 대해 선 허락하게 되지만, 범죄에 대한 단편보도 및 형사소송과 혐의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지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는 항소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사진이 공개되면서 대중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의 개인권리에 상당한 훼손이 야기되었다고 봤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범죄행위 보도는 언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원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했다고 해석했다. 원고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손실이 대중의 관심 충족으로 형성된 이익보다 적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원고가 자신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다고 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고 패소를 결정하였다. 개인의 성적 영역을 표현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핵심영역이지만, 개인의 성적 영역으로 인해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폭력이기 때문에 성범죄 행위 상황은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며, 유죄를 받은 성범죄자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법문 해석 결과다.

사례 3: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묘사

판결: 함부르크 지방법원, 2009(사건번호: Az. 324 O 733/09)

2008년 5월 68세의 한 독일인 남성(원고)이 태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블로이드 신문사인 <B.Z.>(온라인/인쇄발행, 피고)는 “세계와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독일 교수 섹스돼지씨” 제하의 기사와 함께 이 남성과 태국남성 2명이 나체로 찍힌 사진을 1면 절반에 해당하는 큰 사진으로 보도했고, 사진 캡션엔 “섹스 몬스터의 얼굴”이라고 설명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실제 사건은 2008년 5월 13일 태국관광경찰이 원고가 아이들과 유사 성행위 및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임시 체포하면서 시작된다. 함께 발견된 태국인들은 13세와 15세 소년들이었는데, 그들은 성행위에 대한 대가로 약 500바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태국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나이를 21세와 23세로 소개했다고 말했으나, 결국 그는 미성년자(15세 이하) 성학대와 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2008년 10월 31일 기소가 중단된다. 조사과정 중 태국검찰은 원고의 집을 수색하여 많은 양의 어린이 성착취 동영상이 담긴 것으로 예상되는 CD와 DVD를 압수했지만, 14세 미만이라는 증거가 부재하므로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2008년 12월 8일 중단되었다. 원고의 체포는 당시 태국과 독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원고는 <B.Z.>의 보도에 대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친척모임이나 동창회에 초대받지 못하고, 아파트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사회적 고립상태라는 점을 들어 8만 유로의 금전적 보상과 이자 지불을 요청했다. 원고의 재판 근거는 형법 제182조의 명예훼손에 대한 항목이었다.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원고는 민법 제823조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먼저, 원고를 알몸으로 보여준 사진은 일반적 인격권의 특별한 침해로 원고의 자기 사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특히, 문제가 된 사진은 원고가 옷을 완전히 벗고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대형포맷으로 그리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13세, 15세 어린이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 1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13세, 15세의 어린이라는 증거는 수사기간 동안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기사에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즉, 기사에 “섹스돼지씨”로 원고를 설명하고 “섹스 몬스터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들에 대하여 원고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격하시키는 표현이며 그 외의 사실이 아닌 주장들의 나열은 일반적 인격권과 개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또한, 피고인 언론사가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도 원고 승소의 근거가 되었다. 최종판결은 <B.Z.>측이 원고에서 4만 유로의 위자료와 5%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성범죄 보도 관련 평결 사례

독일언론위원회는 저널리즘윤리규칙을 근거로 접수된 독자불만들을 처리하는 불만처리위원회(Beschwerdeausschuss)를 통해 접수된 기사에 관한 평의를 실시한다. 언론 편

집인과 기자, 법조인 등 12명으로 구성된 불만처리위원회는 총 3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하나의 위원회는 1년에 4회씩 평의에 참여하고 있다. 평의 결과는 독일언론위원회의 아카이브를 통해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가 제공된다.⁹⁾ 불만처리는 저널리즘윤리규칙에 따라 위반 정도를 판단하여 주의(Hinweis), 견책(Mißbilligung), 징계(Rüge) 등 세 가지의 판단이 내려진다. 견책과 징계를 받은 기사와 언론사는 저널리즘윤리규칙 제16조에 따라 적절한 형식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징계에 해당하는 사례 중 피해자보호 등의 요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엔 이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독일언론위원회의 불만처리 평의결과 중 성범죄 관련 사례는 앞서 언급한 아카이브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에 본고에선 최근 6년에 해당하는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성범죄와 관련한 키워드를 투입하여 사례를 추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소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추출했다. 사례는 ‘성범죄 피해자 관련 보도’와 ‘성범죄 피의자 관련 보도’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성범죄 피의자 관련 보도’를 분리하여 소개하는 이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분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저널리즘윤리규칙의 특징을 자세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징계조치를 제외한 언론사들의 정보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사례 소개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1) 성범죄피해자 관련 보도

사례 1: 소녀에 대한 추가 모욕·파렴치한 페이스북 동영상에 관한 타블로이드 신문 보도 접수번호: 0219/15/2

“페이스북 고문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하로 발행된 기사와 관련한 불만처리사례이다. 페이스북에 공유된 한 비디오클립과 관련한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판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녀가 거리에서 속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다. 그녀의 화장은 번지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으며, 그녀는 울고 있다. 한 남성이 그녀를 촬영하면서 “왜 내 물건을 훔쳤나?”라고 묻는다. 그녀는 흐느끼며 “나는 창녀니까”라고 대답했다. 남성은 다시 그녀에게 “너의 이름은

9) Entscheidungen Finden(<https://www.presserat.de/entscheidungen-finden.html>)참조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야?”라고 묻는다. 그 젊은 여성은 자신의 이름과 출신 지역을 말한다.』

기사에는 비디오클립에 대한 묘사와 함께, 이 동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최대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형법 전문 변호사의 해석과 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을 비판하는 페이스북의 댓글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브리핑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소녀의 사진과 역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도 함께 기사를 통해 제공되었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두 명의 독자가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①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⑩ 선정정보도/청소년보호 중 부적절정보도에 해당한다며 불만처리위원회에 평결을 요청하였다. 접수자들의 의견은 피해 여성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가 무방비 상태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부적절한 보도라는 것이었다. 이 불만에 대해 해당 신문사의 법무팀은 기사의 목적이 젊은 여성을 모욕하거나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법무팀은 편집팀이 페이스북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보도했고, 수사 당국에 취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독자들의 의견을 받아 저널리즘윤리규칙 ①과 ⑩을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불만처리위원회의 평결에 따르면, 이 보도는 부적절하게 선정적이며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묘사 역시 공익을 훨씬 뛰어 넘는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중들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접했기에 피해 여성을 인식하긴 어렵지만, 피해 여성 스스로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제공한 기사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굴욕이 다시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보도에 공익적 목적은 충분하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불만처리위원회의 의견이다. 이 사례는 최종적으로 견책 평결을 받았다.

사례 2: 사건 피해자가 추가적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용의자의 인종 명시 접수번호 1038/16/1

접수된 사례는 “Maria L은 술에 취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 제하의 기사와 “대학파티 후 Maria는 살해자를 만났다” 제하의 기사 등 두 건에 대한 것으로 불만접수는 세 건이었다. 프라이부르크 여학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 내용은 경찰에 체포된 아프가니스탄 출신 17세 난민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불만처리 신고자는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진 공개는 성폭행과 살인을 보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신문이 인물 사진과 함께 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촬영한 3장의 사진을 함께 제공한 것도 사후(死後)에도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신고자는 첫 번째 보도 이후의 후속 보도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내용을 접수했지만, 관련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세 번째 접수자는 용의자의 난민 지위와 출신 국가는 범죄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 언급을 통해 난민 전체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사 측은 첫 번째 보도가 있는 지 약 5시간 후에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는 자료까지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인종과 소속을 밝히는 것이 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왜 이를 밝히는 것이 비윤리적인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즉, 독자들이 이 기사를 읽고 난 후에 모든 아프가니스탄 출신 사람들이 성폭행범이나 살인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신문사 측의 입장이었다.

불만처리위원회 측은 이 사안을 ⑧ 개인 인격권 보호 위반으로 보고 공개징계를 결정하였다. 먼저, 피해자의 신원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선 가족/친척/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등의 동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널리즘윤리규칙 ⑫ 차별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저널리즘윤리규칙 ⑫-(1)은 범죄행위 보도에서 용의자 또는 가해자의 소속(종교, 민족, 국가 등)의 공개는 보도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독일에 입국하기 전인 2013년, 그리스의 코르푸 섬에서 한 여성을 공격하고 절벽으로 떨어트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처리위원회는 그의 과거 전력과 소속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최종적으로 이 사례는 피해자의 개인 인격권 보호를 위반한 공개징계로 결정되었다.

사례 3: 나체로 여성에게 길을 거닐도록 강요하다-남자친구는 자신의 범죄를 인터넷에 기록하다

접수번호: 0012/18/1

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온라인기사는 “비인륜적 리벤지 비디오로 7년 수감”이라는 제목으로 뉴욕에서 발생한 여성혐오주의자의 사건을 보도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학대하고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불상으로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 나체의 그녀를 실외로 내쫓은 사건이었다. 신문은 범죄자인 남성이 촬영한 비디오를 인용, 나체 여성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제공했다. 이 기사를 접한 독자가 이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①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⑧ 개인 인격권 보호 중 명예 보호 등 두 가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독일언론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하게 된다.

불만처리위원회는 편집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고, 새로운 삶을 위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이사하고 성형수술을 받는 등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 여성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비디오 파일에서 갈무리로 제공한 사진은 기사를 통해 공익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독자들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리벤지비디오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불법적인 영상 사용이 허용된다고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편집자 측은 사진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가늠할 수 없고, 이미 거주지와 외모를 바꾸었기 때문에 보도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불만처리위원회 측은 그 자체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끔직한 결론이었다고 비판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사진 게시에서 저널리즘윤리규칙 ①과 ⑧의 위배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진 속 피해 여성은 타인이 알아보긴 어려울 순 있지만, 반복되는 보도로 인해 또 다시 수치심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 근거였다. 공익과 무관한 이 보도에 대해 독일언론위원회 측은 공개질책으로 징계를 최종결정했다.

사례 4: 여러 기사에 걸쳐 제공된 사생활- 개인의 정보결정권 보호

접수번호: 0068/18/4

이 사례는 아내를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남성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

의 재판 과정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저널리즘윤리규칙 ② 신중과 ⑧ 개인 인격권 보호를 위반한다고 접수된 내용이다. 재판에 관한 첫 번째 보도는 남성은 자살한 것이 아니며, 성폭행 피해자인 여성이 그를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에선 범죄자와 피해자 간 발생한 성적인 접촉 빈도와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법원에서 제공한 자료 외에 그들의 과거 행실에 대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보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오히려 50~100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여성 측은 보도내용이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보도내용이 원고와 피고의 사생활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거짓 사실과 소문을 확산시켜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불만이 접수된 후, 불만처리위원회는 평결을 위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자료나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그 어떤 의견이나 반론을 받지 못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 언론보도들이 저널리즘윤리규칙 ⑧ 개인 인격권 보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징계를 내렸다. 그 배경에는 기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가 자세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음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한, 불만처리위원회 측은 원고와 피고가 공인이 아니라는 점, 그들의 사건이 공공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대중의 관심이 사건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 등을 들어 이 사안이 ⑧ 개인 인격권 보호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원심리과정에서 주장되었던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을 살해했다고 보도한 것은 언론윤리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② 신중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징계로 최종 결정되었다.

사례 5: 거실 사진 공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권 침해
접수번호: 0539/18/2

접수된 사례는 두 아이 앞에서 지인을 성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 성추행범의 거실 사진을 온라인신문이 게재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⑧ 개인 인격권 보호 위반이 쟁점이었다. 기사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거실의 모습을 촬

영한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는데, 한 독자가 거실 사진공개가 피해자의 개인 인격권을 훼손했음을 주장하며 독일언론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하게 된다. 신문 편집자 측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범죄자의 집이 1층에 위치하고 있어,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통행인이 내부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불만처리위원회 측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더라도 거주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적인 조사방식이라는 점에서 신문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신문사 측은 두 아이의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을 성폭행한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익적 가치를 가진 범죄 현장이라고 해석했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불만처리위원회 측에선 저널리즘윤리규칙 ⑧-(8)인 거주지 보호를 위배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게재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심각한 부담을 받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사례는 최종적으로 공개징계로 결정되었다.

사례 6: 영국 출신 여성이 마조레호 호수 호텔에서 사망한 사건
접수번호: 0331/19/2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이 마주하고 있는 마조레호(Maggiore) 호수에서 22세의 영국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타블로이드지의 온라인 판에서 “독일 친구의 주장: 섹스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하의 기사로 소개하였다. 이 신문에서 한 독일인이 호텔 방에서 영국인 여자 친구와 거친 성관계를 맺는 도중에 살해했다고 시인했지만, 호텔 직원은 폭력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편집자들은 이 보도를 위해 스위스 신문을 인용하였고, 피해자가 비키니를 입은 사진과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등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기사를 읽은 한 독자는 이 보도가 저널리즘윤리규칙 ⑧ 개인 인격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접수했다. 접수된 내용에는 신문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진이 모자이크처리되지 않은 채로 보도하였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경시하는 “섹스 중에 발생한 사건”, “야생적인 게임에서 길을 잃다”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접수된 불만에 대해 신문편집장은 남자친구는 호텔방에서 성행위를 하던 중, 그의 여자 친구를 우연히 살해하게 되었다고 시인한 것을 다뤘기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편집진이 찾아낸 사실이 아니라, 수사당국이 편집진에게 통보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 의견이었다. 또한, 여성을 실명으로 언급한 것은 외국의 보도에서 실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 외에도 불만접수자가 비판한 사진은 공개된 출처에서 가져온 것으로, 피해자 여성은 타이트한 옷을 입고 매혹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을 ‘섹시한 부유층 소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저널리즘윤리규칙 ⑧과 ⑧-(2)의 인격 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평가했다.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는 폭력범죄 피해자를 식별 가능하게 표시한 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피해여성은 공인이 아니며, 그 사진을 공개한다고 해서 얻는 공익적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 불만처리위원회의 해석이다. 또한, 친척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이 사건은 당시 독일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사례지만, 피해자의 신원을 아는 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며, 다른 국가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독일의 저널리즘윤리를 위배해도 된다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다. 이 사안은 최종적으로 견책처리되었다.

사례 7: 학대 피해자 정보 및 피의자 신원정보 공개 가능 여부
접수번호: 0059/20/2

이 사례는 “보호자가 아이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 제하의 기사가 범죄자와 피해자의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심의 내용이다. 한 지역 개신교 교회 소속 보이스카우트 보호자인 42세 Christian. L이 8~14세의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학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사건에 대해 지역신문이 재판 과정을 보도하게 된다. 총 330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범죄자가 구금된 이 사건에 대해 지역신문은 “Tom K.(가명)는 3년 동안 학대가 지속되어 보이스카우트를 탈퇴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부모는 다시 그 단체로 보냈으며, Robin F.(가명)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씩 학대와 성폭행을 당했다. Robin F.는 항문성교로 인해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발행된 후, 한 익명의 신고자가 불만처리위원회에 지역 거주민이 8,000명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편집자들이 그 행위를 자세히 설명하여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다시 희생자로 만들었다며 불만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 편집진들은 피해자 보호,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원칙을 어김으로써,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에 대해서 인정 및 사과하고 기사를 수정하였다. 또한, 비록 가명이지만 피해아동들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도 실수였음을 인정, 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삭제하였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저널리즘윤리규칙 ⑧-(2)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위반으로 처리했다. 피해자들이 공인이 아니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이를 공표함으로써 2차 피해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불만처리위원회와 신문사 측의 의견이 동일했고, 신문사 측이 즉각적으로 정보 삭제 및 수정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례는 견책으로 처리되었다.

(2) 성범죄 피의자 관련 보도

사례 1: ‘난민’ 언급은 허용되지 않음-크리스마스에 자신을 초대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사건 보도

접수번호: 1200/15/1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 “집에서 성범죄를 당한 여성” 제하로 보도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사에 대한 불만처리사례로 불만처리위원회는 이 기사를 저널리즘윤리규칙 ⑫의 차별기준 위반 여부를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난민보호소에 거주하는 지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남성이 여성에게 화가 났고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기술되어 있다. 독자는 피의자가 ‘난민보호소’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편집자와 기사는 피의자의 국적과 민족적 출신을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난민’이라는 사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표시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들은 ‘난민보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널리즘윤리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만처리위원회의 평결 결과, ‘난민보호소’에 대한 정보는 독자에게 사건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석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크리스마스에 한 남성을 집에 초대한 여성이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 남성이 난민보호소에 거주하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기사 전체 내용을 감안할 때, 남성이 ‘성폭행 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저널리즘윤리규칙 ⑬ 무죄추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이 사례는 최종으로 주의 판결을 받았다.

사례 2: 성폭행사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특정 가능한 정보 제공- 시리아 난민이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의 용의자라고 주장한 기사
접수번호: 0961/18/2

‘프라이부르크 집단성폭행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불만접수 사례다. “최대 15명의 가해자가 18세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시리아 출신 Majd. H.가 프라이부르크의 한 클럽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Majd. H.는 첫 번째 성폭행 이후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며 최소 7명이 4시간 동안 그 여성을 유린했는데,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수색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기사에선 현장 사진과 Majd. H.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그려 인식 가능하도록 했다. 사건 발생 2년 전에 촬영한 사진 중 Majd. H.가 기관총을 들고 있는 사진도 게재했는데, 그 사진의 설명엔 “나는 쿠르드이고, 나의 마음은 철과 같다. 나는 카미실리 출신이다”라는 표제와 함께 “이 사진은 아이의 모습을 잃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설명을 첨부했다.

해당 기사를 읽은 한 독자는 기사의 내용이 저널리즘윤리규칙 ⑧ 개인 인격권 보호를 위배했다고 신고했다. 독자 신고는 사진캡션에서 용의자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언급된 것으로도 모자라 직접 링크까지 제공하였고, 개인 사진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신문편집장은 대중이 언론으로부터 포괄적인 정보를 받는 데 관심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신문사 측은 용의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언급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실명을 기사에 담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의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사의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불만처리위원회 측은 해당 기사가 저널리즘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평가했고, 이에 신문사 측은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을 촉발시킨 범죄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기사 내용을 옹호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범죄보도 내용 필요성에 관해 신문사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가해자로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은 기사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용의자의 특정한 사진들을

인용하였기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인식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신문사의 보도가 있었을 당시 법적 절차는 초기 단계였고, 용의자가 공인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성폭행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이 매우 심각한 형사범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만처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최종심의결과는 견책이다.

사례 3: 성폭행범의 출신 국가 언급

접수번호: 0631/19/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한 지역신문은 “의심받는 청소년들” 제하로 한 도시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보도했다. 12~14세의 청소년 5명이 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다룬 이 기사엔 용의자들이 모두 불가리아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다른 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불가리아 출신 용의자/범죄자들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들을 함께 다루었다.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 한 독자는 소수 민족의 청소년들을 특정화함으로써, 저널리즘 보도규칙 ⑫ 차별과 ⑫-(1) 용의자의 소속 보도 금지 조항을 위배한 사례라고 불만처리위원회에 평결을 요청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 신문편집장은 불만처리위원회 측에 용의자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 특별한 공익성을 추구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신문 측은 이 사건은 수사당국이 ‘심각한 성범죄’로 평가했고,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판단했음을 강조했다. 불만처리위원회의 평의 결과, 국적을 명명하는데 정당한 공익이 존재하며, 피의자들이 속해있는 종교, 인종, 사회적 소속보다 더 큰 개념인 국적을 명시한 것이 공통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들어 이 불만처리는 기각되었다.

사례 4: 용의자를 인식가능하게 표현- 무죄추정원칙 위반

접수번호: 0091/19/2

이 사례는 온라인 타블로드이드 지의 “캠핑지에서 온 아동성추행범” 제하의 보도에 관한 불만접수내용이다. 입양한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에게 대해 보도한 이 기사는 그 남성을 Andreas V.로 명명했다. 기사에 사용된 사진은 용의자의 눈

에 검은색으로 막대처리(Augenbalken)함으로써 정확한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은 독자는 이 보도가 용의자를 가해자로 묘사했다며, 저널리즘윤리규칙 ⑧ 개인 인격권 보호와 ⑬ 무죄추정 등 두 가지를 위배했다고 불만처리위원회에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 내용엔 Andreas V.가 제목으로 이미 아동 성추행범으로 지명되었고, 기사를 다 읽은 후에야 그가 가해자가 아닌 용의자라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대한 평가는 본문 내용 뿐만 아니라 제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불만처리위원회 측의 확인 결과, 보도가 있었던 시기에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Andreas V.가 범죄자로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의 편집팀은 모든 저널리즘보도규칙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익명과 막대처리한 이미지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만처리위원회는 이 보도가 불만접수인의 지적처럼 저널리즘윤리규칙 ⑧과 ⑬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도가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목 또한 용의자의 유죄가 입증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최종적으로 이 기사는 견책 처리되었다.

IV. 맺으며

본고는 독일의 성폭행 피해자 등을 보도하는 데 있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자율규제기관과 사법기관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독일의 범죄사건 보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및 소송에 많이 인용되는 인격권의 개념과 인쇄매체/온라인매체를 통해 제공된 정보의 불만처리기관인 독일언론위원회 저널리즘윤리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성범죄자 피해자 등과 관련한 보도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범죄자 및 피해자 보도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검토했고, 사례는 성범죄 관련 사안으로 제한했다. 본문을 통해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법을 통해 보호되는 인격권 중 일반적 인격권은 민법과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가치로서, 민법의 제823조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기본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 자유이지만 기본법에 따라 그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적 인격권이다.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의 활동 범주에 따라

사생활 영역, 개인 영역, 사회/공공 영역 등으로 구분되고, 그 영역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영역 관련 정보는 최대한으로 개인에게 보장되며, 반대로 사회/공공 영역은 보장범위가 가장 적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이 기준은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대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활동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영역에서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다.

둘째, 정부가 언론감시기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것에 반발하여 설립된 독일언론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저널리즘윤리규칙을 제정, 인쇄신문/온라인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 및 규제하고 있다. 자율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산업을 구성하는 독일의 특성에 따라 내부지침과 규제는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독일언론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의 비율이 약 9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저널리즘윤리규칙은 거의 모든 신문사의 편집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언론위원회의 저널리즘윤리규칙 위반 여부는 독자가 신고한 사례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널리즘윤리규칙 중에서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①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⑧ 인격권 보호 ⑨ 명예보호 ⑪ 선정 보도, 청소년보호 ⑫ 차별 ⑬ 무죄추정 등 여섯 가지이며, 이는 성범죄 피의자/피해자보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 인격권과 저널리즘윤리규칙 등 두 가지 언론보도 관련 쟁점 판단기준은 피의자에게 사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여론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활용되는 반면, 피해자의 정보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관심을 위한 보도로 분류되어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 인격권과 저널리즘윤리규칙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겪었거나 불만처리위원회의 평결을 받은 사례 중 성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관련 사례를 추출하여 그 사례와 판결/평결 근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방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성범죄자 및 성범죄 피해자 관련 판례 중 피해자의 표현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이 피의자 또는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반적 인격권보다 더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과 같이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사실이 '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활동에 대해 피의자가 제약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사

례 2)처럼 성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이나 사건 발생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규정하는 사생활 및 개인 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적’ 상황이라고 판결한 것이 그 예다. 하지만 피의자로 언급되고 묘사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이를 묘사하는 경우엔 일반적 인격권과 명예훼손 등이 적용된다는 점도 발견되었다(〈사례 3〉).

둘째, 독일언론위원회에 접수된 언론기사 불만사례 중 성범죄와 관련한 사례들을 성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와 성범죄 피의자에 관한 내용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검토한 사례 중 〈사례 1〉의 평결결과에 따르면, ‘난민 출신’이라는 피의자의 상황이 성폭행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⑫ 차별을 위배했다고 해석했고, 〈사례 2〉에선 성폭행 사건과 관련성이 약한 피의자의 과거 사진을 불필요하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⑧ 개인 인격권보호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유사하게 〈사례 4〉에선 비록 가명 처리를 했지만 용의자를 실제 범인인 것으로 기사에서 묘사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⑧ 개인인격권보호 ⑬ 무죄추정 등을 위배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상의 평결결과를 감안할 때, 언론보도에서 다뤄진 정보가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진실성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폭행보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사례 3〉은 예외적으로 한 도시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 용의자들의 국적 표기가 허용된 사례다.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기에 국적 표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신문사 측과 불만처리위원회의 입장이다. 피의자의 보도의 경우, 검증이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이 원칙으로 적용되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인 경우에 범죄자의 신원 공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문에서 인용한 독일언론위원회의 불만처리사례 중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보도 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폭 넓게 보호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사례 1〉과 〈사례 3〉은 유사하게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온라인으로 공유한 사건을 보도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는데, 두 사안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① 진실성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 ⑧ 개인 인격권 보호, ⑪ 선정보도/청소년보호 등을 위배했다고 평가받았다. 보도에서 사용된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고 학대의 장

면을 담고 있는 동영상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기억에 남기에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징계의 근거다. <사례 2>는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한 한 여성의 사진을 보도한 것에 대한 징계로, 저널리즘윤리규칙 ⑧ 개인 인격권 보호에 따라 사후에도 보장되는 개인 명예를 훼손한 사례로 분류되었다. 한편, <사례 2>는 피의자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윤리규칙 ⑫-1)을 위반했다고 불만이 접수되었지만, 피의자가 과거 타국에서 저질렀던 유사사건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보였다고 판결, 피의자 관련 평결의 <사례 3>과 유사하게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사례 4>와 <사례 6>은 일반적 인격권 중 가장 보호가 강한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성행위에 대한 묘사/정보제공을 위반한 사례로,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⑧ 개인 인격권 보호 및 ② 신중 위반으로 징계가 결정된 유형이다. <사례 5>와 <사례 7>은 범죄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을 보도할 때 그들의 상황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배하여 사건 발생 장소 공개, 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이 문제시되어 징계를 받게 된 사례로 정리된다.

본문을 통해 소개한 사례들은 개별적으로 복잡한 이익관계 및 사건 내막을 담고 있기에, 하나의 사안에만 맞춰 위반 사항 또는 징계를 논의하기 어렵다. 어떤 사례에선 허용되는 정보수준이 다른 사례에선 금지되고, 사진 인용이나 피의자/용의자를 특정가능하게 하는 정보공개 역시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피해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는 최소한으로만 허용한다는 지침이 성폭행 관련 보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격권의 개념, 저널리즘보도규칙 및 판례와 평결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독일의 성범죄 보도에서 피의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충분한 자정능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 bpb (2015). Persönlichkeitsrecht. Retrieved from <https://www.bpb.de/nachschlagen/lexika/recht-a-z/22671/persoenlichkeitsrecht>
- bpb (2017a). Ehrschutz / Lebensbild / Recht auf Privatheit. Retrieved from <https://www.bpb.de/gesellschaft/digitales/persoenlichkeitsrechte/244836/ehrschutz-lebensbild-recht-auf-privatheit>
- bpb (2017b). Das Sphärenmodell zur Bemessung von Persönlichkeitsrechtsverletzungen. Retrieved from <https://www.bpb.de/gesellschaft/digitales/persoenlichkeitsrechte/244835/sphaerenmodell>
- Bürgerliches Gesetzbuch (민법. 2020년 개정). Retrieved from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BJNR001950896.html>
- Deutscher Presserat (2017). Praxis-Leitsät ze Richtlinie 12.1 des Pressekodex. Retrieved from https://www.presserat.de/files/presserat/dokumente/pressekodex/Pressekodex_Leitsaetze_RL12.1.pdf
- Deutscher Presserat. Presskodex: Ethische Standards für den Journalismus. Retrieved from <https://www.presserat.de/pressekodex.html>
- Frank Fechner (2019). Medienrecht. 20. Auflage. utb: Stuttgart.
- Grundgesetz (기본법. 2019년 개정). Retrieved from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BJNR000010949.html>

판례

- Bundesverfassungsgericht. *BvR 1107/09*.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90610_1bvr110709.html
- Bundesverfassungsgericht. *BvR 131/96*.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1998/03/rs19980324_1bvr013196.html
- Kostenlose Urteile (2009.10.06). *BVerfG: Individualisierende Medienberichterstattung auch bei Sexualstraftaten verfassungsgemäß*. Retrieved from https://www.kostenlose-urteile.de/BVerfG_1-BvR-110709_BVerfG-Individualisierende-Medienberichterstattung-auch-bei-Sexualstraftaten-verfassungsgemaess.news8159.htm?sk=dd7d12018f03773f0d9466e773ddc2bf

Telemedicus (2009). *LG Hamburg: "Sexschwein"*. Retrieved from <https://www.telemedicus.info/urteile/Allgemeines-Persoenlichkeitsrecht/Recht-am-eigenen-Bild/1090-LG-Hamburg-Az-324-O-73309-Sexschwein.html>

Telemedicus. BVerfG: Nennung des eigenen Namens bei Missbrauchsbezeichnung (BvR 131/96). Retrieved from <https://www.telemedicus.info/urteile/Allgemeines-Persoenlichkeitsrecht/262-BVerfG-Az-1-BvR-13196-Nennung-des-eigenen-Namens-bei-Missbrauchsbezeichnung.html>

신문자료

FAZ (2017.03.22). Was die Presse zu Straftätern schreibt. Retrieved from <https://www.faz.net/aktuell/feuilleton/medien/presserat-erneuert-richtlinie-zur-berichterstattung-ueber-straftate-14937809.html>

M (2016.07.06.). "Sächsische Zeitung" will Richtlinie 12.1 des Presserats ignorieren. Retrieved from <https://mmm.verdi.de/beruf/saechsische-zeitung-will-richtlinie-12-1-des-presserats-ignorieren-32525>

MEEDIA (2016.07.05). Herkunft von Straftätern: Sächsische Zeitung hält sich nicht mehr an Pressekodex und erntet Kritik. Retrieved from <https://meedia.de/2016/07/05/herkunft-von-straftaetern-saechsische-zeitung-haelt-sich-nicht-mehr-an-pressekodex-und-erntet-kritik/>

I. 들어가며

비극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L'histoire d'amour finit mal)

지난 2019년 10월 16일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지인 <라 부아 뒤 노르(La Voix du Nord)>는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는 곧 온라인 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들이 지난 18일 여성단체인 ‘#누 투트(#Nous Toutes)’¹⁾는 트위터에 해당 기사의 제목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불로 희생시켰다. <라 부아 뒤 노르>에게 이는 하나의 애정극이다. 진심인가? 이 폭력들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다(Le mari immole sa femme par le feu devant leurs enfants. Pour La Voix du Nord, c'est une histoire d'amour. Vous êtes sérieux? Les violence ne sont PAS romantique).』²⁾

<라 부아 뒤 노르>는 같은 날 바로 해당 트윗에 공식 답변을 남겼다. 그들은 이 같은 지적이 합당하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된 기사의 제목을 수정했다.

‘#미투(#Me Too)’ 운동을 기점으로 최근 몇 년 간 프랑스 내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현 배우자 혹은 연인 관계에 있는 남성이 상

* 파리 소르본 대학 사회학 석사과정, mcdjrp@gmail.com

1)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을 받아, 2018년 7월 3일 프랑스에서 조직되었다. 특정 지도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며, 시민들과 여타 조직들의 집합체이다. 법인 성격의 협회(Association)보다는 집단 모임(Collectif)의 성격을 지닌다. 이 단체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물리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한다. 이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가두시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프랑스 언론들이 성범죄를 다루는데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감시하며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트위터에 공개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사회네트워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구독자가 11만 2000명을 넘으며,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는 약 7만 1500개, 트위터에는 약 2만 4500개의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Moghaddam, 2019).

2) <https://twitter.com/noustoutesorg/status/1185085747130519552>

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사회 의식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살인사건을 ‘여성 살해(Féminicide)³⁾’로 규정하며, 앞선 사례처럼 이를 치정극 혹은 ‘가정 내 비극(Drame familial)’, ‘개인적 범죄(Crime personnel)’로 명명하는 데 반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프랑스 언론의 변화도 이끌어 내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신문, 방송, 라디오를 망라한 프랑스 언론들은 성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비극’이 아닌 ‘배우자에 의한 살해(Meurtre conjugal)’ 또는 ‘여성 살해’의 사용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Moghaddam, 2019).

프랑스에서도 성범죄 언론보도는 그 특성 상 피해자와 피의자 혹은 혐의자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세심함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규율이 마련되어 있다. 언론노조 혹은 언론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언론들이 성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이는 몇몇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프랑스 내의 제도적·법적 차원의 규제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프랑스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우트로 사건(Affaire Outreau)을 통해 당시 프랑스 언론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와 무죄추정 원칙 훼손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짚어볼 것이다. 이

3)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정의를 따르면(2012), 여성 살해(Féminicide)는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살인(l’homicide volontaire d’une femme)’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들 혹은 소녀들에 대한 살인(définitions plus larges qui incluent tout meurtre de filles ou de femmes au simple motif qu’elles sont des femmes)’을 포함한다. 또한 WHO는 ‘여성 살해는 대부분 남성에 의해 일어나며(le féminicide est généralement commis par des hommes)’ 대부분의 여성 살해 사례는 현 파트너 혹은 전 파트너에 의해 자행된다(la plupart des cas de féminicides sont commis par des partenaires ou des ex-partenaires)’고 밝혔다. 이러한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은 파트너들보다 적은 권력 혹은 자원을 지니고 있다(les femmes ont moins de pouvoir ou moins de ressources que leur partenaire)’라고 적시하였다.

프랑스 내에서 이 용어는 2014년 정부에 의해 새로운 단어로 인정받아 ‘인문학과 법학 용어집(Vocabulaire du droit et des sciences humaines)’에 등재되었다. 하지만 형법상 용어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이 단어의 활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쟁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법적 지위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대쪽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기존의 법률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다(Causit, Leclercq, 2019).

어 레오노르 르 캔(Léonore Le Caisne)의 리디아 사건(Affaire Lydia)과 프리츨 사건(Affaire Fritzl)의 비교 연구에서 드러난 프랑스 언론의 성범죄에 대한 뉴스 가치판단과 뉴스 프레임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전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의 성추문 보도에 나타난 프랑스 언론계에 관행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언론계 차원의 성범죄 보도 행태의 새로운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압력을 소개하도록 한다.

II. 성범죄 보도 관련 제도적 규율

1.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배경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1881년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자유법)’이며, 이는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혁명 당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이하 권리선언)’에 근거한다(박진우, 2007). 이처럼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는 긴 역사를 관통하며, 문화와 정치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 위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권리선언 11조가 이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의견과 사고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은 법에 의해 규정된 자유의 남용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즉, 의사소통의 자유,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프랑스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는 권리선언과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강력한 토대 위에서 정당화되었다. 이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 제한과 관련한 헌법적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물론, 이를 사전에 규제하는 법률적 내용이 드물지만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그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후적 규율 역시, 파기원(La Cour de cassation)이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Lamy, 2012).

한 예로 프랑스헌법위원회(Le Conseil constitutionnel)는 2010년 5월 28일 결정문에서 의사소통의 자유(La liberté de communication)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며 다른 권리들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규정하였다. 의사소통의 자유는 다른 시민적 자유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Montalivet, 2012). 물론 의사소통의 자유가 곧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엄밀하게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헌법적 체계 내에서 개인의 의사를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언론의 법적·사회적 지위 또한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가 지니는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는 지난 해에서야 모습을 보인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CDJM, Le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et de médiation)’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드러난다. 프랑스 역사 상 언론과 이용자를 중재하는 독립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DJM에 따르면, 언론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개에 달하며 유럽 연합 내에서도 18개 국가에서 언론중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편집인과 언론인, 언론매체, 그리고 공익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⁴⁾

프랑스에서 언론중재기구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는 프랑스의 헌법적 가치가 언론의 다양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중재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최근에 실제 설립으로 이어진 데에는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높은 불신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가짜 뉴스’로 대변되는 허위정보 문제와 2018년 ‘노랑 조끼(Gilets jaunes)’ 시위에서 보인 프랑스 언론들의 정부 편향적 보도로 인해 언론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2019’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들의 뉴스 신뢰도는 24%를 기록했다(최지선, 202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립된 언론중재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지난해 첫 발을 떼게 되었다.

CDJM을 바라보는 언론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일부 언론인들은 ‘언론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몫’이라며 중재기구에 반대의를 표명하였고, 특정 언론매체들 역시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4) <https://cdjm.org/presentation/>

언론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최지선, 2020). 이 사례를 통해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는 선불리 건드릴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임에 따라, 정부 혹은 제3자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저항도 거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무죄추정의 원칙

프랑스 언론자유법은 언론의 자유가 남용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도 담고 있다. 즉,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 명예훼손 등의 피해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진민정, 2018).

성범죄는 물론, 전반적인 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혐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2000년 9월 19일 개정안에 따라 언론자유법 제35조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혐의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 혹은 임시 구류 중인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Lamy, 2012). 또한, 형사소송 개혁에 관한 법(Loi n° 93-2 du janvier 1993 portant réforme de la procédure pénale)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 과정 중 언론에 의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된 자는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Dupeux, 2012).

3. 성범죄 피해자 보호

언론자유법은 범죄 피해자의 정보를 다룸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언론자유법 제35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해당 범죄의 구현은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다. 또한, 2000년 9월 19일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범죄 피해자의 성격은 세부적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언론자유법 제39조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마찬가지로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혐의자 혹은 피해자 모두를 아우르며 범죄 보도 전반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되어 있다. 언론자유법 제38조는 법적 절차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종결 사건이나 재판 관련 공식 자료를 공개할 경우, 3750 유로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재판장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공판에서 녹음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만약 이와 같은 정보를 담은 기사를 게재할 경우, 45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언론의 범죄 보도와 관련한 프랑스 언론자유법의 주안점은 피해자 인격권 보호와 무죄추정 원칙의 확립이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 그 대상을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피해자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한다. 한편 아직 범죄 혐의가 공식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사실 혹은 범죄 혐의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 같은 장치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심각한 인격권 침해뿐만 아니라 법적 판결은 받지 않은 용의자의 인격권에 대해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였다.

III. 성범죄 보도에 따른 피해자 기본권 침해 사례 및 프랑스 언론의 성범죄 보도 행태

1. 우트로 사건(Affaire Outreau)

(1) 사건 내용

이 사건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프랑스 북부의 불로뉴-쉬르-메르(Boulogne-sur-Mer) 인근에 위치한 주민 약 1만 5000명의 소도시 우트로(Outreau)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Pédophile)를 일컫는다. 2000년 초 미리안 바다위(Myrian Badaoui)와 티에리 들레이(Thierry Delay)의 네 자녀는 가정 내에서 자신들에게 자행된 성폭행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부모뿐 아니라 여타의 성인들도 성폭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곧 프

랑스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커다란 공분을 갖고 있었는데, 1996년 사건의 배경이 된 벨기에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던 뒤트루 사건(Affaire Dutroux)⁵⁾ 때문이었다. 이 사건의 전모가 낱알이 드러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 아동 성범죄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고,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우트로 사건은 프랑스 사회와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총 18명이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고, 12명의 성범죄 피해 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Licourt, 2018). 2004년 범행 주도자로 판단된 티에리 들레이(Thierry Delay)는 징역 20년형, 주 공범자이자 그의 배우자인 미리안 바다위(Myriam Badaoui)는 징역 15년형, 공범으로 드러난 다비드 델플랑크(David Delplanque)와 오렐리 그르농(Aurélie Grenon)은 각각 징역 6년형과 4년형을 선고 받았다(Le Point, 2015).

(2) 우트로 사건을 둘러싼 사법 논란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우트로 사건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사건의 잔혹성으로 인해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기본권 침해 논란은 사회적 논란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뻗어나갔다.

여기에는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실제 이로 인해, 프랑스 의회는 국회의원 30명으로 구성된 청문회를 2006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4월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하였다. 국회가 직접 나선 것에는 수사 선상에 오른 18명의 용의자 중 4명만이 혐의가 인정된 바, 나머지 무혐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주된 쟁점이었다. 청문회 동안 221명이 불려나왔으며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1600 페이지를 넘는다. ‘우트로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의 역기능 원인과 재발 방지 대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La commission d’enquête chargée de rechercher les causes des dysfonctionnements de la justice dans l’affaire dite

5) 마크 뒤트루(Marc Dutroux)는 1995년부터 1996년 사이 벨기에에서 여섯명의 소녀를 성폭행하고 이들 중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4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망한 피해자 중 2명은 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범 베르나르 와인스타인(Bernard Weinstein)의 시신도 발견되었다.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배우자 미셸 마르탱(Michelle Martin)은 징역 30년형, 미셸 르리에브르(Michel Lelièvre)와 미셸 니올(Michel Nihoul)은 각각 징역 25년형과 5년형을 선고받았다(Thorin, 2019).

d'Outreau et de formuler des propositions pour éviter leur renouvellement)'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문회의 목적은 분명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임시 구류(*la détention provisoire*)의 남용이었다. 이는 재판이 개시될 때까지 기소자를 구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변호권(*Le droit de la défense*)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Licourt, 2018). 또한, 2004년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파리 중죄재판소(*La Cour d'assises de Paris*)까지 올라갔다. 이 때, 고소인들과 증인들의 일부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더불어 정신감정인과 담당판사의 무성의로 인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오승규, 2007).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13명의 용의자 중에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넘게 임시 구류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다(Orsini, 2015). 이에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전례 없는 사법적 재앙으로 남을 사건 앞에서 여러분께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Je tiens à vous présenter regrets et excuses devant ce qui restera comme un désastre judiciaire sans précédent*)”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무죄 판결을 받는 13명에게 전했다고 엘리제궁은 2005년 11월 5일 밝혔다(*Le Monde*, 2005).

게다가 2002년 6월 9일 혐의를 받고 임시 구류 중이던 32세의 프랑수아 무르망(*François Mourmand*)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생-오메르(*Sain-Omer*) 법정에서 열릴 해당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진행되기 2년 전 사망했다. 사인은 약물과다 복용으로 알려졌지만, 자살 여부 혹은 약물 오용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Aubenas, 2005). 이에 따라,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18명 중 13명은 무혐의로 판단되었으며 4명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3) 우트로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의 문제 : 피해자 기본권 침해 등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사건인 만큼 모든 언론매체들이 이 사건에 매달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죄 관련 자료를 다루는 언론의 행태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

리잡았다. 언론들은 혐의자를 지목하거나, 형사 재판 과정의 정보를 밝히는 데 더욱 열을 올리며 인격권 침해를 자행했기 때문이다(Dupeux, 2012). 청문회는 당시 언론보도 행태를 중요한 한 축으로 다루었고, 프랑스 주요 언론의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청문회에 불려나왔다. 그들은 당시 해당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각 언론매체에서 영향력을 지닌 자들이었으며, <리베라시옹(Libération)>, <르 파리지앙(Le Parisien)>, <르 피가로(Le Figaro)>, <프랑스 3(France 3)> 등과 같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매체들도 포함되었다(Raizon, 2006).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사회적 비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인격권 침해와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었다. 청문회 보고서는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보도 행태의 문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① 예심 중 언론으로서의 엄격성과 신중함 결핍(La manque de prudence et de rigueur des médias pendant l'instruction) ② 언론이 소송 과정에 끼친 영향(L'influence des médias sur la procédure) ③ 생-오메르 중죄법원 재판 중 나타난 언론의 급격한 방향 전환(Le retournement des médias au procès de Saint-Omer)이 그것이다.

1) 언론에 의한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보고서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언론보도 사례들을 상세히 되짚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무죄추정 원칙의 훼손을 설명한다. 가장 먼저 언급된 언론보도는 <라 부아 뒤 노르(La Voix du Nord)>가 2001년 11월 17일 “매춘업에 몰린 24명의 아이들(24 enfants prostitués)”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다. 이 기사가 문제가 된 것은 구류된 6명의 혐의자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그들의 이름과 직업을 같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본인 스스로 강조하였던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보다 앞선 2001년 4월 7일 “아동 성범죄 : 수감된 한 부부(Pédophilie : un couple écroué)” 기사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법률에 따라 피해자와 현재 투옥된 혐의자들에 대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던 모습과는 상반되었기 때문이다(Galinier & Pereira, 2006).

당시 <라 부아 뒤 노르>의 편집장인 장-미셸 브르토니에(Jean-Michel Bretonnier)는 국회 청문회에서 “피해 가족의 외부인과 관련해서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이름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Pour les personnes étrangères

aux familles des victimes, la loi ne nous interdit pas de publier les noms, mais de porter atteinte à la présomption d'innocence)"라고 말하였다. 또한, "블로뉴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한 경비원과 택시기사가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직업군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연락해왔다. 우리의 의도는 루머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Tout le monde, à Boulogne, sait déjà qu'un huissier et un chauffeur de taxi sont en cause, et des personnes exerçant ces professions nous contactent pour faire savoir que ce ne sont pas elles ; notre intention est alors de circonscrire la rumeur)"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주장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입건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고 증언한 방송채널 <프랑스 3>의 지역 매체인 <에프에흐3-노르-빠-드-갈레(FR3-Nord-Pas-de-Calais)>의 에르베 아르뉘(Hervé Arduin)의 사례를 들며 <라 부아 뒤 노르>의 보도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덧붙여, 일부 매체에서 혐의자의 이름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혐의자에 대한 익명 보장은 다른 매체에서도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리베라시옹>, <르 피가로>, <르 파리지앵>,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 등과 같은 주요 매체들은 2002년 1월 중순부터 혐의자들의 이름을 기사에 담기 시작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보도는 혐의자의 이미지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하였다. 언론자유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갑을 차고 있거나 임시 구류 중인 모습 및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 이는 해당인의 가족이나 지인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임시 구류 중 사망한 프랑수와 무르명의 여형제인 리디아 카쟁-무르명(Lydia Cazin-Mourmand)은 청문회에서 "텔레비전에 그의 사진이 나왔을 때, 나는 기자들에게 전화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만두지 않았다(Quand la télé a montré sa photo, j'ai téléphoné moi-même aux journalistes pour leur dire d'arrêter, mais ils n'ont pas arrêté)"고 증언하였다.

같은 해 11월 21일, <르 피가로>는 '아동 성범죄 지하조직(Réseau pédophile)'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추측성 기사를 냈고, 이어 <르 뿌앙(Le Point)> 역시 이와 같

은 내용의 보도를 냈다(Galinier & Pereira, 2006). 이 같은 추측성 보도는 언론에 의한 혐의자들의 신원 정보 공개와 더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대하게 침해하였다. 이들은 가정적 혹은 추측성 어법을 구사하여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독자들에게는 사실상 이 같은 범죄의 존재를 확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청문 보고서 역시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신중함이 결핍되었다고 강조하였다.

2) 언론에 의한 피해자 인격권 침해

우트로 사건을 다룸에 있어 언론들은 피해자 인격권에 대한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피해 아동들의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를 제공하였으며, 더 직접적으로 피해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 행태도 잇달았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먼저 언론자유법 제39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이미지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내려진다는 것을 먼저 강조한다. 하지만 이 법적 제한이 일부 언론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으며, 2004년 5월 3일 <렉스프레스(L'express)>의 기사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피해 아동들이자 주범 들레이(Delay)의 자녀 중 2명의 이름 일부를 공개했으며, <르 몽드> 역시 2002년 1월 14일 “4명의 소년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티에리 데(Thierry D)가 그의 친구 뮌리앙 베(Myriam B)와 함께 자신들을 성폭행했다고 알렸다(les quatre garçons ont vite indiqué que leur père, Thierry D, les avait violées avec son amie, Myriam B)”고 보도하며 피해 아동 4명의 성(姓)을 공개하였다. 이후 보도에서 <르 몽드>는 뮌리앙 들레이(Myriam Delay)가 매춘과 성폭행을 당한 네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밝혔으며, 티에리 들레이(Thierry Delay)가 그의 배우자라고 밝혔다. <리베라시옹> 역시 2003년 8월 12일 기사에서 “데씨 가족의 아이들(enfants de la famille D)”라며 피해 아동 3명의 성(姓)을 드러냈다. 비록 언론보도에서 그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를 추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음을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이보다 더욱 심각하게는 사실을 정제하지 않고 폭로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텍티브(Détective)>는 피해 아동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Galinier & Pereira, 2006).

또한, 청문 보고서는 사건이 벌어졌던 지역에 팽배한 경제적 빈곤과 높은 실업률 등을 강조하며, 마치 이 지역에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묘사하는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며, 이에 대해 신문과 방송 언론 매체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데 더욱 몰두했다고 청문 보고서는 평가하였다.

(4) 후속조치

청문 보고서는 당시 언론보도 행태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큰 틀에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현행법적 수단의 개선(Améliorer les voies de droit existantes)과 언론들의 윤리규정 제정 추진(Inciter les médias à élaborer un code de déontologie)이 그것이다.

1) 현행법적 수단의 개선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첫 번째로 사소(私訴)권 행사 촉진(Faciliter l'exercice de l'action civile)과 두 번째로 방송 부문에서 반론게재 청구권 개혁(Réformer le droit de réponse dans le secteur audiovisuel)이 그것이다.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하여, 청문 보고서는 파기원이 1994년 6월 22일 “민사재판소에서 공소(公訴)와 별도로 행해진 소송의 경우, 언론자유법 제55조의 적용을 가로막는 어떤 입법적 규정은 없다(Aucune disposition législative n'écarte l'application de l'article 55 de la loi de 1881 dans le cas d'une action exercée séparément de l'action publique devant la juridiction civile)”고 판단한 부분을 언급한다. 언론자유법 제55조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사실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환장에 적시된 내용, 말하자면 사실관계와 참고 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 즉, 파기원의 결정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의 경우, 언론은 언론자유법 제55조에 따라 보도의 사실 내용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문 보고서는 고소의 적격성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자유법 제53조와 관련하여, 이는 민사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1997년 2월 19일 파기원의 결정을 같이 인용한다. 이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민사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반론권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간의 차이를 언급한다. 이런 차이는 각 언론매체를 규정하는 법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 인쇄매체의 경우, 언론자유법을 따른다. 언론자유법에 따르면, 인쇄매체는 반론권 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상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이를 거부할 시 37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방송매체는 1982년 7월 28일 방송법(La loi du 29 juillet 1982 sur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을 따른다. 방송법에 따르면, 중상과 모욕 등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반론권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법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벌금이 부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방송매체와 인쇄매체 모두 언론의 범주 안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고 제재하는 법적 장치는 상이하다. 이는 물론 각각 매체의 고유한 특성에 의거한 것이지만, 청문 보고서는 매체의 특성과 관계 없는 반론권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2) 언론들의 윤리규정 제정 추진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언론 윤리와 관련해 제도적 기능이 미흡하다고 진단한다. 물론 정보 확인과 사전조사, 신중함 등은 언론인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직업윤리이자 정신으로 여겨진다. 또한, 1918년 전국언론인노동조합(SNJ, 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의 ‘언론인 윤리강령(Charte d'éthique professionnelle des journalistes)’ 등 자율적인 규제도 존재하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가 강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8가지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① 보도에 앞서 정보의 정확성 확인(Vérifier l'exactitude des informations, avant leur publication) ② 모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및 이를 원본의 기존 위치에 반영할 것(Rectifier toute information inexacte, sans délai et en accordant à la rectification la même place qu'à l'information initiale) ③ 보도에 있어 신중함과 절도(節度)를 보일 것(Faire preuve de prudence et de mesure dans l'expression) ④ 대심(對審)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의견을 청취할 것

(Recueillir des pints de vue émanant de sources différentes, selon le principe du contradictoire) ⑤ 신원을 공개함에 있어 분별력을 발휘할 것(Divulguer l'identité des personnes avec discernement) ⑥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할 것(Respecter la dignité humaine et la vie privée) ⑦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Respecter la présomption d'innocence) ⑧ 반론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것(Faciliter l'exercice du droit de réponse).

우트로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사법적 수단의 남용과 그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에 따라, 청문 보고서는 임시 구류 남용의 제한 등과 같은 사법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한다. 이와 비교하여, 비록 청문회가 당시 언론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정도는 현행법 준수와 언론 윤리 강화와 같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더 나아가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법제의 제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프랑스의 법체계(박진우, 2007)와 인권선언에 기원하여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언론의 자유 수준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청문 보고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입법권자 혹은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언론의 보도 행태와 관련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리디아 사건(Affaire Lydia)

(1) 사건 내용

이 사건은 2004년 리디아 구아르도(Lydia Gouardo)가 자신의 아버지인 레이몽 구아르도(Raymond Gouardo)에 의해 28년 간 지속되었던 성폭행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피의자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레이몽은 1999년 사망했는데, 성폭행은 그때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모(Meaux) 인근 작은 마을의 오래된 농가에서 지냈는데, 장기간의 성폭력으로 그녀는 총 6명의 아이를 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밀히 말하자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르 칸(2016)은 이 사건과 프리츨 사건(Affaire Fritzl)을 연관시켜 리디아 사건이 불거진 지 1년이나 지난 후에 프랑스 언론의 급격한 관심

을 받게 된 맥락을 분석한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와 관련한 프랑스 언론의 뉴스가치 판단의 척도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언론 보도 행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 언론에 있어 단순한 사실 전달은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며, 각각의 범죄 또는 성범죄가 지닌 특성에 따라 더 큰 뉴스 가치를 부여받고 또 가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뉴스 가치 판단은 필연적으로 특정 사실의 부각과 그에 따른 사건 맥락의 훼손 또는 선정적 보도 등 피해자 인격권 침해와 직결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프리츨 사건은 2008년 4월 말 오스트리아에서 드러난 가정 내 성범죄로 피해자인 엘리자베스 프리츨(Elisabeth Fritzl)은 18살 때부터 약 23년 간 집 지하실에 감금되어 아버지인 조세프 프리츨(Josef Fritzl)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였다. 그 결과, 그녀는 총 7명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아이 중 2명은 출생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사망했고, 그 사체는 불태워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죄행위는 2004년 19세였던 그녀의 첫째 딸이 응급상태로 병원 실려 가면서 드러났다. 의료진들이 병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와 연락 하길 원했고, 이에 피의자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조세프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고서야 감금에서 벗어난 엘리자베스는 병원 의료진에 그 동안 있었던 모든 범죄 행위를 알렸다. 그 때 그녀의 나이는 42세였고, 6세와 18세의 다른 아이들도 그제서야 지하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2) 사건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태도

리디아 사건의 최초 언론보도는 2007년 2월 2일 있었던 리디아의 의붓어머니 루시엔느(Lucienne)에 대한 공판 직후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재판을 지켜보던 지역 주간지 <라 마른(La Marne)>의 한 법조기자 역시 방청석에서 나가야 했다. 이 같은 재판 진행에 의문을 품은 해당 기자는 해당 사건을 대중에 밝히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피해자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판결이 의무가 아니었고, 검찰 측 요구에 따라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6명의 아이들을 임신시키다. 이상한 비공개. 가정의 비극(Son père lui fait six enfants. Étrange huis clos. Drame familial)”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며, 재판 과정의 비공개 처분과 함께 이 같은 비극을 막지 못한 사법체계에 비판을 가했다.

초기에 이 사건은 프랑스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2007년 3월 10일 프랑스 언론통신사인 <아에프페(AFP)>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첫 기사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지만, 미디 피레네(Midi-Pyrénées)의 지역지인 <라 데페쉬 뒤 미디(La Dépêche du Midi)>와 코트도르(Côte-d'Or)의 지역지인 <르 비앙 뤼블리크(Le Bien public)> 두 군데에서만 이를 받아 보도하였다. 그 외에 전국 일간지로서는 <리베라시옹>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무관심을 비난하는 논조의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저자는 당시 이 사건이 프랑스 언론계에서 뉴스가치를 평가 받지 못한 몇 가지 이유를 분석한다. ① 특정 지역에 국한된 낮은 정보 가치 ② 언론의 적은 영향력 ③ 사건의 시의성 등이 그 이유이다.

먼저 첫 번째와 관련하여 이 사건은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남에 따라, 전국적 영향력을 지닌 언론매체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트로 사건 직후, 경제·사회적으로 낙후한 지방의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사건은 그 자체로서는 큰 뉴스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언젠든 일어날 법한 사건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런 이유에서 별도의 뉴스 꼭지를 할당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초기 몇 개월 간 이 사건을 다룬 매체는 첫 기사를 실었던 지역지가 유일하였다. 문제는 해당 매체의 파급력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받아쓰는 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사들은 해당 사건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기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었다. 다시 말해, 해당 매체 안에서도 이 사건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사건의 시의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불거졌다. 그로 인해 사실상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여겨졌다. 또한, 피해자인 리디아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수십 년 간 폭력에 시달렸지만,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는 이미 성인이었다. 저자는 이 사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언론의 관심도를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 맥락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도 했다. 먼저 주변으로 지목된 레이몽이 사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쌍방의 의견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⁶⁾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망한 지 몇 년이나 지나서야 사건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리디아의 진술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 지 모호했다.

큰 틀에서 리디아 사건과 프리츨 사건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모두 아버지에 의한 성범죄이며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출산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디아 사건은 ‘프랑스의 프리츨 사건’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처럼 사건 성격상 크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가 아닌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프랑스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리디아 사건을 재평가하도록 이끈 동력이 되었다. 이 점에서 프랑스 언론이 프리츨 사건에 커다란 관심을 보인 맥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프랑스 언론계가 프리츨 사건에 큰 뉴스가치를 부여한 이유로 ‘해당 사건의 특이성’을 꼽는다. 무엇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계가 주목한 것은 장기간의 ‘감금’이다. 피해자가 20년 넘게 지하실에 갇힌 상태에서 범행이 자행되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언론매체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프리츨 사건을 여타의 아동 성범죄 또는 친족 성범죄(Inceste)와 구별되는 것으로 내세운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맥락을 품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높은 뉴스가치를 부여받았다.

장기간의 감금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사건의 확장성을 가져왔다. 수십 년에 걸쳐 감금된 채 성폭행을 당하고 그에 따라 여러 명의 자녀까지 출산했는데도, 이웃은 물론 그 어떤 제도적 기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오랜 시간 비밀스럽게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현행 사회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로 급격히 떠오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리디아 사건과 프리츨 사건이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리디아 사건이 일어나던 지역에서는 암묵적으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사회문제가 되고 뉴스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 프랑스 언론은 우트로 사건으로 인해 낙후한 지방 소도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 지역 주민과 행정체계 전체가 암묵적 묵인자가 되면서 오히려 그 지역의 특수한 사건으로 남은 것이다.

6) 2007년 2월 12일 재판부는 의붓어머니의 공범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같은 해 4월 12일에는 징역 3개월 형과 벌금 1만 5000 유로를 선고하였다.

또 다른 특이성은 피해자의 성격과 연관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프리츨 사건의 피해자인 엘리자베스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생명이 위급한 자신의 자녀를 구하기 위한 이타적(Altruiste)인 이유로 사건을 폭로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녀가 지하실에서 벗어난 직후 해당 사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욱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인 조세프가 현존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 명확한 비난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법당국은 즉시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났다.

(3) '진실한 피해자'와 '모호한 피해자'

이 지점에서 필자는 프랑스 언론이 성범죄 피해자를 규정하는 기준들을 도식화하였다. '진실한 피해자(Vraie victime)'와 '모호한 피해자(Fausse victime)'으로 나누어 언론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규정하는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다.

〈표 1〉 진실한 피해자와 모호한 피해자

진실한 피해자	모호한 피해자
현재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끝내기 위해 범행 사실을 폭로. 이 같은 고발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음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범죄가 끝난 이후, 이 같은 사실을 폭로. 이는 사전에 계획되어 있음
타인에 의해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음	피해자 스스로 범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를 인정받고자 함
피해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보호를 받음	본인을 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공격함
여전히 복종 상태에 있음	복종 상태에서 벗어남
타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비난에 가세함. 제도적 기관 역시 공개적인 발언에 나섬	피해자 혼자 비난을 가함. 제도적 기관에 반하는 개인적인 발언에 나섬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범죄로 여겨지는 것의 피해자로 인정됨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의 피해자라고 자칭함
가해자는 살아있고, 지명될 수 있으며, 일반적이지 않음	가해자는 일반적인 사람이며 더 이상 혹은 아예 식별되지 않음
피해자가 겪은 범죄 사실이 성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음	범죄 사실이 성범죄에만 국한됨
피해자 본인이 나서서 발언하지 않으며 발언하더라도 빈도가 매우 적음.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	많은 발언을 할 뿐 아니라 외부 노출도 많음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음	본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함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 있으며, 자신을 피해자로 내몬 사회질서라도 이를 존중함	과거에 피해자였으며, 자신을 피해자로 내몬 사회질서를 비난함

출처: Léonore Le Caisne (2016). Quand dire, c'est faire taire

도식에 비추어보면, 리디아 사건의 피해자인 리디아와 프리츨 사건의 피해자인 엘리자베스는 언론에 의해 서로 다른 지위를 얻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 사실 폭로의 동기가 다르며, 사건의 전개 역시 상이하다. 프리츨 사건의 경우, 엘리자베스의 폭로 이후 경찰이 즉각 개입하였으며, 조세프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그의 프로파일은 물론 해당 사건 내용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다. 또한, 이 사건이 수십 년 간 비밀리에 지속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제도적 기관에 대한 비판이 가해졌지만,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은 이 사건의 외부인으로서 위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본인의 정당성과 권위를 지킬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 스스로 직접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녀가 직접 나섰던 것은 본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도움을 줬던 주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편지 한 통이 유일하였다. 그 어떤 인터뷰에도 나서지 않았으며, 그녀 본인은 물론 아이들의 사진이 공개된 적도 없었다. 이 같은 익명성은 사건의 무게를 더하는 것은 물론, 그녀의 피해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모든 맥락들을 통해 당시 모든 언론은 엘리자베스를 반인륜적 사건의 ‘진실한 피해자’로 받아들였다.

반면 리디아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은 어떤 제도적 기관의 개입 없이 작은 지역지에서만 다뤄졌다. 또한, 피해자인 리디아가 스스로 앞장서 사건 폭로에 나섰다. 그녀는 이 같은 범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던 지역 공동체와 제도적 기관들을 비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더욱이 가해자로 지목한 레이몽이 이미 사망한 지 수 년이 지나서야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의 적극성과 행동 시점 등은 오히려 그녀의 피해자 지위에 의문을 가하는 역작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4) 언론의 사건 재조명

위에서 언급한 사건의 맥락과 특성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리디아 사건은 ‘프랑스판 프리츨 사건’으로 명명되면서 새롭게 프랑스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이 사건은 아동 성범죄, 특히 근친에 의한 아동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리디아 사건은 단순히 프리츨 사건과 유사한 국내 사건으로서 부각된 것은 아니다. 프리츨 사건은 하나의 언론 프레임을 제공하고 새로운 뉴스가치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앞서 리디아 사건이 언론 보도화되었을 때는 제도적 허점, 사건에 대한 무관심, 혹은 합법적 아버지 - 유전적 아버지가 아닌 - 에 의해 장기간 이어진 성적 학대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프리츨 사건의 특징에 따라 리디아 사건은 새롭게 조명받았다. 이로 인해, 리디아 사건은 있음직한 유형의 범죄에서 독특한 특성의 범죄로 그려졌다.

가장 먼저 적용된 프레임은 ‘감금’이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은 암묵적으로 리디아에게 가해지는 성범죄를 인지하고 있던 데다, 그녀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장기간 ‘감금’ 프레임으로 엮는 것은 사건의 진위성을 의심하게 하는 위협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한 공간에서 이뤄진 성범죄라는 점에서 언론들은 프리츨 사건과 리디아 사건을 연결하였고, 이는 프랑스의 지방 소도시에서 있음직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뉴스가치를 부여하였다.

이어 근친상간, 제도적 기관의 실패, 광범위한 무관심 같은 내용들이 새롭게 주목받았다. 리디아는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다양한 맥락이 뒤얽힌 반인륜적이고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그려졌다. 다양한 언론에서 그녀를 초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폭로하고 지역 공동체의 무관심에 가차 없는 비난을 가하였다.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는 사건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 뛰어 들어 그들의 침묵에 대해 파헤쳤다.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은 “한 도시의 침묵” 같은 제목들로 장식되었다.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사건이 지닌 뉴스가치는 판이하게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사실관계에서 특정한 맥락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언론 고유의 역할이며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건들이 새롭게 조명받으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언론 보도화 과정에 있어, 피해자가 호소하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디아 사건이 새롭게 부각될 당시, 프랑스 언론은 프리츨 사건과 연결하여 감금 프레임을 활용하였다. 이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뉴스 가치였을지 모르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 더 나아가 사건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위험이 있었다. 당시 변호인 역시, 이 같은 프레임보다는 행정당국의 무능과 지역 공동체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3.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사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총재로, 2011년 5월 14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소피텔(Sofitel) 호텔에 투숙하면서 객실 담당 호텔 직원인 나피사투 디알로(Nafissatou Diallo)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프랑스에서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의 이니셜을 따 DSK 사건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앞으로 그를 칭할 때는 스트로스-칸이라 하며, 해당 사건을 DSK 사건이라 부르겠다.

이 사건이 프랑스 언론의 성범죄 보도 행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것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지켜져 왔던, 프랑스 남성 정치인들의 성추문 보도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언론계의 암묵적 침묵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지대한 훼손이 일어나기도 했다.

(1) 사건전개

사건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1년 5월 14일 스트로스-칸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를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등 미국 언론이 긴급 보도하면서 알려졌다(Le Monde, 2011 : Stainville, 2012). 당시 디알로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 사실을 호텔 관계자에 알렸고, 신고를 접수받은 미국 사법당국은 그가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체포했다.

이어 성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다. 스트로스-칸 역시 성적 행위는 인정했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군다나 <뉴욕 타임스>는 2011년 6월 30일 디알로가 스트로스-칸과 엮이던 날, 400 파운드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과 통화하며 스트로스-칸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며 그녀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Dwyer, Rashbaum & Eligon, 2011). 사건이 점차 스트로스-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자, 디알로는 오랜 침묵을 깨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7월 25일 그녀는 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와 미국 방송채널 <ABC>를 통해 자신을 향한 공격과 사실 왜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녀의 변호인 측도 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거라고 공표하였다.

그러던 와중, 프랑스 언론인이자 작가인 트리스탄 바농(Tristane Banon)이 2003년 스트로스-칸의 자신에 대한 성폭행 시도와 관련하여 그를 고소했다고 2011년 7월 4일 밝혔다.⁷⁾ 미국에서 불거진 스트로스-칸의 성폭행 혐의 형사재판은 일관성 없는 디알로의 진술로 인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앞서 같은 해 8월 8일 디알로는 스트로스-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Le Monde, 2011). 민사재판 역시 2012년 12월 10일 양측이 비밀 보장을 전제로 6백만 달러로 추정되는 합의금에 동의함에 따라 끝을 맺었다(Politi, 2012).

(2) 침묵의 규율이 스트로스-칸을 보호해 왔다(La loi de silence a continué à protéger DSK)

프랑스에서 사생활보호의 법적 근거는 1970년 제정된 민법으로, 민법 제9조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사생활 보호의 범위에는 정치인은 물론 고위공직자도 포함된다(이성훈, 2014). 이는 대통령은 물론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에게 혼외자가 있었지만,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보도하지 않았다. 1994년 11월 주간지인 <파리 마치(Paris Match)>에서 미테랑 대통령과 혼외자인 마자린느 핑조(MAzarine Pingeot)가 같이 식당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도하며 이 사실을 대중에 알렸다. 하지만 다른 언론매체들은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같은 사생활을 폭로한 해당 매체에 더 큰 비난을 가했다(이성훈, 2014). 이에 대해 <리베라시옹>의 전 편집장인 장-미셸 엘빅(Jean-Michel Helvig)은 “우리가 프랑수아 미테랑의 다른 가족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Si on n’a pas enquêté sur l’autre famille de François Mitterrand, c’est parce que cela ne nous paraissait pas important)”라고 말했다(Stainville, 2012).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의 불륜 역시 기자들 사이에서 알려졌고, 그의 부인인 베르나데트(Bernadette)가 나중에 출간한 책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지기도

7) 프랑스 검찰은 2011년 10월 13일 스트로스-칸의 바농에 대한 ‘성폭력(Agression sexuelle)’ 혐의는 인정하나 ‘강간 미수’ 혐의(Tentative de viol)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적 폭력에 대한 공소 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재판 없이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바농 변호인 측은 “검찰의 결정이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바농의 주장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첫 승리”라고 밝혔다(Cazi, 2011).

했다. 그럼에도 프랑스 언론들은 이를 다루지 않았다(Clarisse, 2011).

스트로스-칸의 성추문은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프랑스 언론계의 계율에 대한 일종의 변곡점이 되었다. 이러한 프랑스 언론의 침묵 계율, 혹은 암묵적 엠바고는 ‘오메르타(Omerta)’라고 불린다. 미테랑과 시라크는 물론 프랑수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등 심심찮게 일어났던 프랑스 대통령의 불륜 혹은 부정은 그들이 아무리 공인이고 유력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간의 사적인 문제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정치계와 주류 언론계의 유착 관계 역시 이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릭 파상(Eric Fassin)은 프랑스 정치계와 언론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를 지적한다. 실제 스트로스-칸의 부인인 안느 싱클레어(Anne Sinclair)는 프랑스의 대표 방송 채널인 <TF1> 출신의 저명한 언론인이었다(Clarisse, 2011).

스트로스-칸의 사례는 이와는 다른 맥락을 지닌다. 강압에 의한 성폭행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로스-칸의 이 같은 성추문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언론은 침묵을 유지해왔다. <리베라시옹>의 브뤼셀 특파원이자, 2007년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스트로스-칸의 성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장 카트르메르(Jean Quatremer)는 프랑스 언론계의 온당하지 않은 침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2년 출간한 ‘섹스, 거짓말과 미디어(Sexe, mensonges et médias)’이라는 책을 통해 정치인의 성 스캔들과 이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침묵을 다뤘다. 그는 ‘DSK 사건’ 혹은 ‘쇼피텔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이 프랑스 언론의 암묵적 엠바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이 외국, 즉 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이처럼 유력 정치인에 의한 성폭행이 국내, 즉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소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며 정치계와 주류 언론계의 관계에 의해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스트로스-칸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건의 증명과는 별개로 프랑스 언론계는 이를 있음직한 일로 여기며 의심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스트로스-칸의 성적 문제는 이미 프랑스 언론계 내에 파다하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으로 스트로스-칸의 성적 문제를 공론화하며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대다수의 프랑스 언론들이 그에게 여성을 대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가 속한 <리베라시옹>에서도 이 글을 지면 기사로 보도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피로스카 나지 사건(Affaire Pirooska Nagy)⁸⁾으로 불리는 스트로스-칸의 성추문과 관련해서도, IMF 내부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심층취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역시 당시 <리베라시옹>의 고위진의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내용은 미국 언론인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의해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되었다.

결국 스트로스-칸의 잇따른 성추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성적 태도를 지녔고, 언론계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함으로써 문제를 더 키웠다고 본다. 불거진 문제들이 무혐의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되자 프랑스 언론은 이에 대해 유력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한 암묵적 침묵 혹은 언론의 신중함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카트르메르는 수차례 의혹과 혐의가 불거졌음에도, 이에 대한 언론의 침묵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남성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한 프랑스 언론계의 침묵은 피해자의 목소리마저 침묵하게 만들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바농은 2011년 스트로스-칸의 성폭행 미수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의 이름을 가리기는 했지만 2007년 2월 해당 사실을 대중에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2008년 피로스카 나지 사건이 불거졌지만, 프랑스 언론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스트로스-칸의 성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경찰에 의해 그가 체포되고 수갑을 찬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몇 차례의 의혹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수 년 간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강제적인 침묵에 잠겼다. 다시 말해, 프랑스 언론계의 침묵의 계율이 언론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들의 호소 역시 침묵케 한 것이다(Stainville, 2012).

8)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로 IMF의 아프리카 지부 책임자로 있었던 그녀는 스트로스-칸과 부적절한 메일을 주고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를 언론에 알렸다. IMF 내부 조사 결과 둘의 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권력 남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그들의 관계는 조직 권력 관계에 따른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반박했다(Millot, 2011).

IV. 성범죄 보도 관련 프랑스 언론계의 자율 규제와 사회적 규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에서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의 기본권은 물론, 혐의가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이는 항상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프랑스 사회의 강력한 지향점은 언론보도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해 말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프랑스 언론계에 있어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언론계 내의 반발이 존재하고, 이제 막 첫 발을 디었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실용성을 지닐지는 조금 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독립 기구로서 가능하며, 언론 외부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성범죄 관련 보도는 물론, 전반적인 언론 윤리와 가이드라인은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왔다. 가장 대표적이지 긴 역사를 지닌 것은 1918년 7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국언론인노동조합의 ‘언론인 윤리강령’이다. 윤리강령은 언론인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언론윤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비판적 시각 견지’, ‘사실 왜곡 혹은 도용 금지’, ‘사기업 혹은 제도적 기관으로부터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말 것’ 등이 담겨 있다. 덧붙여 개인의 존엄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특정 분야, 구체적으로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세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부터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프랑스 언론계 내에서 어떤 자정 활동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프르농 라 윈(Prenons la une)

WHO의 여성 살해(Féminicide)에 대한 정의와 이와 관련한 프랑스 내의 논쟁 등에서 드러나듯이,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는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이뤄진다. 프랑스 인구문제연구소(INED,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에서 2016년 11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선 1년 간 5만 2400명의 여성들이 최소 한 번의 강간(Viol) 피해를 입었으며, 남성 피해자는 2700 명에 달했다. 통계적으로 여성 26명 중 1명이 강간을 당하며, 7명 중 1명이 성폭행(Agression sexuelle)에 노출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최소 한 번 이상 강간 피해를 입었거나 성폭행 시도에 노출되었던 피해자 중 약 40%는 15세 미만이었으며, 약 16%는 15-17세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 언론이 성범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성단체 혹은 여성기자 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다.

프르농 라 윈(Prenons la une)은 2014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여성언론인 단체다. 이들은 남성이 주도하는 프랑스 언론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여성 언론인들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목적으로 모였다. 특히, 이들은 프랑스 언론이 여성을 비가시화하며 대상화한다고 비판한다. 이 단체가 2014년 3월 2일 <리베라시옹>에 발표한 선언문에 따르면, 프랑스 언론이 여성 전문가의 의견을 다루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며, 그 외에 언론이 여성을 다루는 방식은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단순한 목격자일 때라고 지적한다. 또한, 언론 편집권과 관련하여 여성 언론인은 비주류로 밀려나고 있다고 강조한다(Prenons la Une, 2014).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언론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 또는 남성중심 문화에 이의를 제기하며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조직은 언론계 내 성추행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돕기 위해 2018년 조직의 성격을 사적 단체(Collectif)에서 법인 성격의 협회(Association)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집회를 기획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프랑스 언론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법적 방안까지 강구하는 것이다.

이 협회의 문제의식이 프랑스 언론계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올바른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움직임도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9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다루는 언론의 방식에 대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에 따르면, 매해 21만 9000여 명의 여성들이 전·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9만 4000여 명의 여성들이 강간 혹은 강간미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분명한 사회적 현상이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올바

르게 다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11가지의 권고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① ‘치정 범죄(Crime passionnel)’ 혹은 ‘가정의 비극(Drame familial)’ 같은 표현을 쓰지 말 것 ② 법적 용어의 사용을 우선시 할 것 ③ 상투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을 피할 것 ④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을 쓰지 말 것 ⑤ ‘성희롱(Harcèlement sexuel)’, ‘성폭력(Agression sexuelle)’, ‘강간(Viol)’을 서로 혼동하지 말 것 ⑥ 피해자의 생활방식이나 생김새, 옷차림에 집중하지 말 것 ⑦ 충고 혹은 강의 어투의 보도 행태를 취하지 말 것 ⑧ 피해자의 존엄성과 신원을 보호할 것 ⑨ 성폭행과 배우자에 의한 살해를 사회적 사실로서 다룰 것 ⑩ 강간 피해 혹은 사후적 의료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쉽게 표현하지 말 것 ⑪ 여성 피해자 상담 전화인 3919 번호를 표기할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림 1] 프르농 라 우이 제시한 11가지 성범죄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LE TRAITEMENT MÉDIATIQUE DES VIOLENCES FAITES AUX FEMMES

OUTILS À L'USAGE DES JOURNALISTES

Chaque année, plus de 219 000¹ femmes sont victimes de violences de la part de leur ancien ou actuel conjoint, et 94 000 femmes sont victimes de viols ou tentatives de viols. Les violences faites aux femmes sont un fait de société. L'association Prenons la une a établi quelques recommandations pour permettre un traitement journalistique le plus juste possible.

- 1 Bannir les termes « crime passionnel » ou « drame familial »,** qui minimisent l'acte de l'agresseur en le considérant comme emporté par l'amour et la passion. Si ces termes sont employés par les avocats de la défense ou la police, on emploiera des guillemets et on les présentera comme un argument d'une des deux parties. Privilégier « meurtre conjugal » ou « meurtre par le partenaire intime ».
- 2 Préférer les termes juridiques consacrés** quand un procès est en cours (« plaignante », « partie civile »). En l'absence de plainte (et donc de terme juridique consacré), il est préférable d'utiliser les termes de « victime déclarée » ou d'« accusatrice » plutôt que « victime présumée », qui met en doute la parole de la victime.
- 3 Éviter les clichés et les raccourcis.** Une femme meurt rarement « sous les coups » de son meurtrier. Dans la plupart des cas, une arme est utilisée.
- 4 Écarter les verbes « avouer » et « reconnaître »** lorsque l'on rapporte les déclarations d'une victime, car ils laissent croire à une culpabilité de la victime. À l'expression « elle s'est fait violer », on préférera également le passif « a été violée » ou « a subi un viol ».
- 5 Ne pas confondre « harcèlement sexuel », « agression sexuelle » et « viol ».** Les deux premiers sont des délits. Un viol est un crime défini par le code pénal comme « tout acte de pénétration sexuelle, de quelque nature qu'il soit, commis sur la personne d'autrui ou sur la personne de l'auteur par violence, contrainte, menace ou surprise ». Employer le terme « agression sexuelle » pour décrire un viol le minimise.
- 6 Éviter les précisions sur les vêtements, le physique ou les habitudes de vie de la victime,** qui induisent qu'elle peut être responsable de son agression. Si ces informations qui sont délivrées dans le dossier d'instruction ou par le procureur, il convient d'utiliser des guillemets. Rappelons que le fait que la victime soit en état d'alcoolémie au moment des faits est une circonstance aggravante pour l'agresseur au regard du droit.
- 7 Ne pas donner des conseils ou des leçons** tels que « ne pas sortir le soir » ou « faire preuve de discrétion ». Les femmes ne sont pas responsables des violences qu'elles subissent.
- 8 Protéger l'identité et la dignité de la victime.** Révéler son identité peut la mettre gravement en danger. Les journalistes peuvent intégrer les témoignages de victimes de violences uniquement quand celles-ci ne se trouvent pas dans une situation d'urgence ou sous l'influence de tout type de pressions extérieures.
- 9 Traiter le meurtre conjugal et les violences sexuelles comme un fait de société** et non seulement comme des faits divers. Le terme « féminicide », reconnu par l'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et qui désigne le meurtre d'une femme en raison de son genre, porte cette dimension sociale. Il est également pertinent de recontextualiser en rappelant que 219 000 femmes sont victimes chaque année de violences de la part de leur ancien ou actuel conjoint, et que 121 femmes ont été tuées par leur conjoint ou leur ex-conjoint en 2018².
- 10 Ne pas oublier que les mutilations, dont l'excision, sont considérées par les Nations unies** comme une violation des droits des filles et des femmes. Il est recommandé de le rappeler. Lorsqu'on évoque les chirurgies réparatrices des mutilations ou des séquelles liées au viol, éviter l'expression « rendre sa dignité aux femmes », qui comporte un jugement de valeur sur les victimes.
- 11 Intégrer le numéro de téléphone national** de référence pour l'écoute et l'orientation des femmes victimes de toutes violences [3919], dans la mesure du possible.

Prenons la une
Outils actualisés, novembre 2019

1. Enquête « Cadre de vie et sécurité » 2015-2018 / INSEE-ONDRAF
2. Ministère de l'Intéri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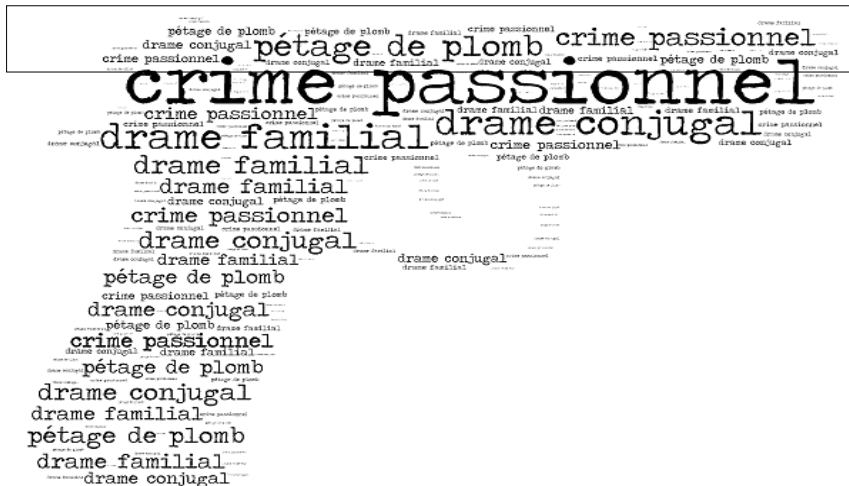
* 사진 출처: <Prenons la une> 인터넷 홈페이지

이는 언론윤리강령처럼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언론인 윤리 구성에서 벗어나, 성범죄 혹은 성차별적 언론보도 행태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같은 조직적 운동과 이에 따른 사회적 논쟁은 실제로 언론계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렌느(Rennes)를 거점으로 프랑스 서부 지방의 대표적인 지역지인 <웨스트 프랑스(Ouest France)>는 에갈리떼(Égalité, 평등)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하여, 성차별적 표현을 피하고 올바른 성범죄 보도를 위한 조직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2. # 레모투(Lesmotstuent) 운동

프르농 라 윈이 여성언론단체로서 프랑스 언론계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면, 앞에서 살펴본 ‘누 투트’는 언론계 외부에서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누 투트의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은 사회관계망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언론의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언론 활동에 대한 외부적 압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하면서도 유의미한 또 다른 조직적 활동으로 ‘# 레모투(Lesmotstuent)’ 운동을 들 수 있다.

[그림 2] # 레모투의 상징 이미지



* 사진 출처: Les mots tuent 인터넷 홈페이지⁹⁾

9) <https://lesmotstuent.tumblr.com/>

레모투 운동은 온라인 저널리스트이자 여성운동가인 소피 구리옹(Sophie Gourion)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언론이 다룸에 있어 사실을 오독하게 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현을 쓸 경우,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한다.¹⁰⁾ ‘레 모 튜(Les mots tuent)’를 직역하면 ‘말이 죽인다(The words kill)’라는 뜻으로 성범죄 관련 보도에서 정당하지 않은 표현을 다룰 경우 이를 공개하며 수정을 요구한다.

그녀는 실용성과 효용성을 이유로 텀블러(Tumblr)에 2016년 3월 첫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2019년 2월까지 350여 개의 언론 기사를 다뤘다고 말했다(LNN, 2019). 이 운동은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반응도 더 즉각적이다. 실제 레모투의 지적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기사를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일종의 해쉬태그 운동이기 때문에,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이를 전파하고 여론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레 모 튜’가 지닌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 제목이나 보도 내용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에 대한 고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언론계 내에서도 이러한 사회조직의 활동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 <프랑스 컬처르(France Culture)>의 한 기사는 “1, 2년 전만 해도 ‘치정 사건’이나 ‘가정의 비극’ 혹은 사실과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을 담은 기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늘날의 인쇄매체, 라디오, 방송 등 언론은 여성 살해 또는 배우자에 의한 살해에 대해 점점 더 적합하게 다루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한다. 물론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사회적 움직임으로써 언론계의 자정 노력으로 누 투트와 # 레모투와 같은 사례를 중요하게 다룬다(Moghaddam, 2020).

3. <르 몽드>의 ‘Féminicides’¹¹⁾와 <리베라시옹>의 ‘Meurtres conjugaux, des vies derrière les chiffres’¹²⁾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프랑스 언론계의 자정 노력으로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매체 중

10) <https://lesmotstuent.tumblr.com/apropos>

11) https://www.lemonde.fr/societe/visuel/2020/06/01/feminicides-mecanique-d-un-crime-annonce_6041403_3224.html

12) <https://www.liberation.fr/apps/2018/02/meurtres-conjugaux-derriere-les-chiffres/>

두 곳인 <르 몽드>와 <리베라시옹>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여성 살해(Féminicide)’와 ‘배우자의 의한 살인, 통계 이면의 삶(Meurtres conjugaux, des vies derrière les chiffres)’ 기획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다룬다.

<르 몽드>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11명의 기자들이 약 201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120건의 여성 살해 사건을 심층취재했다. 이를 토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히 전·현 배우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요인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르 몽드>는 이 주제로 심층기획 보도를 계획한 이유를 상세하게 덧붙인다. 먼저 여성 살해를 다루기로 결정한 2019년 3월에도 이 이슈는 공적인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다. 하지만 2018년 가정 내 살인사건의 15%가 배우자에 의한 여성 살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Phénomène de société)을 다루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배경에서 이 같은 사회 현상을 가시화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며, 이는 여성 살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있어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덧붙였다(Le Monde, 2020).

<리베라시옹>의 문제의식도 이와 일맥 상통한다. <리베라시옹>은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언론에서 다뤄진 배우자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들을 별도의 웹 페이지로 제공한다. 다만, 이 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배우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일어난 이타적 자살(Suicide altruiste) 등과 같은 사례는 제외한다.

<리베라시옹>의 웹 페이지는 2017년 1월부터 월별로 발생한 사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특정 사건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로 넘어가는데, 이 보도는 <리베라시옹> 기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지와 지역지에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상세히 기술하는 기사 링크로 바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르 몽드>의 작업과는 구별된다. <르 몽드>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팀을 꾸려 장기간의 기획 기사를 작성했다면, <리베라시옹>은 여성 살해를 다룬 언론보도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리베라시옹>에서 여성권 담당 기자인 비르지니 발레(Virginie Ballet)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 여성 살해를 가시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 작업의 의미를 강조한다(Moghaddam, 2020).

엄밀히 말해, <르 몽드>와 <리베라시옹>의 작업이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스로 밝히듯, 이 같은 작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꾸준히 그리고 상당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 살해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이 사례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여성 살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관례적으로 이어지던 성차별적인 프랑스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살해와 배우자에 의한 살해를 전면에 내세운 것에서 잘 드러나며, 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련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다시 말해, 프랑스 언론의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기존과는 다른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르 몽드>가 강조했던,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언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성범죄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언론보도 역시 더 큰 신중함과 세심함이 요구된다. 물론 모든 성범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성범죄가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때, 이들이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이유는 해당 사회의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와 역학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성범죄에 대한 보도가 야기하는 논쟁이 단순히 범죄 사실에만 근거하지 않으며, 성적 혹은 계급적, 계층적 논점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더불어 언론이 성범죄를 다룸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 같은 거시적 맥락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까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언론보도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재생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2차 및 3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프랑스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선부른 선정적 보도는 단순한 혐의자 또는 그 지역 공동체에도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씌울 수 있다. 언론의 성범죄 보도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라는 거시와 개인이라는 미시가 세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성범죄 언론보도와 관련한 프랑스의 사례는 여러모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에서 언론의 성범죄는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첨예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 여겨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의사소통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공익과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충돌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때로는 병존하면서, 때로는 대립하는 이 가치들의 충돌이 성범죄 보도를 둘러싼 프랑스 사회의 논쟁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프랑스의 전통에 의해,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수단의 개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언론의 자유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회적 압력과 내부의 움직임이다. 물론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제도적 수단의 공고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역할과 실효성을 알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며, 프랑스 언론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사회적 그리고 언론계의 자율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프랑스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성범죄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 박진우 (2007). 프랑스의 언론법제 :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겨울호, 52-64.
- 오승규 (2007). 프랑스 사법개혁에 관한 법제 정비. <외국법제동향>, 46-48.
- 이성훈 (2014). ‘암묵적 엠바고’ 깬 프랑스 언론. <관훈저널>, 224-230.
- 진민정 (2018). 프랑스 언론법과 최근 입법 동향.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1·2호>.
- 최지선 (2020). [프랑스] ‘언론 신뢰’ 되찾으려 언론사·언론인·시민 모인다. <신문과방송 2020년 01월호 NO. 589> URL: <https://www.kpf.or.kr/front/news/newsPaperDetail.do>
- Alexis Orsini (2015. 5. 19). Affaire Outreau : que sont devenus les acquittés de 2005 ?. *Le Nouvel Observateur*. Retrieved from <https://www.nouvelobs.com/justice/20150519.OBS9183/affaire-outreau-que-sont-devenus-les-acquittes-de-2005.html>
- Bertrand de Lamy (2012). La constitution et la liberté de la presse, *Les Nouveaux Cahiers du Conseilconstitutionnel*, N° 36. 19-29.
- Caroline Politi (2012. 12. 10). Affaire DSK-Diallo : de l’arrestation à l’accord amiable. *L’Express*. Retrieved from https://www.lexpress.fr/actualite/societe/video-affaire-dsk-diallo-de-l-arrestation-a-l-accord-amiable_1197210.html
- Charlotte Causit Noémie Leclercq (2019. 9. 3). Pourquoi le mot “féminicide” fait-il toujours débat ?. *Franceinfo*. Retrieved from https://www.francetvinfo.fr/societe/feminicides/pourquoi-le-mot-feminicide-fait-il-toujours-debat_3599073.html
- Dominique Raizon (2006. 3. 15). Affaire d’Outreau : Les journalistes face à la commission parlementaire. *RFI*. Retrieved from http://www1.rfi.fr/actu/fr/articles/075/article_42491.asp
- Emeline Cazi (2011. 10. 13). La plainte de Tristane Banon contre Dominique Strauss-Kahn classée sans suite. *Le Monde*.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dsk/article/2011/10/13/la-plainte-de-tristane-banon-contre-dsk-pour-tentative-de-viol-classee-sans-suite_1587468_1522571.html
- Florence Aubenas (2005. 12. 6). François Mourmand, un fantôme sur les ruines d’Outreau. *Libé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liberation.fr/societe/>

- 2005/12/06/francois-mourmand-un-fantome-sur-les-ruines-d-outreau_540827
- Fiona Moghaddam (2016. 3. 5). Dans les médias, une (r)évolution du langage sur les violences sexistes et sexuelles. *France Culture*. Retrieved from <https://www.franceculture.fr/emissions/le-reportage-de-la-redaction/dans-les-medias-une-revolution-du-langage-sur-les-violences-sexistes-et-sexuelles>
- INED (2016). Enquête cirage : viols et agressions sexuelles en France - Premiers résultats. Retrieved from <https://www.egalite-femmes-hommes.gouv.fr/publications/droits-des-femmes/lutte-contre-les-violences/premiers-resultats-de-lenquete-virage-violences-et-rapports-de-genre/>
- Jean-Yves Dupeux (2012). La réouverture des actions de la loi de 1881. *Legicom, N° 48*, 129-135.
- Jim Dwyer & William K. Rashbaum, John Elignon (2011. 6. 30). Strauss-Kahn Prosecution Said to Be Near Collaps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1/07/01/nyregion/strauss-kahn-case-seen-as-in-jeopardy.html>
- Julien Licourt (2018. 8. 24). Outreau, le séisme qui aurait dû bouleverser la justice. *Le Figaro*. Retrieved from <https://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8/08/24/01016-20180824ARTFIG00008-outreau-le-seisme-qui-aurait-du-bouleverser-la-justice.php>
- Assemblée nationale (2006). La commission d'enquête chargée de rechercher les causes des dysfonctionnements de la justice dans l'affaire dite d'Outreau et de formuler des propositions pour éviter leur renouvellement.
- Le Point (2015. 5. 27). Le quatrième et dernier condamné d'Outreau disculpe lui aussi Daniel Legrand. Retrieved from https://www.lepoint.fr/societe/le-quatrieme-et-dernier-condamne-d-outreau-disculpe-lui-aussi-daniel-legrand-27-05-2015-1931609_23.php
- Le Monde (2005. 12. 5). Les acquittés d'Outreau reçoivent des excuses de Jacques Chirac.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05/12/05/les-acquittes-d-outreau-recoivent-les-excuses-de-jacques-chirac_717845_3224.html
- Le Monde (2011. 7. 11). La chronologie de l'affaire DSK.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dsk/article/2011/07/01/le-film-de-l-affaire-strauss->

- kahn_1543285_1522571.html
- Le Monde (2020. 6. 20). Une année d'enquête sur les féminicides racontée par les journalistes du Monde.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0/06/02/une-annee-d-enquete-sur-les-feminicides-racontee-par-les-journalistes-du-monde_6041497_3224.html
- LNN (2019. 2. 18). #Lesmotstuent : 350 articles épinglés et un début de questionnement dans les médias. Retrieved from <https://www.lesnouvellesnews.fr/lesmotstuent-350-articles-epingles-et-un-debut-de-questionnement-dans-les-medias/>
- Lorraine Millot (2011. 5. 23). Piroska Nagy, le premier écart médiatisé de DSK. *Libé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liberation.fr/france/2011/05/23/piroska-nagy-le-premier-ecart-mediatisé-de-dsk_737557
- Léonore Le Caisne (2016). Quand dire, c'est faire taire. *La Découverte N° 196*, 207-234.
- Marion Thorin (2019. 10. 20). Affaire Dutroux : marche noire organisé à Bruxelles ce dimanche. *Ouest France*. Retrieved from <https://www.ouest-france.fr/societe/justice/affaire-dutroux-marche-noire-organisee-bruxelles-ce-dimanche-6569314>
- Pascal Galinier & Acacio Pereira (2006. 2. 1). Outreau, de la tempête médiatique au naufrage judiciaire. *Le Monde*.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05/12/03/outreau-de-la-tempete-mediatique-au-naufage-judiciaire_717152_3236.html
- Prenons la Une (2014. 3. 2). Femmes à la une. *Libé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liberation.fr/ecrans/2014/03/02/femmes-a-la-une_983970
- Pierre de Montalivet (2012). Les droits et libertés constitutionnels invocables en matière de communication. *Legicom, N° 48*, 5-11.
- Raphaël Stainville (2012. 3. 3). Sese, mensonges et médias, retour sur l'affaire DSK. *Le Figaro*. Retrieved from <https://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2/03/01/01016-20120301ARTFIG00801-sexe-mensonges-et-medias.php>
- 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 (1918). Charte d'éthique professionnelle des journalistes.
- WHO (2012). Comprendre et lutter contre la violence à l'égard des femmes.

Yves Clarisse (2011. 3. 18). L'omerta médiatique française sur la vie privée en sursis. *Reuters*. Retrieved from <https://fr.reuters.com/article/topNews/idFRPAE74G0M220110517>

I. 첫머리에

호주의 성범죄는 2011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수는 26,312 명이였다(ABS, 2019). 여성 5명 중 1명은 15세 이후에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17명 중 1명은 15세 이전에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해마다 악화일로에 있다. 호주 아동이 겪는 성폭력은 훨씬 더 심각하다. 여아의 경우 3명 중 1명이, 그리고 남아의 경우는 6명 중 1명이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바(ABS, 2017), 2005년 기준으로 전체 호주 인구 중 130만 명이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희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취해진 법적 조치 비율이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39%에 불과하다(ABC, 28 January 2020).

이 글에서는 호주 언론의 성범죄 보도 행태를 알아보고, 성범죄 보도와 관련된 법규, 특히 성범죄 보도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검토한 후,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기되는 이슈들을 다룬다. 끝으로 성범죄 보도에 관한 자율규제와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호주 언론의 성범죄 보도유형: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보도

호주에서 성범죄, 특히 성폭력은 성공적인 기소가 가장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다. 성범죄의 20~25%만이 경찰에 신고되고, 전체 성폭력 사건 중 80%는 사법제도의 무관심 지대에 있다(ABC, 2 September 2016). 호주 언론의 성범죄 보도는 피해자에 대한 불명확한 보도가 많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우선은 성범죄 가해자가 '낮선 사람'임을 암암

* 시드니대 언론학 교수, ki-sung.kwak@sydney.edu.au

리에 강조하고 있다. 2010년 기준,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신고 건수 중 75%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성폭행 관련 기사는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다(Morgan & Politoff, 2012). 달리 말하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 관련 기사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형적인 보도 행태를 보면, ‘낯선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성폭행을 보도하면서도,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현재 혹은 과거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 행태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것이라고 쉽게 단정짓고, ‘성범죄와 낯선 사람의 위험성’이라는 연결 프레임 하에 성폭행 가해자는 낯선 사람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그릇된 관념은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안전보다는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안전에만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Morgan & Politoff, 2012).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그릇된 보도 행태는 ‘피해자 탓하기(victim blaming)’이다. 이런 보도는 전형적인 언론보도 행태로 성폭행을 ‘피해자 탓’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성폭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이런 보도 행태는 가해자의 범행을 희석시키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런 ‘피해자 탓하기’는 일종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ABC, 2 September 2016), 남자가 저지른 성폭행에 대한 책임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한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든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식이다. 이런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언론보도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본인의 충격적인 경험을 밝히는 것은 물론,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도 꺼려하게 만들 수 있다. 근거 없는 ‘피해자 탓’ 프레임은 성폭행이 만연한 현실을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Hartnell, 2017). 성폭행의 근본적인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그릇된 보도 행태는 성범죄를 코믹하고, 유머스럽게, 혹은 사소하다거나, 심지어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 행태는 가해자에 중점을 두지 않고, 마치 가해자를 대신하여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

기도 한다. 이런 선정적인 보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성범죄 보도에 농담조의 말이 포함된다면, 이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Morgan & Politoff, 2012).

호주 언론의 성폭력 보도방식이 비난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성차별화된(gendered) 성폭력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중요한 사회적 이슈(성폭력의 위험성과 만연성,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법 등)로 인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real rape’에 대한 고정 관념, 즉 “전형적인 성폭행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과격한 폭력이 수반된다(Estrich, 1986)”는 전형적인 성범죄 유형에서 벗어나 있는 사건은 성폭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의식을 심어왔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호주 언론이 이런 고정 관념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보도에만 중점을 두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한 바 있다(ANROWS, 2015; Morgan & Politoff, 2012).

III. 성범죄 보도 관련 법규와 적용범위

호주의 성범죄 관련 법규는 연방법인 범죄법(Crimes Act 2000) 등에 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언론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는 각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언론 공개 금지’를 규정하는 법은 성범죄 관련 언론공개 금지의 대상과 범위, 조건 그리고 예외 조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표 1).

〈표 1〉 호주의 성범죄 보도 공개 관련 법규 및 내용

관할주 ¹⁾	규정내용	예외	관련 법규
ACT	- 고소/고발인의 실명, 주거지, 직장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됨	- 고소/고발인의 동의가 있을 시 보도가 가능(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함)	Evidence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9, s. 40.
NSW	- 소송이 완료된 후에도 고소/고발인의 신원이 공개되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허락이 있을 경우 - 14세 이상의 고소/고발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법적 조언 요망) - 16세 이하의 고소/고발인에 대해 법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도 가능	Crimes Act 1900, s. 578A; Children (Criminal Proceedings) Act 1987, s. 15A.

관할주 ¹⁾	규정내용	예외	관련 법규
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고발인의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밝혀져서는 안 됨 - 피의자의 신원은 재판여부 실질검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됨 - 고소인과 피의자의 실명, 주소, 출신학교, 직장 언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허가 시 허용 	Sexual Offences (Evidence and Procedure) Act 1983, ss. 6, 7, 11(2)
Q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고발인의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됨 - 피의자 신원은 재판여부 실질검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됨 - 고소인과 피의자의 실명, 주소, 출신학교, 직장 언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허가 시 허용 - 피의자에 대한 신원보호는 아래의 경우에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강간 b) 강간 미수 c) 강간 치사 d) 그 외에 형법 352.1 항이 규정하는 범죄 	Criminal Law (Sexual Offences) Act 1978, ss. 6, 7.
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 될 때까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 됨 - 고소/고발인의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됨 - 처음부터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려진 사건을 초기단계부터 보도했다면, 해당사건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보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의 동의 하에 재판여부 실질검사 전에 보고서 작성 가능 -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있거나 (아동이 관련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고소/고발인의 신원을 밝힐 수 있음 	Evidence Act 1929, ss. 71A, 71B
T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을 제외한 고소/고발인/증인의 신원은 사망시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됨 - 고소인 혹은 증인과 연관되었다는 취지의 사진도 공개되어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신원보도 허용 가능 	Evidence Act 2001, s. 194K.
V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고발인의 신원은 소송절차가 미결이라도 공개되어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이 미결인 경우 - 법원이나 고소인의 동의를 있을 경우 - 경찰에 범죄로 고발되지 않았을 경우 공개가능 	Judicial Proceedings Reports Act 1958, s. 4.
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고발인의 신원은 공개되어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고발인의 서면 허락이 있을 경우에 공개 할 수 있는데, 고소인은 18세이상이어야 하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 	Evidence Act 1906, s. 36c.

출처 : <https://journlaw.com/2014/08/13/sexual-offences-publishing-restrictions-in-australia-a-guide-for-journalists/>

1) 호주는 총 8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SW(New South Wales), NT(Northern Territory), QLD(Queensland), SA(South Australia), TAS(Tasmania), VIC (Victoria), WA(Western Australia). 엄밀히 말하자면, ACT와 NT는 테리토리(Territory)로 연방정부 승인 하에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6개의 다른 주(State) 들은 연방정부 승인 없이도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모두 '주'로 다룬다.

아동 대상 성범죄 보도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정되는데 재판의 공개 여부, 그리고 언론의 재판 참관과 재판보도 등에 있어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표 2). 타스마니아 주처럼 법원의 허락 없이 언론이 재판을 참관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언론의 재판 참여와 재판에 관한 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신상공개 역시 언급이 불가한 지역이 다수이나, 북호주 주처럼 아예 제한이 없는 곳도 있으며 조건부로 허용되는 지역도 있다.

〈표 2〉 아동대상 범죄재판 보도 시 규정사항

관할주	규정내용	예외 조항	관련 법규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보도 가능 - 아동 신상 공개: 불가 - 가족단위의 미팅: 보도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Criminal Code 2002, s. 712A.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 s. 77.
N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재판참여 및 보도가능 - 아동신원 공개: 언급 불가 - 피해자 아동은 물론 희생자나 증인 신분으로 사건에 관여된 아동들의 신원 언급 혹은 보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16세 이상의 청소년일 경우에 신원공개 허용 가능 - 관련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성인 직계친족이 신원공개 허용 가능 	Children (Criminal Proceedings) Act 1987, s. 15A; Children and Young Persons(Care and Protection) Act 1998, ss. 104 and 105; Young Offenders Act 1997, s. 65.
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재판참여 및 보도 허용 - 아동신원 공개: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는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정보 공개 금지를 명령할 수 있음 	Youth Justice Act 2005, ss. 49, 50.
Q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불가 - 아동신원 공개: 언급 불가 - 가해자 아동의 신원은 법원 허가 없이 공개 불가 - 성범죄 사건의 증인아동 신원은 공개 불가 - 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 사회에 해를 끼칠 소지가 있거나 위험한 아동의 신원: 공개 금지 - 구금된 상태이거나, 법적 후견인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의 신원: 공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는 극악 범죄일 경우 신원 공개 및 언론보도 허용 가능 - 피해자 아동은 성년이 된 이후, 공개될 정보의 본질, 언론수용자, 그리고 공개 이유를 잘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 자신의 신원공개 동의 가능 	Youth Justice Act 1992, ss. 234, 301. Child Protection Act 1999, ss. 189, 192, 193.

관할주	규정내용	예외 조항	관련 법규
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뉴스 미디어의 재판 참관 및 보도 허용 - 아동신원 공개: 피해자 아동은 물론 희생자나 증인 신분으로 사건에 관여된 아동들의 신상(이름, 주소, 재학 중인 학교)을 공개할 수 없음 - 다큐멘터리 형태의 언론 보도는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언론보도나 신상공개 일부 허용 가능 	Youth Court Act 1993, s. 24; Young Offenders Children's Protection Act 1993, s. 59, Children's Protection Act 1993, s. 13; 59A.
T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법원의 허락 없이 불가 - 언론의 재판 참관 불가 - 아동신원 공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허용 여부는 법원의 재량권에 따름 	Youth Justice Act 1997, ss. 30, 31; Magistrates Court (Children's Division) Act 1998, ss. 11, 12.
V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공개 재판이며, 언론의 재판보도가 허용되나, 재판장소 공개 불가 - 피해자 및 증인의 특이사항 (성별, 실명, 가명, 거주 지역, 주소, 직장, 재학 중인 학교, 외모, 옷 스타일, 직업, 다른 공개된 사람과의 관계, 관심사, 실물, 개인 재산 등) 공개 불가 - 사진 공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허용 여부는 법원의 재량권에 따름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2005, ss. 523, 534.
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허용 - 아동신원 공개: 사건에 관여된 모든 아동의 신상공개 금지 - 보호적용대상이거나 보호명령대상인 아동의 신상공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특정인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아동의 신상공개를 허락할 수 있음 	Children's Court of Western Australia Act 1988, ss. 31, 35, 36, 36A. Children and Community Services Act 2004, s. 234

출처: <https://journlaw.com/2014/08/21/court-restrictions-on-identifying-children-in-australia-a-guide-for-journalists/>

IV. 성범죄 보도 관련 주요 사례

1. Doe vs.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01년 3월 제인 도우(Jane Doe)는 당시 별거 중이었던 남편(YZ)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 발생 1년 후, YZ는 강간 및 그 밖의 다른 범죄로 빅토리아 주 수도 멜번의 한 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Doe는 성폭력을 당한 큰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었다. 이런 증상이 만성적이긴 했으나, Doe는 재판 전까지만 해도 집 밖에서 친구도 만나고, 짧은 기간 동안이긴 했지만 직장도 다녔다.

YZ의 형이 확정된 2002년 3월 21일 호주 공영방송사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는 오후 4시, 5시, 6시 라디오 뉴스를 통해 YZ의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4시 뉴스와 6시 뉴스에서 YZ의 실명이 공개되었고, 합법적인 부부 관계 상태에서 행해진 성폭행이라며 범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동 뉴스는 또한 범행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설명하였다. 5시 뉴스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보 외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그녀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도했다. 피해자 Doe는 성폭행을 당한 후, 결혼 전의 성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ABC> 뉴스에서 이 원래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다.

<ABC>의 보도는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공개를 금지하는 재판 관련 보도법 (judicial proceedings Reports Act 1958)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해당 뉴스보도의 관련자들은 유죄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하는 서면 편지에 서명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와 뉴스 프로그램의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차장, 이들의 고용주인 <ABC>를 성폭행 피해자 신상공개를 금지하는 재판 관련 보도법(Judicial Proceedings Reports Act 1958, s4 (1A))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 관련 보도법 4 (1A)항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이나 범죄법 (Crimes Act 1958 35조)이 명시하는 성적 관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하려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범죄의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 Doe는 <ABC> 방송보도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배상의 근거로 다음 4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즉, 법정 의무 위반(breach of statutory duty), <ABC>의 부주의한 신상 공개로 인해 원고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를 방조한 의무 불이행(breach of a duty of care), 비밀 누설(breach of confidentiality), 그리고 프라이버시 위반(breach of privacy)이다.

<ABC>는 이 모든 혐의를 반박했다. 첫째는 피해보상법(Wrongs Act 1958) s.4조에 의거하여, 언론은 법정재판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보도함에 있어 ‘보도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피해보상법 s.4조는 “사법재판소, 법적으로 구성된 법원, 혹은 법이 정하는 조사위원회의 재판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을 막는 행위나 제재를 금지한다. 단, 음란하고 모욕적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내용, 혹은 판사나 재판관이 언론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내용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갖는 보도특권에 대해 원고가 <ABC>를 소송한 것은 잘못이라 주장했다. 또한, 설사 위의 법 조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지는 못할 지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소 항목은 4가지의 근거 항목보다는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ABC>는 원고가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방송된 이후 입은 피해 손상 역시 ‘명예훼손’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여러 가지 의무 위반 사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원고가 제3자인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ABC> 뉴스 방송의 정보 전달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배상의 근거는 ‘명예훼손’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ABC>뉴스에서 재판이 완료된 후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재판 관련 보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재판은 누구라도 법정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신상은 이미 그 때에 다 노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실명 역시, 원고가 다수(14명)의 친지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대화를 나누었던 다수의 친지와 친구는 원고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믿음 하에 원고의 이야기를 비밀로 해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감이 있었던 바, <A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BC>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본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정보가 공개된 후 명예훼손을 입었고 그 때문에 피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관련 보도법(s.4 (1A))이 그런 정보 공개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BC>가 원고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 배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원고가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원고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본인이 입은 피해 때문이라고 보았다. 재판을 맡았던 햄펠(Hempel J) 판사는 본 사건이 ‘명예훼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배상 근거 요소에 대한 판결 내용을 밝히고 있다(Country Court of Victoria, 2007).

(1) 의무 불이행(Breach of duty of care)

공영방송의 법정 기능은 뉴스 보도 시 기자와 편집 담당자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바, 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에 위반되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강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성폭력의 본질과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그리고 피해자 신상공개는 법적 금지사항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다.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은 언론의 ‘의무 불이행’을 사회의 일반 구성원에게 적용한 것으로 성폭행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보도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Greenleaf, 2007). 엄격히 말하면, 의무 불이행 여부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불법행위 혐의자가 저지른 활동의 본질, 그리고 피해자가 입을 피해의 본질 등을 고려해야 된다. 즉, 원고가 입을 정신적 충격은 <ABC>와 청취자 간의 관계에 관한 의무 여부가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ABC>와 법이 보장하는 정보 공개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피해자 간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본 것이다.

(2) 비밀 누설(Breach of Confidence)

법원은 <ABC>가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비밀을 누설한 불신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는데 있어,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정보의 성격, <ABC>가 정보를 입수하게 된 정황, 그리고 재판 관련 보도법이 갖는 효력이 그것이다(Country Court of Victoria, 2007).

성폭력 관련 정보는 사적인 정보임이 분명하다. <ABC>는 관련 정보를 가해자인 YZ 재판 당시 판사의 발언과 판결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재판 관련 보도법상 보도 금지 대상 정보는 사적인 성격의 정보임이 명확하므로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요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성폭행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고 해서 이것이 공적 정보를 의미하진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 관련 조사와 기소에 가담했던 경찰과 의료요원 등도 원고가 '신뢰하는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Butler, 2007). 따라서, 원고가 관련 정보를 가까운 친구와 친지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바, <ABC>의 정보 공개는 원고의 기대에 반하는 비밀을 누설한 불신 행위로 본 것이다.

(3) 프라이버시 위반(breach of privacy)

법원은 <ABC>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ABC>가 공개했던 개인정보는 사적인 성격의 정보였고, 관련법상 공개 금지된 정보이며 또한 '공익을 위한' 정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공개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사적인 성격의 정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과 영국에서 사생활 관련 재판에서 흔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와의 연계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비밀유지 의무'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문제의 관련 정보가 비밀 정보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 하에,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본질은 '비밀'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즉, 공개재판을 통해 정보가 이미 알려졌더라도 재판 관련 보도법에 의거하여 그 정보는 '비밀'로 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Carroll & Bennett, 2007).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배상 근거를 전부 받아들여, <ABC>는 고소인에게 234,190 호주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언론이 정보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하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사건 관련 언론인들이 이미 죄를 인정하고 서면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그들에게 과해질 법적 책임을 경감해서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감해주기보다는, 재판부는 이런 서면 사과를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호주 언론 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는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공공정책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하였다(APC, 2007 May). 또한, 언론의 주 관심사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의 여지가 있는 이슈(예를 들면, 사생활이나 인격권)에 대해서 법규에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의 유화적인 접근방식이 피

고에 대한 피해를 경감시키게끔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APC, 2007 May).

2. 피해자의 말할 권리 관련 사례

최근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관련해서 피해자의 '말할 권리'가 호주의 일부 주에서 제기되고 있다. 타스마니아와 북호주(Nothern Territory) 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언론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 본인이 언론을 통해 피해자라고 밝히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과 사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의 주된 목적이지만, 피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조치나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 타스마니아주

1) 그레이스 테임(Grace Tame) 사례

2010년 그레이스 테임(Grace Tame)은 타스마니아(Tasmania)주 수도인 호바트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이었다. 2010년 중반 당시 그레이스가 다니던 학교의 수학 선생이었던 니콜라스 베스터(Nicholaas Bester)는 당시 15살이었던 그레이스를 학교 내의 과학실로 불러 성희롱하는 것을 시작으로, 6개월에 걸쳐 학교와 호텔, 심지어는 친구의 집에서도 그레이스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베스터는 그레이스로 하여금 가족을 멀리하고 자신만을 믿도록 세뇌시켜 가며 협박을 일삼았다.

2011년 경찰이 베스터를 체포할 당시, 그가 소유했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베스터는 '아동과의 성관계' 및 '아동 성학대 사진 소유'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고, '불륜관계' 등의 여러 추측성 기사들도 나왔다. 베스터는 이 사건으로 2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19개월을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15년 베스터는 자신이 저질렀던 성폭행을 자랑삼아 공개했다. "호주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 "나는 59살이었고 그 아이는 15살이었는데 굉장했다

(ABC, 12 August 2019)”며 페이스북을 통해 떠벌린 것이다. 게다가 성폭행 당시의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베스터는 4개월을 더 수감하게 된다. 두 번씩이나 수감이 되었음에도, 베스터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성 치료전문가인 베티나 아른트(Bettina Arndt)는 베스터와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그레이스의 실명을 밝혔고, 사진도 올렸다. 이 인터뷰에서 베스터는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잃었고, 37년 간의 결혼생활, 아이들,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걸 잃었다(ABC, 12 August 2019)”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동정심을 유발하며 자신의 범죄를 희석하려 했다. 더구나, 이 인터뷰에서 치료전문가 베티나는 베스터가 젊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걸 잃게 되었다며 베스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즉, “남자 선생님들은 성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여학생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이 거부당했다거나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면 심지어 거짓 고소도 할 수 있다(cited in Funnel, 2019b)”라고 말하여 마치 베스터가 피해자고 그레이스가 공격적으로 유혹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언론으로 간주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문제의 인터뷰에서는 피해자 의견은 전혀 없고, 심지어 관련 재판에 참석한 적도 없는 베티나가 인터뷰 진행 중 그레이스의 실명과 그레이스의 페이스북에 있는 그녀의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유튜브가 방송된 후, 베티나는 피해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해당 유튜브는 방송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 비디오는 삭제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2020년 1월 베티나가 호주 정부에서 수여하는 Australian Order 훈장 수여자 후보로 발표되었다. 당시, 빅토리아주 수상 등 전국의 저명인사들은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을 호주 총독(Governor General)에 올렸다. 그레이스 역시 이 청원에 동참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청원에도 불구하고 베티나는 훈장을 수여받게 된다.

이를 보다 못한 그레이스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타스마니아주 법이 걸림돌이었다. 그레이스는 니나 퍼넬(Nina Funnell)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데, 니나는 성폭행 피해자이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면서 성폭행과 관련된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보호와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반(反) 성폭행

지지자이다. 나나는 그레이스와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개정하고자 #LetHerSpeak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데, 이 캠페인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수많은 저명인사들과 #MeToo 캠페인 관련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타스마니아 주 법무장관은 2019년 말 기존 증거법 194k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 4월 마침내 개정법은 발효되었다.

2) 자넬 오코너(Janelle O'Connor) 사례

1993년 12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자넬 오코너(Janelle O'Connor)는 타스마니아 주의 작은 도시인 Burnie에 있는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친구인 Glen, 그리고 3명의 낯선 사람들과 파티에 가던 중, 당시 29세의 Geoffrey Haywood이 주도하여 자넬을 집단성폭행하였다. 이미 살인 등 전과가 많았던 Haywood 등은 1995년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자넬이 겪은 이 사건은 법원 밖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0대의 피해자가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3차례에 걸친 재판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런 힘든 경험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조차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25년이 지난 2019년, 가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성폭행 피해자로서 내 이름으로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현실은 분명 부당하다. 내 이름도, 내 얼굴도 없으면 내 이야기가 아니다(cited in Funnell, 2020a)”며, 자넬은 자신이 직접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자넬은 또한 본인이 겪은 일을 회고록으로 출판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판사가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해야 했다. 실제로 2012년 타스마니아주의 한 신문사가 성폭행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실명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신문사는 즉시 기소되어 결국 2만 불의 벌금을 내야 했다(Funnell, 2019a).

문제가 되어 온 증거법(Evidence Act 2001 194k조)에 따르면, 설사 피해자가 공개 당시 성인이고 또한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 명령 없이 성범죄 재판에 연루된 피해자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기존의 증거법 194k조의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정 심리와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 없이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기록 문서, 유·무선 텔레비전을 통해 아래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㉔ 이름, 주소, 혹은 아래의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그 밖의 참고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i) 형법상 적용되는 성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ii) 경찰 범죄법상 성행위법 행위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iii) 상기 i), ii)항 관련 재판과 관련된 (피고인을 제외한) 증인이나 증인 예정자

㉕ 상기 언급된 인물들이라 추정될 수 있는 사진

② 법원은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상기 항에 의거해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③ 법원은 특정 조건에 따라, 상기 항에 의거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본 조항을 위반하여 위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게끔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은 ‘법정 모욕’ 대상자로 분류되고, 그런 행위는 법원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

주요 골자는 성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증인 혹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법원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법정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정보 공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전제 조건을 강제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과 사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봤듯이, 성폭행 가해자는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자랑인 양 밝히거나 심지어는 희석시키려는 시도까지 하는 반면, 피해 당사자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한다는 불합리한 사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왔다.

이를 인지하여, 타스마니아 주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끔 기존 증거법 194k조를 개정하였고, 이 개정법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Evidence Amendment Bill 2020). 기존의 증거법은 성범죄 재판 진행 중에 법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상 공개

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원의 명령 없이도 언론이 피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경우, 이로 인해 공개를 원치 않거나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개정법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재판에 연루된 증인이 피해자의 신원과 연관될 수 있는 친지이거나 친구일 경우에도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협박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법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1990년대의 Burnie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구 1만 여명의 소도시에서 가십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소도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정작 피해자의 신상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2) 북호주주

1) 라비니아 두가(Lavinia Duga) 사례

2017년 10월 5일 퀸즈랜드(Queensland)주에 살고 있던 라비니아 두가(Lavinia Duga)는 출장 차, 북호주의 수도인 다윈(Darwin)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다윈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던 YZ는 라비니아에게 시내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YZ는 교회를 통해 알게 된 라비니아 가족과는 잘 아는 가족의 일원이었기에, 라비니아는 그를 믿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틀 동안 시내 관광을 한 후, YZ는 다윈 교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수영할 만한 장소로 가는 길에 친구들을 데리러 간다고 하며 군인 막사로 라비니아를 데려갔다. 그러나, 막사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은 없었고 라비니아는 그 곳에서 YZ로부터 성폭행을 당한다. 라비니아는 분명하게 'No'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YZ는 멈추지 않았다. 성폭행을 당한 다음 날, 라비니아는 퀸즈랜드 집으로 돌아왔고 수 주 동안 고민 끝에 11월 다윈경찰청에 신고하려 했으나, 다윈경찰청의 권고에 따라 퀸즈랜드주에 있는 경찰서에 성폭행을 신고했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YZ는 라비니아가 'No'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신이 멈추질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No'라는 의사를 가볍게 받아들였고, 라비니아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YZ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라비니아는 YZ가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를 것을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몇 달 후 현실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YZ는 라비니아에게 저지른 유사한 수법으로 타 주에서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2019년 YZ는 라비니아에게 범한 성폭행과 그 이후 또 다른 여성에게 범한 유사 성폭행 두 개의 사건을 같은 혐의로 다루는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판사는 두 사건의 배경과 정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초기 범행 후, 몇 달 되지 않아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YZ는 검사와의 타협을 통해 한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9년 말, 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실의에 빠져있던 라비니아는 언론을 통해 YZ의 범죄를 막고자 했다. 라비니아는 언론을 통해 본인이 겪은 이야기와 현 사법제도가 성폭행 피해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자 했다. 하지만 북호주법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당사자의 실명공개 동의가 있더라도, 언론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Funnel, 2020b). 이 뿐만 아니라, 라비니아는 현행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고, YZ이 왜 무혐의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권리가 없었다. “마치 나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같다(cited in Funnel, 2020b)”던 라비니아는 2019년 #LetHerSpeak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말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은 북호주(Northern Territory)주에서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성범죄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언론을 통해 출판·진술 혹은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2) 동의 당시에 성인이어야 하고, (3) 출판·진술, 발표할 내용 중 본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포함될 경우 그들의 동의 없이 신상을 밝혀서는 안 된다(Legislative Assembly of the Northern Territory, 2020).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자신의 관점에서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의 무기력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더 악화시키거나 재발시킬 수 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당한 성폭행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Funnell, cited in ABC, 22 October 2019).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의 원인 및 결과 등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호주 입법심의 위원회는 피해자의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 현행법(Evidence Act)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2019년 말 개정 권고안 Sexual Offences(Evidence and Procedure) Amendment Bill 2019을 제출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피해자의 공개 시점’이었다. 피해자 자신에 의한 언론 공개는 기본적으로 재판이(재심이나 항소 등 포함)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사법적 결정에 따라 재심이나 항소 진행 중에도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Legislative Assembly of the Northern Territory, 2020). 이 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피해자의 이야기에 대한 공개 여부와 공개 시점은 법원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정해야 한다. 피해자들 중 다수가 본인의 이야기하기를 꺼리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이 원할 때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Funnell cited in Timebase, 6 December 2019).

하지만, 2020년 6월 개정안을 검토한 북호주 법무부장관 나타샤 파일스(Natasha Fyles)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판 종결 전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유지에도 위험이 따를 수가 있고 자신도 모르게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Daily Hansard, 24 June 2020). 사실상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피해자(원고)는 자신에 관한 신상공개와 정보공개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법원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호주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언론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권리 간의 균형잡기라는 중요 사안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침내 2020년 중반, 북호주주는 개정법을 발효하게 되었다. 라비니아는 북호주주에서 개정법 하에 최초로 성폭행 피해자로서 말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3. 가해자 신상보호 관련 사례

(1) 데런 힌치(Darryn Hinch) 사례

데런 힌치(Darryn Hinch)는 호주의 유명 방송인으로 오랫동안 아동 학대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을 통해 그는 소아성애(paedophile) 혐의자 및 피의자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여러 차례 범법 혐의를 받게 된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그는 ‘법정 모독죄’로 고소 당하거나 혹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빅토리아주 대법원 판결 시 판사가 “힌치는 법 위에 균립하려 한다(Masters, 2011:198)”고 할 정도로 힌치는 아동 학대, 특히 성적 학대에 대한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고 실제로 호주 사회에서 그의 인지도와 영향력은 이 이슈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넣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1985년, 힌치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아성애자 관련 재판을 맡고 있던 담당 판사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금지 대상이었다. 그 이듬 해 역시, 라디오 프롤을 통해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카톨릭 신부의 과거 성범죄 내력을 자세히 밝힌 바 있다. 1994년에는 자신이 진행하는 <채널 10>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8세 아동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힌치는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 부모의 ‘동의’ 하에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그 ‘동의’가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피해자의 신상은 힌치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내용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5년, 빅토리아주의 성범죄자 감시법(Serious Sex Offenders Act 2005) 시행과 함께 범법자를 감시함에 있어 빅토리아주 대법원의 ‘보호관찰 명령권’이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 법원의 명령권은 ‘공익’ 여부에 따라 발효되며, 범법자의 가석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들의 갱생 과정을 추적,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동법 s42조는 또한, 법원이 범죄자의 신상공개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열린 다수의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빅토리아주 지법은 동법에 의거하여 신상 공개 금지 명령권을 발동했는데, 힌치는 이런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금지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에 소환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치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전통 미디어뿐만 아니라 본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개금지 대상 인물

의 실명 등 신상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올렸다. 결국, 힌치는 s42조 관련 항목의 위헌성 여부를 묻고자 대법원에 항소했다. 힌치는 관련 항목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점 하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① 호주 헌법 3장이 부여하는 묵시적 자유를 위반하여 빅토리아 법원이 사법권의 '제도적 결집력'을 저해하고,
- ② 호주 헌법 3장은 모든 주의 연방법원은 '일반에 공개되고 법원의 활동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42조는 이런 공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동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political communication)의 자유를 제한한다.

힌치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원은 s42조가 규정하는 사법권은 연방법과 주 정부법 간의 엄격한 사법적 적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High Court of Australia, 2011 [80]) 사법권의 '제도적 결집력'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두 번째 제기 이유에 대해 헌법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종의 보조 기능인 법원의 특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 재판 원칙은 절대적일 수 없고, 주 의회도 공개 재판 원칙의 예외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High Court of Australia, 2011 [90]). 그러나, 법원이 재판을 비공개로 하거나 혹은 재판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공개 재판 원칙을 가급적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High Court of Australia, 2011 [27]). 따라서, s42조는 법정의 본질적인 특성, 즉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힌치가 제기한 세 번째 이유에 대해 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법이 규정하는 모든 제한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며, 법원의 사법권 행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정치 커뮤니케이션과는 별개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법원의 이런 주장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판결(Trindade & Condello, 2017)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번 재판에서 힌치 측 변호인은 힌치가 피의자의 이름만 밝혔을 뿐, 피의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주소, 직장, 신체적 특징 등)는 공개하지 않았던 바, 이를 신상공개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신상공개'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언론이나 언론인이 아동 성학대 가해자 및 피의자의 실명을

밝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가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있는 법원의 공개 금지 권한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 조지 펠(George Pell) 사례

조지 펠(George Pell) 신부는 1996년 존폴 II 교황(Pope John Paul II)으로부터 멜번 교구 대주교로 임명된 후, 멜번 소재의 세인트 패트릭(Saint Patrick) 성당에서 재직하다가 2003년에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2014년에는 프란시스 교황(Pope Francis)에 의해 펠 대주교는 바티칸 교황청의 재정 책임직인 경제 사무국장(Secretariat of the Economy)으로 임명되어 아동 성범죄사건 재판 전까지 바티칸에서 재직 중이었다.

펠 신부의 아동 성범죄 연관성에 대한 의심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있었다. 2002년 펠 신부는 국가 전문직 윤리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Professional Standards)에 의해 아동 성희롱 죄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는데, 고발 이유는 1961년 당시 20세의 신학생이었던 펠이 당시 12세였던 아동을 성추행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했던 대법원 판사는 고발인의 진술이 진실되지만 ‘범죄’로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The Guardian, 26 February 2019).

2012년 빅토리아 주의회는 아동 성폭행/추행 관련 가해자를 고발할 목적으로 ‘종교 집단 및 그 밖의 집단의 아동 성폭행/성추행 처리 위원회’를 구성했고, 빅토리아 주경찰청은 펠 추기경이 공개되지 않은 중범죄에 관여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2015년 6월 빅토리아주 경찰은 1990년대 말 펠 신부가 멜번 소재의 세인트 패트릭(Saint Patrick) 성당에서 재직 당시 아동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제보를 입수했고, 그 이듬해에는 공개 어필을 통해 1970년대 말 빅토리아주 소재 발라렛(Ballararat)시에 있던 한 수영장에서 펠 신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당시 8세의 소년)가 실제 존재했음이 밝혀졌다(The Guardian, 26 February 2019). 펠은 당시 발라렛에 있는 세인트 알리피우스(Saint Alipius) 교구에서 교육을 대리 담당하고 있었다. 펠 신부의 성폭(추)행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펠이 1990년대와 1970년대 범한 죄를 각기 다른 혐의로 취급하여 1, 2차에 걸친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를 가릴 것을 지시했다. 2018년 5월, 법원은

1차 재판이 2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보도 공개 금지명령(suppression order)’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르면, 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언론보도 공개금지 명령’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언론이 보도할 수 있었던 내용은 펠이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정도였고, 그 이상의 상세 내용은 허락되지 않았다. 당시 빅토리아주 검찰청장 케리 주드(Kerri Judd)는 “언론의 무분별한 사건 보도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내외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신원을 부적절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보도 공개금지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며 ‘보도공개 금지 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ions Victoria, 2018).

엄격히 말하자면, ‘공개금지 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호주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은 호주에서 발행되거나 호주로 방송되는, 혹은 호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해외언론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호주 국내 언론사들은 대부분 조심스럽게 정기적으로 재판을 관망하면서 법원의 명령을 준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도통제에 대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역시 이 보도 통제에 대해 이미 추측하고 있었다. 2018년 12월 1차 재판에서 펠 추기경이 유죄로 판결되었을 당시, 호주의 언론은 ‘정보공개 금지 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호주 언론은 펠 추기경 측이 2차 재판을 준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법원의 ‘정보공개 금지 명령’ 준수 지시를 잘 이행했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인터넷이었다.

1차 재판 판결 선고 이후, 재판을 관망하지 않았던 해외 언론들이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라인에 올라왔다. 그러나 취재를 하기보다는 보도자료나 발췌 기사에 근거하여 기사를 찍어 내듯이 대량 생산하는 ‘온라인 처널리즘(churnalism)’이 만연하는 현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다른 온라인 매체나 온라인 사이트들은 단시간에 이 기사를 복사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순식간에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 뉴스로 넘쳐났다.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 소식을 전한 해외언론 보도 수는 140여 개에 달했다 (MEEA, 2019).

몇몇 해외 언론사들은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 뉴스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반면, 대부분의 해외 언론사는 이 뉴스를 삭제하지 않았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유죄 판결을 보도했지만, 이 뉴스가 호주에서 보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Meade, 2019). 이를 위해 〈뉴욕 타임스〉는 오프라인으로만 이 뉴스를 발행했고, 해당 뉴스 인쇄판을 호주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데일리 비스트〉 웹사이트는 호주인들이 해당 기사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지오 블로킹(geo-blocking)을 통해 호주로부터의 해당 기사 접속을 차단시켰다. 〈워싱턴 포스트〉는 판결이 난 다음 날, 소식을 전했고 그 다음날은 공개금지 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논평을 내기도 했다(The Washington Post, 12 December 2018). 미국과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은 호주법상의 공개 금지 명령에 의거하여,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AP〉, 〈Reuters〉 등 호주에 지사가 있는 언론사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못했다.

2017년 7월, 펠 추기경 사건의 법정 심리 당시 검찰은 소송 심리기간이 시작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언론은 법정 모독으로 간주될 것이라 이미 경고한 바 있었다. 실제로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펠 추기경의 경우, 과거에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도 소송기간 동안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은 공식적인 정보만을 보도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범죄 부분이나 소송 절차 부분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나 법원과 논쟁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이었다. 이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유죄 판결 소식을 보도한 해외 언론과는 달리, 호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보도금지 명령으로 인해 이 소식을 보도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신상은 물론 재판에 관한 어느 부분도 언급할 수가 없었으며, 간략한 뉴스만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호주 언론은 1면에 이런 답답함을 간접적으로 표출하였다. 선고 다음 날, 〈헤럴드 선(Herald Sun)〉지는 1면을 검정 바탕 배경에 “검열”이란 단어를 큰 글씨로 제일 윗줄에 표시했다. 그 아래에는 “온 세상이 빅토리아주 사람들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저희 신문은 이 중요한 뉴스를 상세히 보도할 수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당연히 읽어야 할 뉴스인데 말입니다”라고 기술했다. 〈데일리 텔리그래프 (Daily Telegraph)〉지는 “호주에서 가장 엄청난 뉴스”라는 문구로 1면을 채웠다.

2019년 2월 검찰이 2차 재판을 취하함으로써 ‘공개금지’ 명령은 철회되었고, 호주 언론은 그때서야 유죄 판결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빅토리아주 검찰청

은 머독 소유의 뉴스 리미티드의 자회사인 <The Australian>, <채널 9(멜번)>, <The Age>, <머쿼리 미디어 (Macquarie Media)>, <ABC 라디오(빅토리아 주)>, 그리고 기타 소규모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 편집인, 방송인, 발행인 등 100여 명에게 법원의 공개금지 명령위반을 통보했다(Meade, 2019).

펠 추기경은 1차 재판 결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심한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2020년 2월 석방되었다. 그의 석방에 대한 법적 논란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2019년 3월 법원은 언론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200여 건에 달하는 기소장을 발송했지만, 그 이후 대부분의 기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펠 추기경의 석방 후에도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30여 건의 기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총 11개의 언론사와 19명의 언론인은 2020-2021년 법정 모독죄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언론인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언론사에게는 50만 불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Cooper, 2020). 펠 추기경 성범죄 사건의 언론보도는 소위 '언론 재판' 관행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언론이 특정 사건 재판 전에 보도해야 하는지, 재판 후에 보도해야 하는지, 재판 진행 중에 보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펠 추기경 사건은 언론과 여론의 양극화를 지나치게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은 언론의 책임,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언론 재판'이란 개념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법적으로 언론보도 공개금지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3월 <ABC>는 카톨릭 교회의 아동 성 학대 스캔들을 집중 조명한 영화 분량의 탐사보도를 3부에 걸쳐 방송했다. 3월 17일과 3월 24일 방송된 1, 2부에서는 아동 성학대로 수감되어 있는 두 신부 빈센트 라이언(Vincent Ryan)과 버나드 맥그라스(Bernard McGrath)가 저지른 범행의 본질과 그들이 감추려 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3월 31일 방송된 3부(Revelation)에서는 펠 추기경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당시 피해자들, 그리고 다른 가해 신부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3부에서는 2017년 당시 멜번 <ABC>의 탐사보도 기자로 펠 추기경의 아동 성범죄를 상세히 추적했던 루이스 밀리간(Louise Milligan)도 등장해 펠 추기경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러나 4월 7일, 고등법원의 펠 추기경 사건 파기 판결이 난 직후 <ABC>는 이미 방송되었던 3부를 삭제하고, 재편집된 3부 방송분을 <ABC>의 다시보기 채널인 <iView>에 올려야 했다. 펠 추기경 사건이 판결나기 며칠 전, 펠 추기경의 혐의를 상세히 보도했던 <ABC>로서 법원의 무죄판결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3부에 걸친 탐사보도 외에도 <ABC>는 시사프로그램인 <7:30 Report>에서 루이스 밀리간 기자가 펠 추기경의 혐의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루이스 밀리간 기자는 2017년 ‘펠 추기경의 명암(Cardinal: The Rise and Fall of George Pell)’이라는 책을 통해 펠 추기경의 혐의를 폭로한 바 있었다. 이 책은 출판 2주만에 재판이 나올 정도로 그 파급력은 대단했다.

그러자 <헤럴드 선>지의 고정 기고자이며, 보수 성향의 정치 해설가인 앤드루 볼트(Andrew Bolt)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ABC>에 대한 비평을 쏟아냈다. 한 나라의 공영 방송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펠 추기경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게끔 설득력 없이 추기경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펠 추기경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온 볼트는 무고한 사람을 비방하고, 파멸로 이끌어 마침내 감옥으로 보내는 데 <ABC>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볼트는 또한, 머독(Murdoch) 소유의 News Limited 자회사인 <Sky News>채널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는데, 펠 추기경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ABC>의 재원 중에는 천주교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ABC>의 견해가 나의 견해와 다를 수는 있지만 한 쪽으로 편향된 관점만 보여준다면 이는 공익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ABC>의 보도내용을 비난했다(Sky News Australia, 21 April 2020). 이에 대해 <ABC>는 공익에 필요한 뉴스를 두려움 없이 정확하게 보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V. 성범죄 보도 관련 자율규정

호주에서 성범죄 관련 보도에 관한 규정이나 수칙만을 종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은 없다. 각 언론사 역시 성범죄 보도에만 적용되는 윤리강령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호주 전국 미디어 종사자 연합회로 구성된 호주 언론인 협회(MEAA: Media, Entertainment and Arts Alliance)의 자율 규정은 성범죄 보도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모든 보도의 정확성·진실성,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관련 보도는 각 사건의 사실 즉, 보도 허용 범위 내에서의 가해자의 신상, 범죄

장소, 날짜 등에 입각하고 있어야 하며, 성범죄가 발생한 상황과 배경도 설명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MEEA Fact Sheet). 호주의 신문·잡지의 심의기구인 호주 언론 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의 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성범죄에만 특정되는 항목은 없고 ‘가정 폭력 보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호주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는 각 주의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예를 들면, 가정 (성)폭력을 보도할 때 언론사들은 40여 개에 달하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APC, 2016).

하지만, 성범죄 보도에 관한 자율규정이나 방향 제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 주 정부의 법무부 산하에 있는 피해자/희생자 서비스(Victims Service)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피해자 및 희생자들이 어떻게 언론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언론 공개 시의 장·단점, 언론 공개가 경찰 조사에 미치는 영향력, 언론과의 인터뷰 시 주의할 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기술하고 있는데, 언론은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는 범죄에 대해 보도할 수 있으나, 일단 기소된 이후에 보도되는 사건 관련 내용이나 의견 보도는 배심원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고려 하에 이런 보도는 금지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Victims Services, 2011).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언론의 신상 보도금지 규정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범죄법(Crimes Act 2000) 578a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상은 실명·거주지 주소·다니는 직장 혹은 학교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암시하거나 단서가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Crimes Act 1900, 578a조). 동법은 또한, 14세 이상의 성범죄 피해자는 언론이 본인의 실명이나 사진(혹은 둘 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범죄 보도의 경우, 언론의 자체 윤리규정은 따로 없으며, 각 주 정부 산하의 아동/여성 복지나 가정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언론보도 기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보도에 관한 자율 규정은 가정 폭력이나 여성 폭력에 관한 보도기준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다. 한 예로, 호주 연방 수도권(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 위치한 여성 건강 문제 센터(WHM: Women’s Centre for Health Matters)는 언론의 성폭력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성폭력 보도 자율 규정

성폭력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겁에 질리게 하거나, 혹은 위협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로 광범위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물리적 폭력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법 위반이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다음의 성적 행위들은 성폭력이라 볼 수 있다(WHM, 2014b).

- 성희롱(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이나 농담)
-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접촉
- 강제로 성적인 장면(포르노물 포함)을 보게 하는 행위
- 관음증(동의 없이 은밀한 행위를 지켜보는 행위)
- 강간을 포함한 성폭행
- 성적 본능에 의한 위협이나 협박

여성 건강 문제 센터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WHM, 2014b).

- ‘성폭력(혹은 ‘성폭행’이나 ‘강간’)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성폭력을 ‘성관계’ 혹은 ‘섹스’ 등 불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면, 이는 피해자가 겪은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상황을 축소시키거나 사소한 범죄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성폭력’이란 단어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독자나 시청자들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은 경우에 따라 성폭력 당시의 상황 보도를 생략할 수도 있어야 한다.
- 성폭력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은 모든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폭력의 빌미를 제공했다든가 혹은 잘못이 있다든가 하는 내용을 암시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성폭력을 당할 당시 피해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든가, 혹은 피해자가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든가와 같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직업을 지나치게 부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는 가해자의 폭력 사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할 뿐더러, 가해자의 폭력 사용과도 전혀 무관하다.

- 성폭력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를 사소한 문제로 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어조로 보도해서도 안 된다.
- 성폭력에는 분명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성이 강간당하다’와 같은 피해자에게 생긴 일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 제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사는 성폭력이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누군가가 이 폭력을 저질렀으며, 이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이야기를 균형있게 보도해야 한다.
-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원의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사건이나 아동이 관련된 사건을 보도할 때, 공개 여부에 관한 법적 허용 범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낯선 사람의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피해자가 알고 있거나 면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특정 관계가 있으면 이를 밝혀야 한다.
- 피해자 관련 소식을 보도할 때, 극도의 세심함과 최상의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피해자는 성폭력의 충격으로 심한 수치감과 나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건이 수 년 전에 일어났더라도 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 보도 프레임을 짤 때, 성폭력 관련 국내외 통계 자료를 사용하라.
- 성폭력 사건에는 남녀의 성적 특징(gendered dimension)이 있다. 성폭력은 단 한 번으로 그치고 마는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과 자원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남성보다는 여성과 아이들이 빈번하게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성폭력이 저질러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적합한 용어로 인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 등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피해자’란 용어는 과거에 성폭력을 겪었던 사람

을 지칭하기도 한다.

-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상 전화 번호, 성폭력 상담 및 신고 번호 등이 있다.
-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라. 성폭력 보도 시, 경찰이나 사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와 전문단체의 의견도 포함시켜야 한다.

2. 아동 성폭행 보도 자율 규정

아동 성폭행은 성인과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승낙할 수 있는 연령(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6세가 보통이다) 이하의 아동 간에 행해진 모든 성적 행동,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두 미성년 간의 성적 행위, 그리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성인(부모나 학교 선생 등) 간의 성행위를 뜻한다. 이런 성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WHM, 2014a).

- 성기, 손가락, 혹은 다른 물체를 이용한 성관계
- 오랄 섹스
- 성기, 가슴 혹은 그 밖의 다른 은밀한 부위를 더듬는 행위
- 포르노 영화나 잡지 등의 외설물에 노출시키거나 관여하게 하는 행위
- 관음증(은밀한 행위를 지켜보는 행위)
- 노출증(성기나 다른 은밀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 성적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 등 아동의 성장에 부적합한 노골적인 성적 이야기를 하는 행위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 센터의 아동 성폭행 보도 수칙

성폭력/가정폭력 위기 센터는 아동 성폭행 보도 수칙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WHM, 2014a). 일반 성폭력 보도수칙과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 보다 세심함이 요구된다.

- ‘아동 성폭행’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아동 대상의 성폭행을 ‘성관계’ 혹은 ‘섹스’ 등 불명확한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는 피해자가 겪은 치명적이고 끔찍한

경험을 축소시키거나 사소한 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아동 성폭행’이란 단어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독자나 시청자들은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에 조금이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은 필요하다면, 성폭행 당시의 상황 보도를 생략할 수도 있어야 한다.
- 아동 성폭행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 성폭행은 모든 경우에 성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아동 피해자가 성폭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든가, 혹은 잘못이 아동에게 있다든가 하는 내용을 암시하는 어떤 용어나 표현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당한 성폭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 아동 성폭행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가져온다. 아동 성폭행을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를 사소하게 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어조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 보도 프레임을 짤 때, 성폭행 관련 국내외의 통계 자료를 사용하라.
- ‘낮선 사람의 위험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낮선 사람’이라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평소 아는 사람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보도가 중요하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특정 관계가 있으면 이를 밝혀야 한다.
- 아동 성폭행 피해자를 취재할 때,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헤아리는 데 있어 극도의 세심함과 최상의 판단력으로 임해야 한다.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사건이 수 년 전에 일어났더라도 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에 피해자/피해자 가족에게 보도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 성폭행에 관련되거나 법원의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사건을 보도할 때, 공개 가능과 공개 불가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아동 성폭행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양쪽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하며, 아동은 사회에서 특히 취약한 구성원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적합한 용어로 인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적절치 않을 경우(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급적 ‘성폭행 피해자인 아동’ 등으로 언급해야 한다. ‘피해자’란 용어는 과거에 성적 학대를 겪었던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 아동 성폭행을 경험한 사람들과 주위에서 성폭행을 겪고 있는 아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상 전화번호, 성폭행 상담 및 신고 번호 등이 있다.
-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성폭행 보도 시, 경찰이나 사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와 전문 단체의 의견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

(2) 여성·아동 폭력 근절 단체의 가이드라인

호주 연방정부는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및 아동 보호”라는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 ‘여성·아동 폭력 근절 단체(Our Watch: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를 발족시켰다. 이 단체는 호주의 모든 주 정부가 회원이고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호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 단체는 언론이 (성)폭력을 다룰 때, 삼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Our WATCH, 2019).

- ‘가정 불화’, ‘불안정한 관계’, ‘아동 성학대’ 등 성폭력을 경시하거나 하찮게 보이게 하는 인상을 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성폭력이 “술, 마약, 정신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문화적 차이 때문에 혹은 순간적으로” 저질러졌다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 극단적인 언어나 말장난, 혹은 불필요하게 상세한 정보로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법정, 재판 관련 소식이나 경찰 보고서 내용 중 선정적인 면만을 다뤄서는 안 된다.
-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종, 민족성 혹은 그 밖의 다른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
- 성폭력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든지, 밤늦게 다녔다든지, 혼자 다녔다든지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 남성의 (성)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여성이 행동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 성폭력이 술, 마약, 정신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저질러졌다고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성폭력을 가중시켰을지는 몰라도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순 없다.

위에서 살펴 본 몇몇 자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무엇보다도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성폭력의 일차적인 책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명백한 사실을 희석시킬 수 있는 표현이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정황 설명 등을 삼가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VI. 끝머리에

호주 언론이 성범죄를 보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은 정보공개 금지일 것이다. 펠 추기경 사례에서 보았듯이, 법원이 적용하는 정보공개 금지는 호주의 정보공개 금지 명령권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주에서는 법원의 공개금지 명령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빅토리아 주에서 내려지는 명령 횟수가 다른 주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호주 전역에서 발행되는 명령권의 절반 이상이 빅토리아 주에서 발행될 정도이다(BBC, 26 Feb 2019).

호주 언론인 협회(MEAA)는 “공개 금지 명령권은 19세기 인쇄매체 시대에 만들어진 구시대 법적 유물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국경 없는 디지털 인쇄 플랫폼과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수많은 해외 언론사이트가 범람하는 21세기를 대처할 수가 없(MEAA, 2019)”다고 하여 현 명령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 왔다. 과연 호주의 일개 도시에 있는 법원이 ‘언론 공개 금지 명령’이라는 낡고 부적당한 방법으로 글로벌 뉴스의 보급과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호주의 입법 평의회(Law Council of Australia) 역시 배심원들이 소셜미디어 포스iting이나 검색 엔진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해외 언론의 간접 보도를 못 보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cited in MEAA, 2019).

결국, 법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법정 보도를 포함한 ‘열린 정의에 대한 대중의 관심’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ABC (3 September 2016). How the justice system lets sexual assault victims down.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6-09-02/brock-turner-justice-system-sexual-assault-victims/7801784?nw=0>
- ABC (22 October 2019). Gag laws' stopping sexual assault survivors in the NT from speaking out.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9-10-22/nt-sexual-assault-victims-stopped-from-speaking-out/11622468>
- ABC (28 January 2020). Sexual assault Investigations in NSW are half as likely to lead to legal action as in Victoria.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20-01-28/statistics-on-sexual-assault-investigation-outcomes/11908098?nw=0>
- ABC (12 August 2019). 7:30 Report Finally, she can speak. Her abuser could speak out. And he did. Now, she can too.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9-08-12/grace-tame-speaks-about-abuse-from-schoolteacher/11393044?nw=0>
- ABS (2019). 4510.0 - Recorded Crime - Victims, Australia, 201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Retrieved from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4510.0~2018~Main%20Features~Victims%20of%20Crime,%20Australia~3>
- ABS (2017). 4510.0 - Recorded Crime - Victims, Australia, 201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Retrieved from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4510.02016>
- ANROWS (2015). *Media representation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ustralian National Research Organisation for Women's Safety.
- APC (2016). *Advisory Guideline on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Reporting*, Australian Press Council.
- APC (2007). Doe v ABC - a case note, Australian Press Council News, May. p.7.
- BBC (26 Feb 2019). George Pell: Why was conviction kept secret?.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47366083>
- Butler, D. (2007). *Jane Doe v ABC and Media Liability for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Four More Bold Steps?, Australian Law Teachers Association.

Carroll, J. and Bennett, G. (27 July 2007). *Privacy protection in the courts: The Jane Doe case*. Retrieved from <https://www.claytonutz.com/knowledge/2007/july/privacy-protection-in-the-courts-the-jane-doe-case>

Cooper, A. (26 May 2020). 'Multiple contempt trials loom over reporting of Pell's conviction', *The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from <https://www.smh.com.au/national/multiple-contempt-trials-loom-over-reporting-of-pell-s-conviction-20200526-p54whi.html>

Country Court of Victoria (3 April 2007). *Jane Doe v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Case No. CI-03-07657) *Reason for Judgement*, Country Court of Victoria at Melbourne Civil Division.

Crimes Act 2000 578a.,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Sydney.

Daily Hansard (24 June 2020). Sexual Offences(Evidence and Procedure) Amendment Bill (Serial 117),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pp.23-25.

Department of Justice (2016). A guide to the media for victims of crime, Victims Service, Department of Justice, Sydney. Retrieved from <https://www.5rb.com/case/jane-doe-v-australian-broadcasting-corporation-others/>

Estrich, S. (1986). 'Rape', *Yale Law Journal* 95: 1087-1194.

Evidence Amendment Bill 2020 (2020). Department of Justice, Hobart.

Evidence Act 2001 Section 194 (2001). Department of Justice, Hobart.

Funnell, N. (2020a) Gang rape victim becomes first Tasmanian to speak out following gag law reform. 24 April. Retrieved from <https://www.news.com.au/lifestyle/real-life/news-life/gang-rape-victim-becomes-first-tasmanian-to-speak-out-following-gag-law-reform/news-story/333ec2d6797147548180d1249c0f7dfb>

Funnell, N. (2020b). #LetHerSpeak: Rape survivor breaks silence after NT gag law reform. 29 July. Retrieved from <https://www.news.com.au/lifestyle/real-life/news-life/letherspeak-nts-sexual-assault-gag-law-reformed/news-story/a08feace669b7afaafdd8ec33acaf98d>

Funnell, N. (2019a). 'He had pure evil in his eyes': Schoolgirl's gang rape horror story finally revealed. 8 April. Retrieved from <https://www.news.com.au/lifestyle/real-life/he-had-pure-evil-in-his-eyes-schoolgirls-gang-rape-horror>

- story-finally-revealed/news-story/21652a823b912955e99715159d3d05b0
- Funnell, N. (2019b). I lost everything': Predator teacher's 'disturbing' interview. 22 August. Retrieved from <https://www.news.com.au/national/courts-law/i-lost-everything-predator-teachers-disturbing-interview/news-story/c2ae11e76793290fb4f6b4fbb422bc62>
- Greenleaf, G. (2007). *Doe v ABC - A new version of a privacy tort?, Unpublished case-note*,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Sydney.
- Gregory, P. (2006). *Court Reporting in Austral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nell, L. (28 February 2017). It's never her fault: End the victim-blaming.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6-04-01/victim-blaming-never-her-fault/7288468?nw=0>
- High Court of Australia (2011). *Hogan v Hinch [2011] HCA 4*, 10 March. *Judicial Proceedings Reports Act 1958*, Victorian Law Reform Commission, Melbourne.
- Legislative Assembly of the Northern Territory, Legislation Scrutiny Committee (2020). *Inquiry into the Sexual Offences (Evidence and Procedure) Amendment Bill 2019*, March 2020.
- Masters, S. (2011). Hogan v Hinch: Case Note, *Canberra Law Review*, 10, 197-220.
- MEAA (2019). Suppression orders: Suppression orders are 19th century tools incapable of responding to 21st century borderless digital publishing. 2 May. Retrieved from <https://pressfreedom.org.au/suppression-orders-c237df7dfee5>
- MEAA (2016). *FACT SHEET: The MEAA Journalist Code of Ethics*, 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 Sydney.
- Meade, A. (2019). Up to 100 journalists accused of breaking Pell suppression order face possible jail terms. *The Guardian*, 26 February.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9/feb/26/dozens-of-journalists-accused-of-breaking-pell-trial-suppression-order-face-possible-jail-terms>
- Morgan, J. & Politoff, V. (2012). *Victorian print media coverage of violence against women*, VicHealth University of Melbourne.
- Ms FYLES (Attorney-General and Justice, NT) (2020). SEXUAL OFFENCES

- (EVIDENCE AND PROCEDURE) AMENDMENT BILL (Serial 117), Daily Hansard - Wednesday 24 June 2020 (Pages 23-25). Retrieved from https://parliament.nt.gov.au/data/assets/pdf_file/0009/899019/117-2019-Government-Response-24-June-2020.pdf
-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ions Victoria (2018).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right to open justic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Kerru Judd QC,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ions Victoria, June 22. Retrieved from <http://www.opp.vic.gov.au/News-and-Media/Latest-news/News/The-right-to-a-fair-trial-and-the-right-to-open-ju.aspx>
- Serious Sex Offenders Act 2005 (2005).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Sydney.
- Sky News Australia (21 April 2020). Media Watch airs 'dishonest' defence of ABC's George Pell coverag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qmqkDq_TYEQ
- The Guardian (26 February 2019). The legal trials of George Pell - timeline.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9/feb/26/rise-fall-george-pell-timeline>
- The Washington Post (12 December 2018). Australian court convicts once-powerful Vatican official on sex-abuse-related charges.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ustralian-court-convicts-once-powerful-vatican-official-on-sex-abuse-related-charges/2018/12/12/da0d909c-fe20-11e8-a17e-162b712e8fc2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77e4abd4f153
- Timebase (6 December 2019). NT Introduces Bill To Reform Sexual Assault Speech Laws. Retrieved from <https://www.timebase.com.au/news/2019/AT04982-article.html>
- Trindade, D. & Condello, M. (28 Sep 2017). The implied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 does not help an employee who disagrees with their employer's policies. Retrieved from <https://www.claytonutz.com/knowledge/2017/september/the-implied-freedom-of-political-communication-does-not-help-an-employee-who-disagrees-with-their-employers-policies>
- Victims Services (2011). *A guide to the media for victims of crime*. NSW Department of Justice: Sydney.
- Our WATCH (2019). *How to report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Melbourne.

WHM (2014a). *Reporting on Child Sexual Assault: A guide for ACT media*. Women's Centre for Health Matters Inc: Canberra.

WHM (2014b).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guide for ACT media*. Women's Centre for Health Matters Inc: Canberra.

Wrongs Act 1958 (1958).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Sydney.

I. 들어가며

성범죄 보도를 포함한 범죄 보도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영역이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관련하여 보도량이 많고,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五十嵐, 1991; 牧野, 2013). 범죄 보도를 사건의 발생, 수사, 재판으로 분류한다면, 일본의 범죄 보도는 수사 보도에 집중되어 있다. 사건 발생 직후의 수사 정보에는 오해와 편견이 많으며, 오보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보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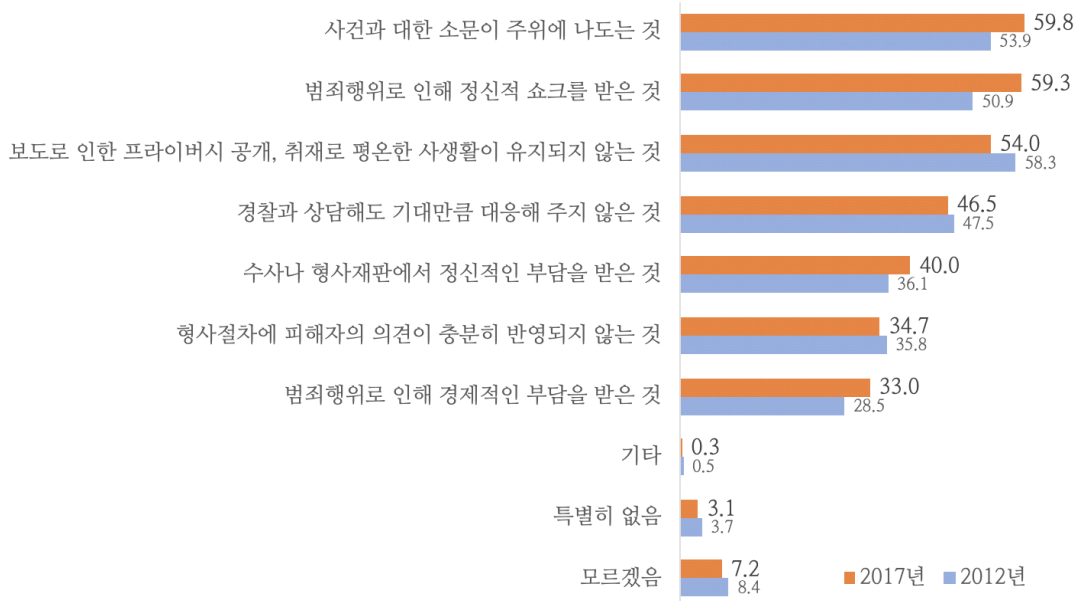
내각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¹⁾,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 중에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평온한 사생활 침해를 겪었다는 응답은 54.0%이었다. 이는 5년 전 조사보다 4.3%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침해는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성별로는 여성에서, 연령대별로는 30대~5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도 피해’(報道被害)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보도 피해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보도로 인해 취재 대상자가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인권침해를 말하며, 생활 파괴, 이웃과 친구로부터 고립을 불러일으키는 것”(粹澤, 2013:22)을 말한다. 보도 피해는 “어떤 피해에 부수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최초 피해와 부수적인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諸澤, 1998:133)이다. 보도 피해는 사건 보도나 범죄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다.

* 동경대 언론학 박사수료, ahnchanghyun@gmail.com

1) 이 조사는 내각부가 5년을 주기로 실시하며, 전국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층화 2단계 무작위 추출법으로 표집한다. 2017년에는 10월 5일부터 10일 간 개별 면접법으로 조사했다. 유효응답은 1,758명이며, 응답률은 58.6%이었다.

[그림 1] 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인권문제(복수응답, %)



출처: 内閣府政府広報室(2017). 人権擁護に関する世論調査の概要(2017年 12月), p.22.

범죄 보도와 성범죄 보도는 환경감시기능을 수행하지만, 보도 행태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인격권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과열보도로 인한 생활상의 지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격권 침해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차 피해와 3차 피해를 일으킨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보도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실명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 성범죄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인격권 침해 유형과 사례

성범죄 보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그만큼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1990년), 츠쿠바 모자살인사건(1994년), 도쿄전력 여직원 살해사건(1997년) 등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주간지와 TV 와이드 쇼 등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누드

사진과 사생활을 폭로하는 정보를 게재하기도 했다. 피해는 1차에서 그치지 않고 2차, 3차로 증폭됐다.

성범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인격권 침해 유형은 다양하다. 아즈사와(梓澤) 변호사는 보도 피해자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2007). 즉 ① 억울하게 범인으로 보도되는 경우, ② 완전한 무죄는 아니더라도, 정보가 일방적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과도하게 사회적 제재를 불러일으키는 피해, ③ 프라이버시 침해, ④ 범죄 피해자의 보도 피해 등이다. 코바야시(小林)는 보도 피해의 법적 측면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기정보 통제권, 초상권 침해, 집단적 과열취재, 집중호우형 보도로 인해 침해 등으로 구별한다(2014:24-29). 여기서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과열보도로 인한 생활권 침해 등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정리한다.

1. 명예훼손

성범죄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명예훼손이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0조)고 명시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여 침해위험성이 생기는 경우에 성립된다. 민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공개의 요건에 의견이나 논평까지 포함하고 있다. 명예훼손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손해배상(제709조, 제710조), 위자료와 명예회복 수단²⁾(제723조)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면책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고, 그 목적이 단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을 때에 이를 벌하지 않는다”(제230조의 2)³⁾. 즉,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표현이라도 공공성과 공익성, 진실성(진실 상당성)이 인정되면 면책되는 것이다. 특히, 진실성의 법리는 보도 내용이 진실과

2) 대표적으로 사과 광고, 반론문 게재, 사전 금지 등이 있다.

3) 이 외에 체포나 기소되기 전에 용의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고, 정치가와 공직 선거 후보자, 공무원도 진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르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면책을 인정한다(宍戸, 2011; 松井, 2013). 상당성의 법리는 1966년과 1969년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확립되었다. 민사재판의 경우, 보도에는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면책이 인정된다. 그러나, 언론은 취재 단서, 취재 대상자, 취재 방법, 취재 내용, 취재 결과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범죄 보도에서 보도량은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矢島, 1991), 보도 양태도 독특하다(四方, 2011). 특히, 성범죄 보도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며, 생활상과 이성 관계, 친구 관계 등을 자세하게 언급한다(四方, 2011:56). 또한, 성범죄 보도에서 여성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피해자가 유혹했다” 등 성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논조로 보도한다. 이는 성폭행은 여성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해서 일어난다며, 여성이 조심했어야 했다는 편견을 양산한다. 이를 시카타는 ‘아담·이브 증후군’, ‘강간 신화(rape myths)’라고 비판한다(2012:136-7).

성범죄 보도는 선정성도 문제된다(四方, 1996; 小林, 2014). 성범죄 보도에서 여성 피해자의 성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언급되고, 보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코바야시는 “성관계 폭로와 강조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보도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이기도 하다”(2014:54)고 지적한다. 시카타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1989년)과 기후(岐阜) 여중생 살해사건⁴⁾(2006년)에 대한 신문 보도를 비교하면서, 두 사건의 보도 태도에 변화가 없으며, 여성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고, 이성 관계를 강조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실명, 때로는 얼굴 사진이 게재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언급하며, 그것이 범죄에 말려든 원인이 된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 피해자를 재판 받는 입장으로 전락시키며, 그 배경에 ‘강간 신화’와 ‘이중적 성윤리’가 있다”(細井·四方, 1995:31)고 할 수 있다.

4) 2006년, 기후 현의 폐허인 ‘파칭코 점포’에서 여중생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흘 뒤에 친구였던 고교 남학생이 체포되었다. 당시 보도에서는 피해자의 일기 식 블로그를 인용하여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부각했다.

(1)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보도 사례

이러한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는 1989년에 발생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女子高生コンクリート詰め殺人事件)’이 대표적이다. 미성년의 가해자 4명이 여고생을 유인하여, 41일 간 감금하고 폭행과 강간을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체를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로 채워 유기하였다. 이 사건은 범행이 흉악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방송과 신문, 주간지 등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에서는 피해자 소녀도 불량 서클에 소속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자식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조로 보도했다. “(소녀는) 결코 소년들의 반대편에 있던 아이가 아니었다”(週刊ポスト, 1989년 4월 21일호)고 단언하는가 하면, “소녀는 무단 외박도 자주 하는 비행소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朝日新聞, 1989년 4월 4일)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보도가 많았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주간지의 보도가 과열되었다. 이 중 〈슈칸분춘(週刊文春)〉은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며, 가해자를 실명으로 보도했다. 소년법(제61조)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소년범죄에 대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슈칸분춘〉은 가해자의 이름과 학교명, 부모 이름과 경력 등도 게재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1997년에 발생한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 사건’이다. 살해된 여성은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전력에 근무하는 관리직이었다. 그러나, 퇴근 후에는 매춘을 행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매스미디어는 이 사건의 피해 여성에 대해 흥미 위주의 정보를 보도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스트레이트 뉴스가 줄어들었지만, 피해자를 둘러싼 선정적인 폭로가 증가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 근무처, 학력, 교우 관계, 가족 관계, 자택, 장례식 영상, 피해자의 밤 생활에 대한 흥미 위주의 관음적 정보를 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日本弁護士連合会人権擁護委員会編, 2000:161-164).

2. 프라이버시 침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하여, 권리로 인정한 것이 프라이버시권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름과 주소, 학력, 가족 관계, 취미, 사상 등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버시와 함께, 개인정보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과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된 것”(개인정보법 제2조 제1항)을 말한다.

특히,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남성 피해자보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현저하게 높다(小玉·中·黄, 1999).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1997년)’을 보도하면서 언론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했다. 이 사건은 살해된 피해자가 고학력으로 일류 기업의 관리직 여직원이었다는 점과, 밤에는 매춘을 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언론은 피해여성의 실명과 얼굴 사진, 회사, 학력,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자택, 장례식 영상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사적 행동까지 선정적으로 폭로했다. 이러한 보도 양태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무시한 선정적 보도였다. 성범죄 보도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윤리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1) 오케가와 스토키 살인 사건 보도 사례

범죄 보도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는 ‘오케가와 스토키 살인 사건(桶川ストーカー殺人事件)’이다(粹澤, 2007). 1999년, 여대생이 협박과 괴롭힘, 비방증상을 당한 뒤에 역 앞에서 살해되었다. 사건 2개월 후, 살인 혐의로 4명이 체포됐다.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의 형이었으며, 전 남자친구는 자살하였다. 이 사건은 유족이 “딸은 세 번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일본의 언론과 경찰, 사법 행정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가해자로 언급된 것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괴롭힘(스토커) 피해 신고를 무시했으며, 조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유족은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최고재판소는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태만을 인정하여 배상을 명령했다.

세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피해자 여성의 이름과 얼굴을 보도했다. 사건 발생 이후 3개월 간, 아침부터 밤까지 피해자 유족의 집 주변에 보도진이 집을 치고 있었다. 결국, 유족은 방송업계 자율규제기관인 방송인권위원회에 과열취재 자제를 요구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사에 유족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피해

자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절도 있는 취재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는 과열됐으며, 마치 여성 피해자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가 넘쳐났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피해 여성의 시계와 핸드백의 상표까지 공개했다. 게다가 전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관계자라는 정보와 함께, 민방의 와이드 쇼와 주간지, 스포츠 신문 등에서는 피해 여성이 “브랜드 중독증”,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며, 신문에서는 “호스텔스로 일했다”는 기사도 작성하였다. 또한, 오보도 양산했다(清水, 2018:35, 341). “실행범이 체포되자, 유족은 선물용 과자를 들고 경찰을 방문해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으며,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며 거짓 설명까지 받아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키규제법(ストーカー規制法)이 제정되었다. 언론은 경찰 취재와 피해자 보도를 반성하고, 피해자 보도의 의의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경찰은 단일한 수사와 은폐 혐의가 드러났으며, 경찰 3명이 징계면직,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본신문협회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2001년,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집단적으로 취재하는 집단적 과열취재를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카타(2011)는 2000년대 이후의 성범죄 보도에서 여성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실명, 연령, 주소, 학교나 직업, 얼굴 사진 게재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실명과 연령, 직업 등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소와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를 들면, 2008년 ‘마이즈루 여고생 살해사건(舞鶴女子高生殺害事件)’을 보도하면서, 신문은 여성 피해자가 발견 당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강조했다. 생전의 복장을 자세하게 보도하며 화려한 옷을 즐겨 입었다고 했다. 그 외에, 과거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은 것과 피해자의 블로그도 소개하였다.

특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은 상대적으로 범죄 보도를 많이 다룬다. 일본의 지역신문은 지역별 시장점유율이 전국신문보다 높다. 지역방송은 지역뉴스를 매일 방송한다. 독자와 시청자는 현지의 지리적, 문화적 상황에 밝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쉽다. 그만큼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가고시마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강간치상사건 판결 보도 사례

가고시마의 지역민방은 2010년 10월 가고시마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강간치상 사건 판결을 보도하면서 “옆집 여성을 폭행한 남자에 징역 7년”이라는 제목으로 “○○시 무직 ○○피고”가 “옆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폭행했다”고 언급했다. 이 뉴스는 피고의 주소를 기초지자체로 특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의 옆집에 주거했다고 보도하여, 적어도 인근에 사는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짐작하기 충분한 내용이었다. 방송 이후에 뉴스 원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해당 원고는 피해자가 다음 해 1월 홈페이지 내용을 우연히 보고 변호사를 통해 항의·삭제하기까지, 3개월 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재판원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고려하여 기소장 낭독, 모두 진술, 논고, 변론 등에서 피해자의 주소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1심에 출석하지 못해, 국선 변호사가 피고인 질문과 피해자 의견 진술을 대신했다. 피해자는 방송사의 홈페이지 기사를 열람한 이후, PTSD가 재발하여 주치의로부터 “집에서 30분 이상 이동을 금지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심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3. 초상권 침해

성범죄 보도는 초상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초상권은 ‘누구든지 함부로 자신의 용모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사진을 공표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실정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인격권 혹은 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大家重夫, 2011).

성범죄 보도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관련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경우, 주간지 <여성자신(女性自身)>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피해 여성의 핫팬츠와 수영복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보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을 정리한 시민단체는 “미모로 남심을 자극하는 소녀의 이미지를 자아내며, 죽은 뒤에도 소녀의 인격을 멸시한다. 사자에게 초상권이 없다는 것인가. 사자에게 명예훼손이 없다는 말인가”(死刑をなくす女の会, 2004: 128-131)라고 비판하였다.

일본에서는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수단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소년법에서는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오는 소년 혹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 이름, 연령, 직업, 주거, 용모에 의해 그 자가 해당 사건의 본인으로 추측될 수 있도록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제61조)고 규정하고 있다.

4. 집단적 과열취재로 인한 생활권 침해

성범죄 보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집단적 과열취재로 전락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집단적 과열취재는 어린이나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鈴木·山田 2019:68-69).

집단적 과열취재는 대형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자의 집·회사 등에 대규모 취재진이 쇄도해 취재대상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보도하는 것은 말한다. 이는 슬픔에 빠진 가족의 심정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오케가와 스토키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방송사의 집요한 취재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방송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집단적 과열취재로 인한 피해를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집 앞에 취재진이 대거 몰려들고, 가족의 모습을 비춰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살해된 딸 사진이 계속해서 방송되고, 가족사진은 방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비출만한 것은 모두 드러낸다. 초등학생과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도 있지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집요하게 달려든다. 이웃에게도 폐를 끼쳐 이대로는 이곳에서 살 수도 없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피해자에게 자살이라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放送人權委員會, 1999)』

이러한 집단적 과열취재는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키기 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족이나 관계자에게는 생활권을 침해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미디어 스크림(メディアスクラム)’이라고 부르는데, “대형사건, 사고의 당사자나 그

관계자에게 다수의 미디어가 쇄도해 당사자와 관계자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사회생활을 방해하거나, 막대한 고통을 주는 상황을 양산하는 취재”(日本新聞協會, 2001)를 의미한다. 일본신문협회와 일본민간방송연맹에서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제를 발표해 왔다.

한편, 모바일 미디어의 발달은 성범죄 보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바일 미디어는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데, 특히 성범죄 보도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모바일 및 온라인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지고, 가짜뉴스(fake news)가 범람하면서, 새로운 문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N차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2009년에 발생한 ‘교토교대 집단폭행사건(京都教大集団暴行事件)’의 경우, 대학생 6명이 준강간혐의로 체포되자, 온라인에서는 “방으로 따라 간 피해자가 나쁘다”, “왜 술자리에 참여했나”, “합의금을 노렸다”는 등 피해 여성을 비방하고 증상하는 내용의 댓글이 잇따랐다.

III. 성범죄 보도 관련 주목할 만한 판례 및 입법례

1. 범죄피해자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은 2004년 12월에 제정됐다. 이 법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기본이념을 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을 말한다(제2조 제2항).

이 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제4조). 지방정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제5조). 또한, 중앙정부는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을 정해야 하며(제8조), 내각부에 ‘범죄피해자실시추진회의’를 설치해야 한다(제24조).

정부는 필요한 법제와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① 범죄피해자 백서 발간, ② 상담 및 정보 제공, ③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지원, ④ 지원금제도 확충, ⑤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 ⑥ 안전 확보, ⑦ 주거 안정, ⑧ 신용 안정, ⑨ 고용 안정, ⑩ 보호·수사·공판과정에서 배려 등이 있다.

일본 정부는 범죄피해자기본법 시행에 맞춰,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은 범죄 피해자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 보도와 관련해 주목을 받은 것은 ‘범죄 피해자의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판단이다. “경찰의 피해자 실명 발표와 익명 발표에 대해서, 익명 발표를 원하는 범죄 피해자의 의견과 매스미디어를 통한 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하는 실명 발표에 대한 요망을 검토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발표의 공익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 구체적인 안전마다 적절한 발표 내용이 되도록 배려한다”고 하였다. 결국, 지역경찰이 판단하도록 했지만,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실명과 익명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⁵⁾.

2. 성범죄 보도 관련 판례

사건보도와 관련된 판례로는 1972년 최고재판소에서 수사당국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을 보도한 경우에 대해 “신중하게 보강 취재를 해야 했다”며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1990년 도쿄지방법재판소는 피의사실이 성립하지 않은 경찰의 체포를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범죄 수사에 나서는 경찰서 수사관이 수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명된 피의사실을 기자회견 등에서 공개한 경우, 그 발표 내용에 의문을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그렇지 않은 한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건보도가 용의자 체포 순간에 집중돼 있으며, 상당성의 법리는 이를 정당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宍戸, 2011:209).

성범죄 보도를 포함해 범죄 보도에서 ‘실명보도’가 쟁점이다. 일본에서 범죄 보도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실명보도의 의의는 판결로 인정받기도 했다.

5) 2016년 4월 각의에서 결정된 제3차 범죄피해자기본계획에서는 네 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범죄피해자 시책은 첫째, 존엄에 어울리는 처우를 권리로 보장할 것, 둘째, 개개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할 것, 셋째, 중단 없이 시행할 것, 넷째, 국민의 총의를 형성하면서 전개되도록 할 것이다.

서류송검 사실의 경칭을 생략한 용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한 책임을 다루는 소송에서 나야 고등재판소는 “보도에서 피의자의 특징은 범죄 뉴스의 기본적 요소이며, 범죄 사실 자체와 함께 공공의 중요한 관심사”이라고 인정했다. 피의자 특징의 방법과 정도는 “범죄 사실의 양태, 정도 및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특질(공인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피해자 측의 피해 심정, 독자의 의식, 감정 등을 비교 형량하고, 인권의 존중과 보도의 자유, 그리고 알권리 옹호와의 균형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성범죄 보도와 명예훼손을 다룬 사례로는 2009년 2월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다.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오키나와현의 중학교 교사가 실명보도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NHK>와 지역민방 3사를 상대로 5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이 교사는 오키나와현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 혐의로 2007년 3월 체포되었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체포 사실과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언론사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용의자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은 피해자 특징이 우려된다고 실명 발표를 거부했지만, 언론사의 요구로 오키나와현의 경찰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용의자 실명과 주소를 공개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직한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용의자가 질병으로 휴직중이라고 설명했다.

<NHK> 등 언론사는 용의자의 실명을 포함해 체포사실을 보도했다. 용의자 체포 직후 담당 변호사는 언론사에 교사와 여중생은 교제 중이며,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곧 복직하기 때문에, 복직에 지장이 없도록 실명보도를 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일부 언론사는 용의자가 석방된 사실은 보도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보도하지 않았다.

1심인 나하지방재판소는 2008년 3월 “실명보도는 익명보도와 비교해 피의자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며, 사후적으로 무죄가 판명되더라도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진범이 판명된 것이 널리 보도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극히 곤란하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실명보도가 해당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 가족 등의 생활에도 중대한 지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형사재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그 정당성은 일찍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소년범 이외에 “실명보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최근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 이름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무원, 특히 공립학교 교사

가 학생을 상대로 한 파렴치죄는 실명보도가 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보도 양태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립 학교 교사의 직무 특수성에 비추어 상응의 합리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공립중 학교 교사에 대해 실명보도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본건의 피의사실은 공립중학교 교사가 지도를 받는 입장인 여중생에 대해 추잡한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NHK> 등이 실명보도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위법성을 결여한다”고 판단했다.

2심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는 2008년 10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도, 프라이버시와 실명보도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피의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실이라는 점, 보도기관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요구되며, 보도의 정확성·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익명보도가 아니라, 피의자의 이름을 특정한 실명보도가 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본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교사가 체포된 것을 실명으로 보도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명보도에서 감안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실명을 공표하지 않는 법적 이익에 관해서는 교사는 질병으로 휴직 중이었지만, 중학교 교사로서 사회생활을 했다는 점, 본건의 보도가 오키나와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일반 시청자에 대해 교사가 체포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인 조례를 위반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따라서 체포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된 경우에는 교사가 사후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극히 곤란하다는 점, 실명보도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피의 사실과는 무관계인 교사의 가족 등의 생활에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NHK> 등이 교사의 기소 유예를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체포된 사실이 한번 실명으로 보도되면, 이후에 사실무근으로 판명되거나 불기소로 종료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 체포된 사실을 보도하고도, 그 뒤의 경과 조치(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해서는 뉴스 가치가 없다며 이를 보도하지 않는 태도에는 생각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보도는 아니지만, 최고재판소는 2016년 9월 실명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에 체포돼 불기소된 남성이 실명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주니치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했다. 체포 혐의를 잘못 보도한 <마이니치신문>에 110만 엔을 지급하라는 2심을 확정했다.

3. 성범죄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피해자단체의 움직임도 성범죄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에 ‘전국범죄피해자모임’이 설립되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가 성범죄사건을 재판원재판에서 제외할 것을 최고재판소와 검찰청에 요구했다. 지역에서는 지방재판소와 지방검찰청에 배려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용서하지 않는 여성모임’은 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와 기자로 구성된 ‘성폭력과 보도 대화모임’은 2016년에 ‘성폭력 취재를 위한 가이드북’(性暴力被害取材のためのガイドブック)을 발표했다. 2015년 6월부터 성폭력 피해자(survivor)와 기자가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이해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북은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취재하는 기자를 위해, 취재에 응할 때의 주의할 점과 취재할 때의 배려를 정리한 것이다.

가이드북에서는 우선, 성범죄 피해자가 취재를 받을 때의 확인 사항과 기자가 취재할 때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둘째, 취재를 받은 피해자의 사례와 취재를 한 기자의 소감 등을 정리했다. 셋째,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취재, 안정적인 취재 방법, 당사자의 취재 경험을 소개했다. 넷째, 취재로 인한 피해와 회복, 언론사 간부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IV. 성범죄 보도 자율규제 동향 및 시사점

1. 언론계의 자율규제

일본에서 범죄 보도는 1989년에 전환점을 맞이했다. 과잉 보도와 오보 등으로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마이니치신문>을 시작으로, ‘피의자’ 대신에 ‘용의자’를 사용하였다⁶⁾. 1993년에는 <아사히신문>이 ‘미디어란’을 통해 보도 검증과 ‘미디어 비평’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면심의회’도 설치하였다.

그러나, 범죄 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에 잇따라 발생한 성범죄를 보도하면서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범죄 보도에서 인권을 고려하고, 윤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日本弁護士連合会, 2000). 또한,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보도 피해 대책을 구실로 미디어규제법안을 만들기 시작했으며⁷⁾, 그 결과 신문과 방송은 자율규제를 내세웠다. 방송에서는 1997년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공동으로 방송인권위원회기구(放送と人権等権利に関する委員会機構: BRO)를 설립하였다. 2000년에는 일본신문협회가 신문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열린신문위원회’(開かれた新聞委員会)를 설치했으며, 2001년에는 일본신문협회가 ‘집단적 과열취재 관련 견해’를 발표했다.

2. 신문 보도기준과 자율규제기관

(1) 신문윤리강령 및 방송기준

2000년에 전면 개정된 ‘신·신문윤리강령’에서는 알권리와 인권 존중이 부각되었다.

6)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법률용어이다. 반면, ‘용의자’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1989년까지 범죄 보도에서 피의는 경칭을 사용하지 않고 불렀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에서는 ‘용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7) 대표적으로, 1995년 지상파 민방 <TBS>의 음진리교 관련 보도를 계기로 우정성은 ‘다채널시대 시청자와 방송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했다. 1998년에 자민당이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하자 보도를 감시하기 위한 ‘보도모니터제도’를 신설했으며, 1999년에는 ‘보도와 인권 검토회’를 설치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이른바 ‘미디어규제 3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설립되었다.

“신문은 인간의 존중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개인의 명예를 존중해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보도를 잘못된 때는 신속하게 정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명예를 해쳤다고 판단한 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명보도가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日本新聞協會, 2006:5). 실명보도는 익명보도와는 달리 강한 소구력을 가지며 사실의 무게를 전달한다. 실명은 뉴스의 기본 요소인 5W1H의 하나이다. “이름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을 나타내는 것”이며, “익명과 가명으로 조직된 공동체는 건전하지” 않으며, “이름은 사람이 개인으로 존중받는 기초이며, 개인의 인격을 상징한다”(日本新聞協會, 2006:58).

일본신문협회는 집단적 과열취재가 문제되자, 2001년에 집단적 과열취재에 관한 견해를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표했다. 이 견해에서는 집단적 과열취재를 정의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피해자, 용의자, 피고인, 그 가족, 주변 주민을 포함한 관계자’로 규정했다. 집단적 과열취재를 막기 위해 최소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 ① 싫어하는 당사자나 관계자를 집단적으로 강제로 포위한 상태에서 취재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초등학생과 유아의 경우, 취재 방법에 특단의 배려를 요한다.
- ② 밤샘 장례식, 사체 반송 등을 취재하는 경우, 유족과 관계자의 심정을 짓밟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복장과 태도 등에도 유의한다.
- ③ 주택가와 학교, 병원 등 평온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취재는 취재차량 주차방법을 포함해 인근의 교통과 평온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020년 6월에도 일본신문협회편집위원회는 가맹사에 집단적 과열취재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을 요청했다. 요청에서 “실명은 사실의 핵심이며, 정확한 보도가 불가결하다”면서도, “취재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부담을 가하기도 하며, 실명보도를 거부하는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으로 미디어 스크럼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는 현장에서 협의하고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도기관의 대표사가 취재를 신청하고, 기자회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 취재를 신청한다고 했다.

한편, 2000년을 전후해 신문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배려한 보도에 나서기 시작했다. 자율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도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성범죄 보도기준도 간략하게나마 기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와 직업, 연령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사망 사건에서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후속 보도에서는 가능한 익명으로 전환한다. 어린이와 소녀의 유괴사건 등에서 성적인 동기가 의심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게 된 시점부터 익명으로 한다. 성범죄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 단적으로 간결하게 전달한다. 이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명보도를 원하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事件の取材と報道編集委員会, 2005:66).』

『성범죄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전체 기술에서 배려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판 시작 이후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성범죄이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는 죄명은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부녀폭행 방법과 상황은 원칙적으로 기사로 다루지 않지만, 보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간략하게 쓸 수 있다(読売新聞社編, 2003:248).』

(2) 신문사 자율규제기관

한편, 신문사에서는 지면심사회에서 기사내용을 심의한다. 대부분 전국신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제도를 두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89년에 ‘아사히신문지면평의회’를 설치했으며, 2001년에는 ‘보도와인권위원회(報道と人権委員会)’를 신설했다. 2015년 4월에는 ‘퍼블릭 에디터’(public editor)를 도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000년에 ‘열린신문위원회(「開かれた新聞」委員会)’를 설치했다. 사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이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과 의견에 견해를 제시하고, 신문지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요미우리신문>도 2001년에 신문감사위원회고문(「新聞監査委員会」顧問)을 설치하였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의 위원회는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응하는 자율규제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1〉 신문사의 자율규제

사명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기관명	보도와인권위원회	열린신문위원회	신문감사위원회고문
설립	2001년 1월	2000년 10월	2001년 6월
위상	사장 직속	주필 직할 (편집국에서 독립)	사장 직속

사명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위원구성	3명	4명	3명
목적	- 보도의 자유 -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구제 - 보도와 인권에 대해 의견 제시	-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 인권 침해 및 불만 대응에 대한 견해, 의견 제시 - 지면 관련 의견 제시 - 21세기 미디어 제언	- 제3자의 입장에서 신뢰받는 신문 지향
피해구제	- 심리 결과를 '견해'로 발표	- 인권침해에 대한 검증 - 신문사 견해 지면 게재	-
결과발표	견해를 신청자 승인 후 지면에 발표	결과는 지면 공개	사안마다 판단하여 결정
대상미디어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이 보도	신문 기사 원칙	신문
대상자	개인 한정(공인 제외)	개인 한정(공인 제외)	-

(3) 방송업계 자율규제

1) 일본민간방송연맹의 방송기준 및 보도지침

일본민간방송연맹은 1997년에 보도지침을 제정한 뒤, 2003년에 개정했다. 이는 보도·취재 시의 자세와 인권 존중 및 보도 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리하면, 우선 인권존중에서는 취재·보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부당하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어,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보도 활동은 취재·보도되는 측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였다.

- ①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을 존중한다.
- ② 인종·성별·직업·처지·신조 등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개개인의 인격을 중시한다.
- ③ 범죄 보도에서는 범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피의자 측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인다. 취재 받는 측에게 일방적인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보도는 피한다.
- ④ 취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아픔과 고뇌에 배려한다. 사건·사고·재해 피해자·가족·관계자에 대해 절도를 가진 자세로 접한다. 집단적 과열취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⑤ 보도 활동이 보도 피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만일 보도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구제수단을 강구한다.

보도 표현에서는 절도와 품위를 가지도록 요구하였다. 과도한 연출, 선정성은 보도 활동의 공정성과 시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 ① 과도한 연출과 시청자·청취자에게 오해를 주는 표현 수단,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익명 인터뷰, 모자이크 남용을 피한다.
- ② 불공정한 편집 방법, 잠재의식(subliminal) 수법, 이와 유사한 수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자료영상·음성을 사용하는 경우, 현실의 영상·음성과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시청자·청취자에 이해받기 어려운 수법을 사용했을 때는 그 취지를 원칙적으로 명시한다.

이러한 방송 지침은 방송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 기준 가운데 범죄 표현과 성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0장 범죄 표현

- (66) 범죄를 긍정하거나, 범죄자를 영웅 취급해서는 안 된다.
- (67) 범죄수법을 표현할 때는 모방하고자 하는 기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68) 도박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소극적으로 다루며, 매력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69) 마약과 각성제 등을 사용하는 장면은 소극적으로 다루고, 매력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70) 총포, 흉기류 사용은 신중하게 하고, 살상 수법에 대해서는 모방 동기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71) 유괴 등을 다룰 때는 그 수법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 (72) 범죄 용의자의 체포와 심문 방법, 소송 절차와 법정 장면 등을 다룰 때는 바르게 표현하도록 주의한다.

제11장 성표현

- (73) 성에 관한 사항은 시청자에게 곤혹, 혐오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74) 성 감염증과 생리위생에 관한 사항은 의학 상·위생학 상, 바른 지식에 의거해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 (75) 일반 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에서도 과도하게 관능적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76) 성범죄, 변태성욕, 성적 도착을 표현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자극적이어서는 안된다.

(78) 전라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육체의 일부를 표현할 때는 천박함·외설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2) <NHK>의 방송가이드라인

<NHK>는 방송가이드라인에서 사건·사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보도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도를 통해 법 정비와 수사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사건·사고보도는 진상과 배경을 추적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실명보도가 원칙이라고 제시했다. 방송가이드라인에서는 실명과 익명, 피의자·피고의 인권과 호칭, 재판원제도, 소년 사건, 영상, 집단적 과열취재, 유괴 보도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과 비교해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반성이 있으며, 2004년 범죄피해자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기본법에서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그 권리를 존중받아 왔다고 하기 어렵다”, “직접적 피해에 머물지 않고, 그 뒤에도 부차적인 피해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의익이 보호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 보도의 위상에 대해서도 취재 방법에 피해자의 심정을 무시한 경우가 있었다는 반성이 있다. 과열된 취재와 보도, 무신경한 언어 사용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현장에 달려온 가족을 가로막는 듯한 취재는 하지 않는 등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 폭력단이 관계된 사건 및 성범죄 등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검토하여 익명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프로그램 심의기관

방송법에서는 프로그램 심의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제6조). 프로그램 심의기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방송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심의한다. 둘째, 방송사에 의견을 제시한다. 자문에는 답신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방송사는 이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는 프로그램 심의기관에 보고 의무도 가진다. 보고 내용은 자문 관련 조치내용, 정정방송 및 취소방송의 실시 상황, 프로그램 관련 시청자 불만 및 의견 개선 등이다. 프로그램 심의기관은 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기능은 없지만, 프로그램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심의한다. 논의된 사안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설명하고,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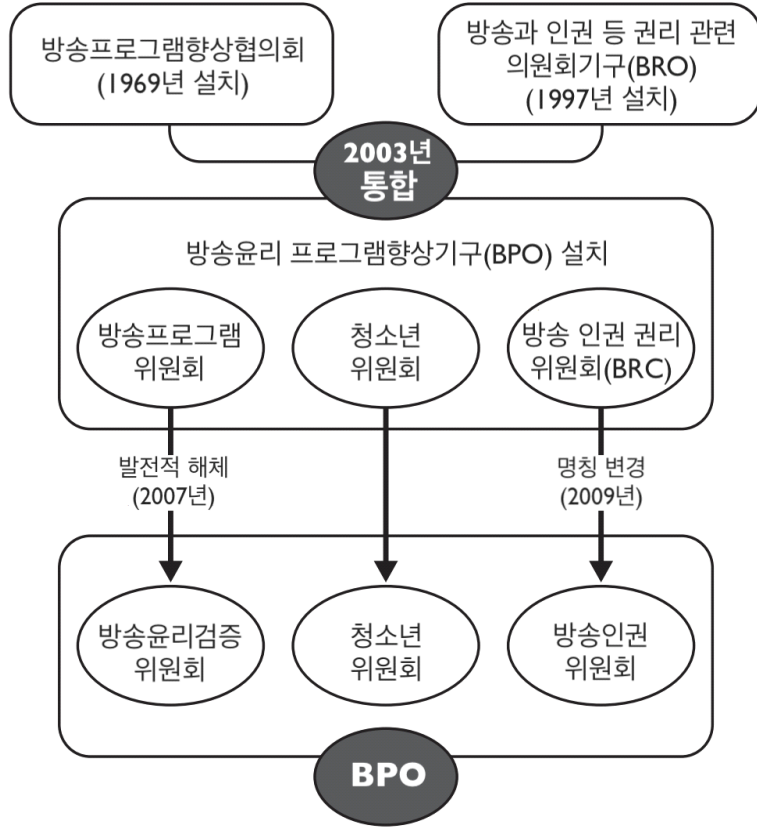
4) 자율규제기관: BPO

방송업계에서는 제3자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독특한 규제방식이다. 제3자 기관은 총무성이 독립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점, 법정기관인 프로그램심의회의 한계 등이 낳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피하기 위한 업계 자율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는 2003년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기존의 유사조직을 통합하여 새롭게 설립되었다. 방송에 대한 불만과 방송윤리에 대응하는 제3자 기관으로 규정한다. BPO는 임의 단체이며, 산하에는 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인권위원회,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2년,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BPO 설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 가맹사는 BPO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운영에 협력하며, 세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포함한 대응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민방방송연맹 가맹사는 별도로 BPO의 운영에 협력하고,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대응책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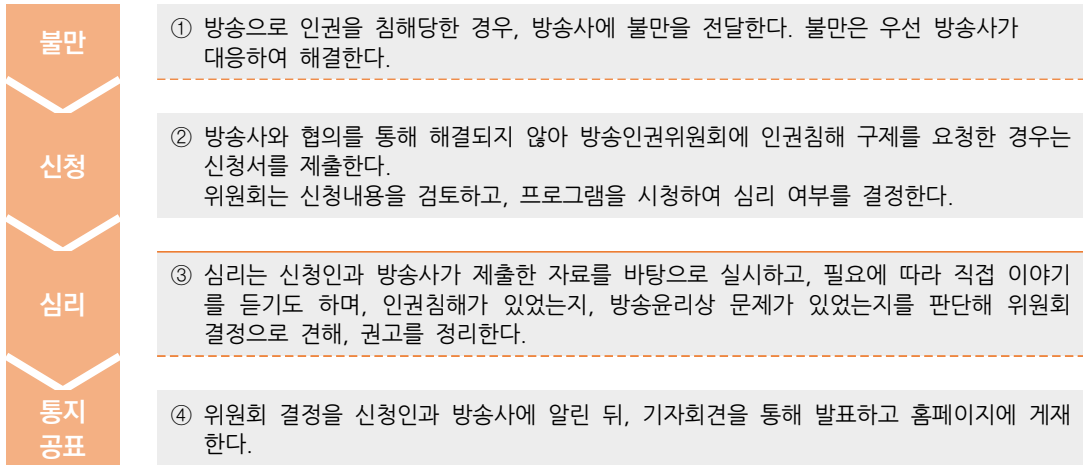
[그림 2] BPO의 변천과정



출처: 塩田幸司(2019:197).

BPO 산하의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으로 명예·프라이버시 등의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신청을 바탕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이는 재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불만처리기관이다. 신청은 방송으로 권리를 침해 받은 개인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초상권 등의 권리 침해, 이와 관련된 방송윤리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공평을 결여한 방송으로 인해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심리할 수 있다. 심리 결과는 권고와 견해로 발표한다. 권고는 인권 침해나 방송윤리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오며, 견해는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요망의 경우에 발표한다. 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5명, 변호사 3명, 언론인 1명, 화가 1명 등 10명이다.

[그림 3] 신청에서 결정까지 과정



출처: BPO홈페이지

방송인권위원회는 1997년 설립된 이후 2020년 8월까지 모두 72건의 결정을 발표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며, 결정은 판단 기준과 판단 가이드의 형태로 축적해 발표하고 있다.

<표 2> 방송인권위원회의 판단내용

권고	인권침해(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방송윤리상 중대한 문제 있음
견해	방송윤리상 문제 있음
	요망(방송사의 방송 표현에 대해 대응을 요망)
	문제 없음

출처: BPO홈페이지

방송인권위원회가 성범죄 보도와 관련된 결정으로는 지방공무원(신청인)이 <TV쿠마모토(TKU)>와 <쿠마모토현민TV(KKT)>를 상대로 제기한 심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5년 11월, <TKU>와 <KKT>는 자사 뉴스프로그램에서 지방공무원이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이 문제 삼은 것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였다. 뉴스에서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의 여성을 자택으로 데려갔으며, 동의 없이 옷을 벗겼다는 등 신청인이 인정하지 않은 혐의까지 사실로 인정했다고 보도했고, ‘비열한 범행’ 등의 코멘트

를 통해 신청인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도 무단으로 방송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내용을 “신청인이 추행 목적을 가지고 의식이 몽롱한 여성을 동의도 없이 자택에 데리고 갔고,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여성의 옷을 동의 없이 벗겼으며,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성을 촬영했다. 신청인은 이 세 가지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신청인이 약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의혹도 있다며, 계속해서 추궁할 방침”이라고 정리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이 중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체포된 피의사실이며 신청인도 인정한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경찰의 견해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고, 판결도 아니며, 기타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사실성의 증명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서 부서장의 “명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설명”을 듣고, 취재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명예를 훼손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윤리상의 문제를 검토했다.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증거도 없는 체포 직후 단계에서 명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찰당국의 발표만을 의존해, 특단의 유보도 없이 사건에 이른 경위 부분까지도 사실인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방송인권위원회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방송윤리기본강령’이다. “보도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공평하게 전달하고,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제시하였다. 방송윤리기본강령은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1996년에 제정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언론인 출신의 위원은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 3사의 기사와 방송 내용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부서장의 발표와 설명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서장의 발표와 설명은 명확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건의 방송은 용의자 체포 직후 사건 보도의 흐름 상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경찰당국의 발표와 설명을 일탈한 부분은 없다. 이번 방송에 방송윤리상 특단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방송업계에서는 위원회 결정에 반발이 적지 않았다. <TKU>와 <KKT>는 3개월 뒤인 2017년 6월 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응을 보고했다. 양사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위원회 결정을 전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방송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내 보고와 주지 활동을 소개했으며, 연수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하였다. <TKU>는 보도부의 대응으로 뉴스 원고를 해설자에게 최종 확인을 부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영상과 자막도 체크 기능을 강화했다고 보고하였다. <KKT>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어디까지가 체포 혐의이고, 어디까지가 경찰의 짐작인지 확인할 것, 용의자가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뉴스 원고의 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영상과 자막도 데스크와 디렉터, 아나운서 이외에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자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2016년 2월, <후지TV>의 프로그램에서 다룬 스톡커 사건 관련 영상이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후지TV>는 2015년 3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뉴스 만찬회(ニュースな晩餐会)’에서 지방도시의 식품 공장에서 벌어진 스톡커 사건과 집단 괴롭힘을 다루었다. 방송인권위원회에서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식품 공장 직원이었다. 프로그램에서는 재연 영상과 식품 공장 직원의 인터뷰 영상, 신청인의 몰래카메라 영상, 직장동료 간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등을 넣은 영상을 방송했다. 신청인은 스톡커 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알려졌으나 방송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지TV>는 관계자 영상 등을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했으며, 재연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거해 일부 재구성한 것’이라는 자막을 달았다고 하였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을 방송한 것이며,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의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송인권위원회는 주차장 영상과 신청인 관련 정보, 직장 관계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직장동료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재연 영상과 자막 처리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취재에서도 당사자의 취재에만 의존하여 직장 내에서의 처우 관련 불만과 갈등, 사건의 배경이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

았으며, 신청인의 불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인권위원회는 결정사항을 방송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과 방송윤리를 더욱 배려하도록 요망한다고 결정했다.

V. 나오며

현재 일본에서 성범죄 보도를 포함한 범죄 보도에서 최대 쟁점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자를 실명으로 보도할 것인가 익명으로 보도할 것인가’이다. 제도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신원 발표는 경찰이 판단한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의 실명을 발표할 것인가, 익명으로 발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는 2005년에 일 정부가 발표된 범죄피해자기본계획에 의거한다.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이 발표되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신문협회는 즉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단체는 “‘피해자 이름을 실명으로 발표할 것인가, 익명으로 할 것인가’를 경찰이 판단하도록 한 항목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익명발표로는 피해자와 그 주변 취재가 어려워지고, 경찰에게 불리한 정보를 감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취재, 검증, 보도로 국민 알권리에 부응한다는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자 발표는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에서 실명발표를 하더라도, 실명보도와 익명보도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주장하였다. <NHK>와 민방, 신문사 등이 가입한 일본신문협회는 실명보도를 요구하는 이유로, ① 실명은 5W1H 중에서도 ‘누가’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의 핵심이라는 점, ② 실명은 독자적인 취재를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 ③ 실명이 있으면, 오류를 발견하기 쉽고 진실성을 담보하게 된다는 점을 든다.

일본신문협회는 실명보도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기한다. ① 실명을 통한 보도는 익명과 비교해 독자나 시청자에게 강한 소구력을 가지고 사실의 무게를 전달한다는 점, ②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 ③ 피해사실과 배경을 독자적인 입장에서 사회에 호소하려는 피해자가 있는 점이다.

가해자의 익명보도도 쟁점이다. 학계에서는 범죄 보도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인 피의자를 범인 취급한다며, 권력 범죄를 제외한 범죄 관계자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淺野, 2004). 특히, 성범죄 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가해자도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가해자를 익명으로 보도하면 피해자의 특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 익명보도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회적 제재를 면하게 된다는 반론도 있다. 반면, 피해자는 소문에 의한 피해를 받으면서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관심대상이며, 언론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성범죄 보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과열취재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와 취재 양태는 '보도 피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모바일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보도 피해는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⁸⁾이 2000년에 제정되었지만, 보도 피해자나 성범죄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없다. 보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언론에 항의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방송에서는 자율규제기관인 BPO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BPO는 법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8) 공식명칭은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련된 조치에 관한 법률'이다. 형사재판 방청 우선권, 형사기록 열람 및 복사, 피해자 재판 참여시 교통비 제공,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 손해배상 명령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문헌 REFERENCE

- 内閣府政府広報室(2017). 人権擁護に関する世論調査の概要(2017年12月). URL: <https://survey.gov-online.go.jp/h29/h29-jinken/index.html>
- 日本新聞協会(2001). 集团的過熱取材に関する日本新聞協会編集委員会の見解(2001年12月6日). URL: https://www.pressnet.or.jp/statement/report/011206_66.html
- 日本弁護士連合会編(2000). 〈人権と報道報道のあるべき姿を求めて〉東京: 明石書店.
- 日本弁護士連合会人権擁護委員会編(2000). 〈人権と報道〉東京: 明石書店.
- 牧野智和(2013). 罪報道の国際比較分析: 日米英三カ国の新聞報道を素材にして. 〈ソシオロジカル・ペーパーズ〉 No.22: 95-108.
- 佐藤潤司(2013). BPO「放送人権委員会」の審理に 関する批判的考察: 決定第46号の事例を中心に.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No.82: 133-151.
- 曾我部真裕(2019). 報道界挙げて社会と対話を: ネット時代の被害者報道と 実名報道原則〈新聞研究〉 No.819: 16-19.
- 鈴木秀美・山田健太編著(2019). 〈よくわかるメディア法[第2版]〉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清水潔(2018). 〈桶川ストーカー殺人事件: 遺言〉東京: 新潮社.
- 諸澤英道(1998). 〈新版被害者学入門〉. 東京: 成文堂.
- 諸澤英道(2016). 〈被害者学〉東京: 成文堂.
- 沢田和樹(2019). 「娘は3度殺された」教訓を忘れるな—遺族の訴え 桶川ストーカー殺人20年 (上) 共同通信(2019年11月25日). URL: <https://www.47news.jp/47reporters/4251164.html>
- 沢田和樹(2019). 報道被害, 癒えぬ傷 100%は消せないデマ 警察重視、特オチ…残る事件取材の問題点・桶川ストーカー殺人20年 (下) 共同通信(2019年11月27日). URL: <https://www.47news.jp/4258763.html>
- 性暴力と報道対話の会(2016). 性暴力被害取材のためのガイドブック. URL: https://siab.jp/heart/wp-content/uploads/2016/12/2016_12_01_b.pdf
- 四方由美(2010). 日本の犯罪報道における女性: 女性被害者・女性被疑者. アジア女性交流・研究フォーラム(編) 〈アジア女性研究〉 20:55~66.
- 四方由美(2011). 日本の犯罪報道における女性: 女性被害者・女性被疑者, 〈アジア女性研究〉, 第20号: 55-66.
- 四方由美(2012). 〈マスメディアと社会生活: ジェンダー・地方・ダイバーシティの視座から〉.

- 東京：学文社.
- 四方由美(2014). 〈犯罪報道におけるジェンダー問題に関する研究：ジェンダーとメディアの視点から〉東京：学文社.
- 曾我部真裕(2016). 『実名報道』原則の再構築に向けて『論拠』と報道被害への対応を明確に. 〈Journalism〉 317: 83-90.
- 宍戸常寿(2011). デジタル時代の事件報道に関する法的問題.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モーレビュー〉 Vol.6:207-217.
- 死刑をなくす女の会(2004). 〈女子高生コンクリート詰め殺人事件：彼女のくやしさがわかりますか?〉東京：社会評論社.
- 塩田幸司(2019). 放送の自由・自律とBPOの役割：放送番組の自主規制活動の意義と課題. 〈NHK放送文化研究所年報2019〉第63集：195-237.
- 浅野 健一(2006). 犯罪被害者とジャーナリズム：事件事故報道の解体的出直しを. 同志社大学社会学会〈評論・社会科学〉No.80: 37-146.
- 山田健太(2014). 〈法とジャーナリズム〉東京：学陽書房.
- 大家重夫(2011). 〈肖像権 改訂新版〉東京：太田出版.
- 大月晶代(2006). 犯罪被害者の情報と報道のあり方. 〈レファレンス〉 2006年8月号. URL: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999815_po_066703.pdf?contentNo=1&alternativeNo=
- 五十嵐二葉(1991). 〈犯罪報道〉東京：岩波書店.
- 読売新聞大阪本社社会部(2013). 〈性犯罪報道〉東京：中央公論新社.
- 読売新聞社編(2003). 〈‘人権’報道：書かれる立場 書く立場〉東京：中央公論新社.
- 飯島滋明編著(2013). 〈憲法から考える実名犯罪報道〉東京：現代人文社.
- 飯室勝彦・渡辺真次・田島泰彦(1999). 〈新版 報道される側の人権〉東京：明石書店.
- 事件の取材と報道編集委員会(2005). 〈事件の取材と報道〉東京：朝日新聞社.
- 辻協葉子(2000). 犯罪被害者のプライバシー. 〈明治大学短期大学紀要〉No.67: 1-37.
- 小林直美(2014). テレビニュースに表象される女性被害者：内容分析による男性被害者との比較研究. 武蔵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科社会学専攻博士号請求論文.
- 田島泰彦・原寿雄(2001). 〈報道の自由と人権救済〉東京：明石書店.
- 梓澤和幸(2007). 〈報道被害〉東京：岩波新書.
- 放送人権委員会(2017a). 放送人権委員会決定第63号「事件報道に対する地方公務員からの申立て」(テレビ熊本)：見解. URL: <https://www.bpo.gr.jp/?p=9008>
- 放送人権委員会(2017b). 放送人権委員会決定第64号「事件報道に対する地方公務員からの申立

て」(熊本県民テレビ) : 見解. URL: <https://www.bpo.gr.jp/?p=9010>

細井洋子・四方由美(1995). 女性犯罪の報道に関する一考察: 規範を再生産するメディアという観点から.〈犯罪と非行〉 No. 103: 24-41.

星野豊(2011). 総合研究 教育と法(22) 教員の淫行容疑逮捕に関する実名報道. 〈月刊高校教育〉 44(1): 78~83.

綾瀬女子高生コンクリート詰め殺人事件 メディアと被害者との溝、一挙に可視化. 〈毎日新聞〉(2019年1月27日).

被害者の実名、報じる意義は 朝日新聞「報道と人権委員会」〈朝日新聞〉(2018年6月4日). URL: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3524992.html>

2020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해외 각국의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SSN 2635-8522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4호

2020년 10월 30일 발행

편집 · 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02)397-3042~5
www.pac.or.kr

인 쇄 : (주)계문사

-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2020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